www.kead.or.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정책연구 2024-01

본 보고서의 우측 상단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보이스아이(VOICEYE)가 실려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 수급 장애인의 고용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

김용탁 · 우주형 · 이은영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집 필 진**

- 책임연구자 : 김용탁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선임연구위원)
- 공동연구자 : 우주형 (나사렛대학교 휴먼재활학부 교수)
- 공동연구자 : 이은영 (지속가능기업 윤리 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자문위원**

(가나다순)

박경수(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
이선우(인제대학교 교수)
이성화(경기발달장애인훈련 센터장)
이주미(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진형식(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상임대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www.kead.or.kr

# 머리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장애인이 일을 한다는 것은 긍정적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 부정적이기도 합니다. 일을 통해 자신감 회복과 생활에 대한 안정을 도모할 수 있지만, 근로 소득이 늘어날 경우 수급 자격이 박탈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 장애인들이 수급 자격 유지보다는 일을 통해 수급을 탈피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보다 더 긍정적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연구는 수급 장애인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 고용확대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연구 과정에서는 수급 장애인과 탈수급 장애인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또 그들을 대상으로 심층적인 인터뷰를 수행하였습니다. 연구를 통해 수급 장애인의 고용 확대를 위해 정부부처간의 협업체계 구축, 정보 연계, 일자리 경험 등과 같은 고용 서비스 제공, 의료비 또는 수급 자격을 일정 기간 유예해 주는 제도 도입, 직장내 건강/의료 관리 체계 구축 등과 같은 제언을 실시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다양한 제언들이 실제 정책적인 입안을 통해 수급 장애인들의 고용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실태조사 및 심층 인터뷰에 참여해주신 장애인 분들 그리고 고귀한 의견을 통해 연구의 질적 성과를 도모해주신 자문위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12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원장 **조 윤 경**

www.kead.or.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목 차

Abstract ····· 1

연구요약 ····· 3

제1장 서 론 ····· 7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7

제2절 연구 내용과 방법 ····· 9

제2장 국민기초생활수급 장애인에 대한 논의 ····· 11

제1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 11

제2절 선행연구 검토 ····· 16

제3절 복지패널 분석 ····· 25

1. 분석 자료 및 개념 정의 ····· 25

2. 기초수급 장애인 특성 분석 ····· 26

3. 비경활(근로능력) 기초수급 장애인 특성 분석 ····· 41

4. 기초생활 수급자 특성 분석 ····· 52

5. 시사점 ····· 55

제3장 국민기초생활수급 장애인 실태조사 ····· 57

제1절 조사 개요 ····· 57

제2절 조사 결과 ····· 60
1. 일반 현황 ····· 60
2. 사회복지/보험 특성 ····· 66
3. 경제활동 일반사항 ····· 67
4. 국민기초생활수급 특성 ····· 78
5.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별 특성 ····· 83
제3절 소결 ····· 95

제4장 심층인터뷰 조사 ····· 100
제1절 조사 개요 ····· 100
1. 조사 방법 및 대상 ····· 100
2. 조사 내용 ····· 102
제2절 조사 결과 ····· 104
1. 수급 관련 상황 및 수급에 대한 태도 ····· 104
2. 수급탈피가 어려운 이유 ····· 110
3. 일자리 경험 ····· 114
4. 수급 관련 고용 및 복지 제도/서비스 ····· 116
5. 수급탈피 및 근로 촉진 방안 ····· 120
제3절 시사점 ····· 127

제5장 결 론 ····· 129
제1절 요약 ····· 129
제2절 제언 ····· 133

참고문헌 ····· 141

부록 ····· 143

한국장애인고용공단
www.kead.or.kr

# 표목차

<표 2-1> 2024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 기준 ····· 12
<표 2-2> 급여의 종류와 내용 ····· 13
<표 2-3>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 14
<표 2-4> 장애인 수급(권)자 유형별 근로·사업 소득 공제 현황 ····· 15
<표 2-5> 자산형성 지원 ····· 15
<표 2-6> 선행연구에서 지적된 문제점 및 제언과 개선 제도 ····· 21
<표 2-7> 단계별 수급 탈피의 문제점과 해소 방안 ····· 23
<표 2-8> 장애인 및 기초수급자 규모 ····· 26
<표 2-9> 장애인-기초수급 유형별 규모 ····· 26
<표 2-10> 기초수급 장애인 성별 분포 ····· 27
<표 2-11> 기초수급 장애인 연령 분포 ····· 28
<표 2-12> 기초수급 장애인 교육수준 ····· 28
<표 2-13> 기초수급 장애인 가구소득 분포 ····· 29
<표 2-14> 기초수급 장애인 장애유형 ····· 29
<표 2-15> 기초수급 장애인 장애 정도 ····· 30
<표 2-16> 기초수급 장애인 건강상태 ····· 31
<표 2-17> 기초수급 장애인 외래진료 횟수 ····· 31
<표 2-18> 기초수급 장애인 만성질환 유형 ····· 32
<표 2-19> 기초수급 장애인 수급형태 ····· 33
<표 2-20> 기초수급 장애인 공적연금 가입형태 ····· 33
<표 2-21> 기초수급 장애인 사적연금 가입형태 ····· 34
<표 2-22> 기초수급 장애인 건강보험 가입형태 ····· 35

<표 2-23> 기초수급 장애인 주된 경제활동 상태 ····· 36
<표 2-24> 기초수급 장애인 고용관계(임금근로자) ····· 36
<표 2-25> 기초수급 장애인 근로형태(임금근로자) ····· 37
<표 2-26> 기초수급 장애인 직종 유형(취업자) ····· 38
<표 2-27> 기초수급 장애인 업종 유형(취업자) ····· 39
<표 2-28> 기초수급 장애인 사업장 규모(취업자) ····· 40
<표 2-29> 기초수급 장애인 비경제활동 사유(비경제활동인구) ····· 41
<표 2-30> 기초수급 장애인 근로유형별 규모 ····· 42
<표 2-31> 비경활(근로능력) 기초수급 장애인 성별 분포 ····· 43
<표 2-32> 비경활(근로능력) 기초수급 장애인 연령 분포 ····· 43
<표 2-33> 비경활(근로능력) 기초수급 장애인 교육수준 ····· 44
<표 2-34> 비경활(근로능력) 기초수급 장애인 장애 유형 ····· 45
<표 2-35> 비경활(근로능력) 기초수급 장애인 장애 정도 ····· 46
<표 2-36> 비경활(근로능력) 기초수급 장애인 건강상태 ····· 46
<표 2-37> 비경활(근로능력) 기초수급 장애인 외래진료횟수 ····· 47
<표 2-38> 비경활(근로능력) 기초수급 장애인 만성질환 유형 ····· 48
<표 2-39> 비경활(근로능력) 기초수급 장애인 기초보장 수급형태 ····· 48
<표 2-40> 비경활(근로능력) 기초수급 장애인 공적연금 가입형태 ····· 49
<표 2-41> 비경활(근로능력) 기초수급 장애인 사적연금 가입형태 ····· 50
<표 2-42> 비경활(근로능력) 기초수급 장애인 건강보험 가입형태 ····· 50
<표 2-43> 비경활(근로능력) 기초수급 장애인 비경제활동 사유 ····· 51
<표 2-44> 비경활(근로능력) 기초수급 장애인 구직 경험 ····· 52
<표 2-45>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 사유 ····· 52
<표 2-46> 수급자 비선정 후 생계문제 해결방식: 생계급여 ····· 53
<표 2-47>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사유(생계급여) ····· 54
<표 2-48>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사유(의료급여) ····· 54

www.kead.or.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표 2-49> 국민기초생활보장 비수급 시 계속 바라는 지원(생계비 제외) …… 55
<표 3-1> 조사 설계 …… 57
<표 3-2> 조사 내용① …… 58
<표 3-3> 조사 내용② …… 59
<표 3-4> 응답자 특성 …… 61
<표 3-5> 주장애 유형 …… 61
<표 3-6> 중복장애유형(복수응답) …… 62
<표 3-7> 건강상태 …… 62
<표 3-8> 가족 구성 …… 63
<표 3-9> 가족 수 …… 63
<표 3-10> 가족의 주된 수입원 …… 63
<표 3-11> 가족 월 평균 총 소득(전가구원) …… 64
<표 3-12> 가족 월 평균 총 소득(개인) …… 64
<표 3-13> 가족 월 평균 생활비 …… 65
<표 3-14> 가족 월 평균 희망 최소 생활비(가구) …… 65
<표 3-15> 가족 월 평균 희망 최소 생활비(개인) …… 66
<표 3-16> 기초생활수급 종류(복수응답) …… 66
<표 3-17> 공적연금(국민연금 등) 가입 여부 …… 66
<표 3-18> 개인연금 가입 여부 …… 67
<표 3-19> 건강보험 가입형태 …… 67
<표 3-20> 근로 능력 정도 …… 68
<표 3-21> 집안일도 하기 어려운 이유 …… 68
<표 3-22> 근로 관련 건강 상태 …… 68
<표 3-23> 장애 상태가 구직활동에 미치는 영향 …… 69
<표 3-24> 경제활동 참여 여부 …… 69
<표 3-25> 주된 경제활동 참여 상태 …… 70

<표 3-26> 근무중인 일자리 종류 ····· 70
<표 3-27> 근로 지위 ····· 70
<표 3-28> 근로시간 형태 ····· 71
<표 3-29> 근로 직종 ····· 71
<표 3-30> 근로 사업장 규모 ····· 71
<표 3-31> 월 평균 급여 ····· 72
<표 3-32>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이유 ····· 72
<표 3-33> 현재 일을 하지 않는 이유 ····· 73
<표 3-34> 일을 그만두게 하거나 그만둔 이유 ····· 74
<표 3-35> 일자리 발생 시 근로 의사 ····· 74
<표 3-36> 근로 희망 이유 ····· 75
<표 3-37> 희망 사업체 ····· 75
<표 3-38> 희망 일자리 ····· 76
<표 3-39> 희망 지위 ····· 76
<표 3-40> 희망 근로 시간 ····· 76
<표 3-41> 희망 일자리 종류 ····· 77
<표 3-42> 희망 임금 ····· 77
<표 3-43> 일자리 발생에도 근로 의사 없는 이유 ····· 78
<표 3-44> 현재 생활 만족도 ····· 79
<표 3-45> 급여를 신청하게 된 이유 ····· 79
<표 3-46> 급여수준에 대한 인식 ····· 80
<표 3-47> 수급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이나 고충 ····· 80
<표 3-48> 수급에서 벗어나기 위한 조건 ····· 81
<표 3-49> 수급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 ····· 81
<표 3-50> 수급자에서 탈피하기 위한 지원 금액 또는 소득 ····· 82
<표 3-51> 수급자에서 탈피하기 위한 월 소득 ····· 82

한국장애인고용공단
www.kead.or.kr

<표 3-52> 수급유형 ····· 83
<표 3-53> 수급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하는 기간 ····· 84
<표 3-54> 수급을 유지하는 이유 ····· 85
<표 3-55> 수급을 유지하는 데 가장 큰 어려움 ····· 85
<표 3-56> 수급 유지에 있어 가장 큰 장점 ····· 86
<표 3-57> 수급 유지 희망 여부 ····· 86
<표 3-58> 수급 탈피 이유 ····· 87
<표 3-59> 수급 탈피에 가장 큰 도움이 된 것 ····· 88
<표 3-60> 수급 탈피 이후 장점 ····· 88
<표 3-61> 수급 탈피 이후 가장 큰 어려움 ····· 89
<표 3-62> 수급 당시와 수급 탈피 후 만족도 ····· 90
<표 3-63> 재수급 희망 여부 ····· 91
<표 3-64> 수급 탈피 이후 재수급까지의 기간 ····· 92
<표 3-65> 재수급 이유 ····· 92
<표 3-66> 재수급 과정동안 어려움이나 고충 ····· 92
<표 3-67> 재수급의 장점 ····· 93
<표 3-68> 수급 당시와 수급 탈피 후 만족도 ····· 94
<표 3-69> 수급 유지 희망 여부 ····· 95
<표 4-1> 연구참여자 특성 ····· 101
<표 4-2> 질문지 구성 ····· 103
<표 5-1> 수급 장애인의 수급 탈피 및 고용 확대를 위한 제언 ····· 133

www.kead.or.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Abstract

# A Study on Systems Improvement to promote Employment of People with Disabilities Receiving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ies

Kim, Yong Tak
(Senior Research Fellow, Employment Development Institute, KEAD)
Woo, Joo Hyoung
(Professor, Korea Nazarene University)
Lee, Eun Young
(Resaerch Fellow, Business Ethics Research Institute)

This study was conducted for the purpose of suggesting a plan to promote the employment of the disabled who receiv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ies (NBLS). To achieve research objectives, following four major research methods were adopted. First, literature review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major feature of the NBLS and its major issues. Second, by analyzing the data of the Korean Welfare Panel conducted by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the characteristics of the disabled and non-disabled people were compared. Third, a survey was conducted on national basic living recipients, re-recipients, and de-recipients. In this study, a total of 350 people were finally surveyed, and the results were summarized and implications were derived. Finally, an in-depth interview was conducted. Like the survey subjects, the interviewees were divided into recipients, de-recipients, and re-recipients, and interviews were conducted and analyzed focusing on the

reasons why it is difficult to find a job or not find a job in the process. Based on analyses above, the study suggested policy measures to promote employment of the disabled who received NBLS.

Keywords: Employment,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ies(NBLS), People with Disabilities(PWDs)

# 연구요약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제도이다. 장애인의 경우,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수급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장애인의 상대적인 빈곤도가 높음을 시사하며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같은 문제의식은 기초생활수급제도 도입이후 장애인의 복지와 고용 관계성에 대한 이슈에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지만 현재까지도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초생활수급 장애인의 실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기존 연구와 주장에서 담고 있었던 문제 제기와 대안 제시의 내용 분석과 함께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근거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논의를 포함, 실현가능한 정책 대안 제시를 목적으로 수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문헌연구, 2차자료 분석, 설문조사 분석, 심층인터뷰를 수행하였다. 문헌연구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된 법령과 제도적 측면 그리고 선행연구 등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2차자료분석은 한국복지패널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활용하여 기초수급장애인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2차자료에서 조사할 수 없는 기초수급영역에 있는 장애인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 파악을 위해 설문조사를 시행, 분석을 수행하였다. 2차자료분석 및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여 기초수급 장애인의 고용 촉진을 위한 정책 방안 제시를 위한 심층적인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기초생활 수급 장애인에 대한 특성 분석과 현장의 욕구 파악을 바탕으로 수급 장애인의 고용확대를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문헌 및 제도 검토 결과, 국민기초생활수급 제도의 도입과 함께 특히 수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개선 방안들이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제도 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예를 들어 의료비 문제, 유예기간 도입, 자활 사업과의 연계, 복지 서비스와 고용서비스와의 연계 등과 같은 문제 제기는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물론 장애인 수급자를 위한 소득공제 제도나 재산 형성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지원 수준 등에서 획기적인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임을 문헌분석 결과를 통해 도출할 수 있었다.

복지패널 분석에 따른 기초수급 장애인 특성 분석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남성, 50대 및 60대, 중증도가 높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장애인들의 수급 비중이 높았다. 주요 장애유형으로는 지체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 순으로 많았다. 장애인 수급자는 89.1%가 비경제활동인구로 비장애인 수급자 및 장애인 비수급자에 비해 매우 높은 비중이다. 근로형태 측면에서는 장애인 수급자는 상대적으로 시간제, 간접고용에 종사할 확률이 비장애인 수급자보다 높으며 근로능력 유무와 무관하게 구직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비중이 매우 높았으며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의료 보장 측면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실태조사는 수급자 및 재수급자 291명, 탈수급자는 59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수급자의 기초수급 관련 요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조사대상 장애인은 경제적 어려움을 탈피하기 위해 근로를 선택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51.2%)인 반면 장애로 인한 업무수행 어려움이 근로를 저지하는 주요인(42.8%)였다. 일자리가 발생했을 때 근로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42.8%가 하겠다고 답변한 반면, 57.2%는 하지 않겠다고 답변하였다. 일자리가 생겨도 근로의사가 없는 주 이유는 건강이 좋지 않아서(45.6%), 기초수급 탈락(35.9%) 순이었다. 수급자의 전반적인 생활만족도 수준은 100점 만점에 50.4점 수준이었으며 주요 수급 신청 사유는 생계문제 해결(60.0%), 의료급여 수령(13.7%), 급여수준에 대한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39.4점 수준에 불과하였다. 수급 탈피자가

수급을 탈피한 주요 이유는 '가족의 수입증가', '일의 수입 증가', '재산 증가'등이 있으며, 수급 탈피에 가장 많은 도움을 준 것으로 '취업 등 소득원 발생 또는 증가'였다. 수급 당시와 수급 탈피 후의 만족도를 비교한 결과를 보면, 전반적 만족도의 경우 수급 당시에는 47.9점에서 수급 탈피후에는 48.3점으로 0.4점이 높아졌으며 수급 탈피자를 대상으로 재수급 여부에 대한 질문에서 다시 받고 싶다는 답변이 72.%, 다시 받고 싶지 않다는 답변이 27.1%로 나타났다. 재수급을 희망하는 주 이유로는 '의료비', '수급 상태와 거의 나은 것이 없음', '재활치료 병원비 부담' 등이었다. 탈수급 후 재수급한 응답자의 주요 재수급 사유는 '장애로 인한 직장생활의 어려움', '실직이나 자영업 실패 등으로 소득원 감소' 등이었으며 수급 탈피 당시와 재수급 후의 만족도에 대한 조사에서 전반적 만족도는 16.7점이 높아졌다. 수급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이유에 대해 '생활유지', '근로능력이 없어서' 로 나타났다.

심층 면접은 총 8명의 수급자, 탈수급자, 재수급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기초수급 장애인의 수급과 탈수급, 재수급에 관련한 보다 심층적인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면접 대상자들은 기초수급이 기본적인 삶을 살게 해주기 때문에 포기하기에 매우 어렵고 제도의 효용을 인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시혜의 대상이 되며 자존감과 성취감을 상실한다는 점 때문에 가능하면 수급을 탈피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장애인이 직면하는 노동시장 현실 상 수급을 포기함으로서 삶의 질이 훨씬 저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동기 부여되고 수급을 탈피할 수 있는 계기가 된 일부를 제외하고는 탈수급을 시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장애인이 수급을 통한 단순한 생존이 아닌 보다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근로를 통한 자존감과 사회관계의 정상성 회복, 자산형성이나 일 자체를 통한 성취감, 보다 풍요로운 소득을 통한 삶의 질 개선 등의 길이 열릴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수급과 자립이 양립하기 어려운 현재 구조에서는 이같은 시도가 매우 힘들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수급조건 유예제도와 같은 제도의 필요성을 다수가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정책 제언은 다음 네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우선 복지와 고용 기관간의 분절은 고용과 복지 영역을 아울러 기초수급 장애인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복지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여 고용서비스 정보 제공과 근로동기 고취와 같은 프로그램이 복지 서비스와 동시에 제공되어야 하며, 고용 서비스 또한 취업뿐만 아니라 창업, 훈련, 근로역량 고취 등도 포함된 포괄적인 개념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이를 근거로 정부 부처간 협력체계 구축 및 정보 연계 등 실질적 추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급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이들이 자립할 일자리 창출과 유지를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더해 실태 조사 결과 기초수급 장애인에게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된 의료 부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을 고려해야 한다.

<수급 장애인의 수급 탈피 및 고용 확대를 위한 제언>

| 범주 | 제언 내용 |
|---|---|
| 복지와 고용 연계 | · 복지와 고용 서비스 개념의 확장<br>· 정부부처간의 협력 체계 구축<br>· 정보 연계 |
| 근로 의욕 고취 | · 수급자 대상 고용 지원 정보 제공 프로그램<br>· 심리적 지원, 근로 의지 지원 방안<br>· 장애인 자활사업 체계 신설 |
| 일자리 창출과 유지 | · 일자리 경험 지원<br>· 수급 장애인 일자리 발굴<br>· 수급 장애인 고용 인센티브 제공<br>· 소득 유예 기간 설정 |
| 의료 보장 | · 장애인 근로자 의료권 및 건강권 보장<br>· 장애인 의료비 지원 체계의 전환 |

www.kead.or.kr/ko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제 1 장
# 서 론

##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제도이다. 1962년에 제정된「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제도를 전신으로 하여, 1997년 금융위기 이후 빈곤 문제에 대응하여 튼튼한 사회안전망 체계를 마련하고자 2000년 10월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되었다. 이후 주요 급여의 선정기준을 다층화하는 등 다양한 복지 욕구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2015년 7월에 맞춤형 급여로 개편하였다. 기본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수급권자는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 인정액[1]이 급여 종류별로 수급자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를 기준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 급여 등이 제공된다.

2022년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권자는 245만1천명으로 전국민 대비 기초생활 보장수급 비율은 4.8%로 나타났다. 이를 가구 특성별로 보면, 전체 1,699,4978가구 중 장애인 세대는 233,683가구로 노인세대(546,697가구), 일반세대(446,158세대)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조윤화 외(2023)는

1)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 환산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 가구특성별 지출 비용 - 근로소득 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기본재산액- 부채)× 소득환산율]

2022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등록 장애인 비율은 24.1%이며. 이 중에서 일반 수급자의 등록 장애인 비율은 23.0% 시설 수급자의 등록 장애인 비율은 51.5%로 시설 수급자의 등록 장애인 비율이 높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급여 유형별로 구분하여 보면, 생계급여를 받는 장애인 비율은 82.9%인데 비해 전체 인구의 생계급여 수급 비율은 63.9%로 나타나 장애인 가구의 생계급여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장애인 가구의 수급 비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가구 빈곤이 심하다는 것을 말한다. 조윤화 외(2023)의 분석에 의하면, 2021년 장애인 빈곤률(균등화가처분소득 기준)은 39.4%로 전체 인구의 15.1%보다 약 2.6배가 높게 나타났다.

장애인의 빈곤이 상대적으로 심하고 그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이 제기되었다. 그중에서도 특히 국민기초생활수급 장애인의 노동시장으로의 진입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최근 장애인계를 중심으로 국민기초생활 수급 장애인의 고용확대 필요성과 관련된 움직임 역시 이러한 흐름과 일맥상통한다. 이들은 장애인 고용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노동정책으로서 의료급여 체계 개편, 소득 할인, 자활사업 개편, 실질적인 고용 유인 체계 마련 등이 필요하며, 근본적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장애인의 복지 수혜가 아닌 고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우주형, 2023).

물론, 이들 주장은 현 시점에서 도출되었다기보다는 국민기초생활수급제도 도입 이후 장애인의 복지와 고용 관계성에 대한 이슈에 지속적으로 포함되었던 내용이었다. 다만, 학계와 장애인계에서는 꾸준하게 관련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였지만,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의 논의 과정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나아가 수급 장애인 고용 유인 방안을 현실적인 측면에서 재검토할 필요성이 등장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 주장에서 담고 있었던 문제 제기와 대안 제시의 내용 분석과 함께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근거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국민기초생활 수급 대상자 및 재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실태 파악과 함께 심층인터뷰 등을 통한 현실적인 대안을 찾고자 할 것이다. 또한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논의를 포함, 실현 가능한 정책 대안 제시를 목적으로 수행하고자 한다.

## 제2절 연구 내용과 방법

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수급 장애인의 고용확대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첫째,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된 법령과 제도적 측면 그리고 선행연구 등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또한 구체적으로 사업 수행체계와 방식, 실적 등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기존에 제기되었던 다양한 정책 제언들의 결과가 법과 제도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으며, 특히 향후 본 연구에서 모색하는 정책 방안의 합리적 근거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국민기초생활수급 장애인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DB를 활용하고자 한다. 한국복지패널 DB의 경우 수급 사유, 수급 탈피, 재수급 사유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수급관련 다양한 내용을 파악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복지패널 분석을 활용할 경우 수급 장애인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현실성 있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 수급 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현재 장애인 고용패널, 복지패널, 노후보장패널 등에서 국민기초생활 수급과 장애인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고 있지만 다루고 있는 내용이 포괄적이지 않아 전체적인 현황이나 특성 도출의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 수급 영역에 있는 장애인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 파악을 통해 정책 제언의 근거

로 활용하고자 한다.

넷째, 패널 분석 및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고자 한다. 심층인터뷰는 크게 세 개의 범주로 나누어서 진행할 것이다. 이들은 크게 ① 기초생활수급을 유지하고 있는 장애인 ② 기초생활 수급 탈피 경험이 있는 현재 수급 장애인 ③ 기초생활수급 경험이 있는 현재 비수급 장애인으로 구분하여 그룹별로 인터뷰를 진행하고자 한다.

다섯째, 기초생활 수급 장애인에 대한 특성 분석과 현장의 욕구 파악을 바탕으로 수급 장애인의 고용확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방안은 미시적 측면에서는 현행 제도에 대한 개선에 초점을 맞추지만,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까지 포함시키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 장애인의 고용 확대를 위해 다양한 논의를 이끌어 가고 있는 전문가들과의 적극적인 공동 연구와 자문 등의 협력을 추진하고자 한다.

www.kead.or.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제 2 장
# 국민기초생활수급 장애인에 대한 논의

## 제1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크게 두 가지 원칙을 갖고 있다. 하나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가구원, 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해당 가구의 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원칙인 신청주의와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은 급여를 필요로 하는 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할 지역 내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생활이 어려우나 급여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급여를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는 직권주의가 그것이다. 기초수급을 신청한 자에 대해 보장기관은 사회복지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득과 재산 조사를 하도록 한다. 소득과 재산 조사는 다음과 같다.

- 부양 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 능력 등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에 관한 사항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 욕구 등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 그 밖의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가구 특성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출처)「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2조

소득과 재산 조사를 통해 수급자를 선정하는데, 수급자 선정 기준에서 보장의 단위는 가구단위로 한다. 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가구는 수급자 선정, 급여액 결정 및 지급의 기본단위로서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소득 인정액은 가구를 단위로 선정한다. 수급자 선정 기준에서 중위소득[2]을 정하는데, 2024년의 경우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교육 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선정하였다.

<표 2-1> 2024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 기준

(단위: 원)

| 구분 | 가구규모 | | | | | | |
|---|---|---|---|---|---|---|---|
|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생계급여 (30%)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2,432,255 |
| 의료급여 (40%) | 831,157 | 1,382,462 | 1,773,927 | 2,160,366 | 2,532,275 | 2,891,193 | 3,243,006 |
| 주거급여 (46%)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4,423 | 3,397,151 | 3,810,532 |
| 교육급여 (50%)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4,053,758 |

* 생계급여 수급시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0%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함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8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 2,696,116원=2,432,225원(7인기준) + 263,861원(7인기준-6인기준)

자료: 보건복지부(www.mohw.go.kr)

2) 기준 중위소득은 맞춤형 급여 도입 이전의 '최저 생계비'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 값을 말한다. 기준 중위소득은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 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임,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보건복지부, 2024).

www.kead.or.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공되는 급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 급여로 구분되며, 이외에도 장제급여와 해산 급여 등이 있다. 급여의 종류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2-2> 급여의 종류와 내용

| 급여의 종류 | 내용 |
|---|---|
| 생계급여 | -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br>- 긴급 생계급여: 수급자로 보장 결정 이전에 긴급히 생계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1개월간 신속히 급여 실시 |
| 의료급여 | -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2종으로 구분하여 혜택 |
| 주거급여 | - 기초생활보장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 주거형태·주거비 부담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 |
| 교육급여 | -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지급 |
| 해산급여 | - 수급자가 출산시 1인당 70만원 지급 |
| 장제급여 | - 수급자 사망시 80만원을 장제를 실행하는 자에게 지급 |

자료: 보건복지부(www.mohw.go.kr)

한편,「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 14조의 2에서는 급여의 특례와 관련하여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일정 기간 동안 이 법에서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람은 수급권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관련하여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가 있다. 그 중에서 개인 단위 보장에 따른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와 재산 기준에 대한 특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3>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 특례 구분 | | 제도 내용 | 보장 종류 |
|---|---|---|---|
| 개인단위보장 | 의료급여 특례 | - 회귀·중난치질환 및 중증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의료비를 공제하면 의료급여 선정기간 이하인 경우 의료비 지출이 발생하는 가구원에 대한 특례 지원 | 의료급여 수급자 |
| | 자활급여 특례 | - 자활소득으로 3개월 평균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선정기준 초과하는 경우 5년간 보장 |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
| | 구직촉진수당 지급에 따른 특례 | - 구직촉진수당으로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구직촉진수당 수급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까지 보장 |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
| 재산기준 | 수급권자 재산범위 | -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가구,재산 처분이 곤란한 가구의 완화된 기본 재산 적용 재산 가액 인상시 3년간 추가보장 | 맞춤형 급여체계 |
| | 부양의무자 재산범위 | -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되거나 재산이 주택에 한정되는 경우 완화된 재산 기준 적용(A+B)×50% 재산가액 인상시 계속 보장 | 맞춤형 급여체계 |
| | 보장시설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재산범위 | - 완화된 재산 기준 적용(A+B)× 50% | 보장시설 수급자 |

자료: 보건복지부(2024)

이와 함께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수급자들의 근로의욕을 높일 수 있도록 근로소득 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 수급자 유형별 근로·사업소득 공제 현황은 다음과 같다.

www.kead.or.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표 2-4> 장애인 수급(권)자 유형별 근로·사업 소득 공제 현황

| 공제 대상 수급(권)자 | 공제 대상 소득 | 공제율 |
|---|---|---|
| 등록장애인 | 장애인 직업재활 사업·정신질환자 직업재활사업 참여 소득 |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50% 추가공제 |
| 등록 장애인 | 근로·사업 소득 |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

일하는 수급 가구, 차상위 계층 및 자활근로 사업단 참여자(단, 청년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00%이상)의 자립·자활 지원을 위해 정부가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 신청 자격과 지급 요건 및 혜택은 다음과 같다.

<표 2-5> 자산형성 지원

| 내용 | 자격 | 지급 요건 및 혜택 |
|---|---|---|
| 희망저축 계좌 I | 일하는 생계·의료수급가구 | 매월 10만원 저축시 정부 지원금 매칭 지원 |
| 희망저축 계좌 II | 일하는 주거· 교육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시 정부 지원금 10만원 매칭 |
| 청년 내일저축 계좌 | - 가입연령: 19-34세<br>- 근로/사업소득: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br>-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br>- 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대비 정부지원금 10만원, 30만원 정액 매칭 |

## 제2절 선행연구 검토

선행연구는 먼저 수급장애인의 수급 탈피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았다. 성은미, 임수경(2021)은 남성의 경우 사업실패, 경제상황의 악화, 건강문제로 인해 수급자가 되었으며, 노동시장으로의 재진입이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으나 주로 노동 강도가 강한 일자리로 이를 감당할 수 없는 개인의 건강상태 혹은 컴퓨터 활용 등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술 습득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반면, 남성과 비교해 낮은 여성의 임금수준과 열악한 노동환경은 여성으로 하여금 탈수급에 대한 전망과 기대를 낮추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가정 내 돌봄을 여성이 담당하는 현상은 이혼 여부와 관련 없이 가족 내에 돌봄 대상자가 있는 경우 빈곤 여성이 일을 통해 탈수급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도 제기하였다. 이들은 신체 건강이 좋지 않아 노동시장에 진입해서 장기간 일하기 어려운 남성에 대해 신체적 여건이 맞는 일자리 지원, 각 개인의 욕구에 따른 미래계획을 위해 필요한 자격증 취득, 직업능력개발, 창업 등의 다양한 자원을 통해 기술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사회적 차원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여성의 경우 정신건강과 관련된 지원뿐만 아니라 돌봄 부담 완화로서 돌봄과 가사 등 사회서비스 지원과 함께 노동시장 재진입을 위한 고용지원이 병행되어야 하며, 현실을 반영한 노동시장 여건이나 가정 내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 없이 여성 빈곤 가구에 대한 과도한 탈수급이나 탈빈곤을 강요하긴 어렵다는 점을 밝혔다.

이금진(2021)은 여성장애인의 수급 탈피와 관련하여 수급 장애여성이 노동시장에 근로를 통해 머물 수 있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취업여성에 대한 건강관리 및 의료 지원 정책을 세부적으로 마련하고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법정 의무교육인 장애인식개선 교육에 성인지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이중차별 인식 정도가 높은 대상자에 대해 심리적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하며, 수급 장애 여성에 대한 취업을 중심으로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의 고용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는 고용알선 기관의 확대와 함께 고용알선 기

관의 서비스는 보다 밀착된 사례관리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와 함께 근로를 통해 수급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과 연결될 수 있는 임금 보충수당 제도를 확보하고 다양한 사회복지 수당과 고용서비스를 종합적, 여성 친화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고용알선 서비스 제공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박종빈, 김용탁(2020)은 근로소득공제 제도 효과성 분석을 바탕으로 현재 근로소득공제 제도의 공제율이나 선공제 금액의 상향 조정, 근로소득에 대해 비수급 상태에서도 일정 기간 자격 유지, 근로 소득 공제 혜택 장애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정진순, 이종정, 이태성(2019)은 기초생활수급 장애인은 건전한 비판적 의식이 부재하여 빈곤감이나 기타 불행한 정서에 대한 모든 원인을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무기력한 상태가 되기 쉬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대표적으로 교육적인 프로그램들이 제공되어야 하는데, 장애인 복지를 위한 복지관과 같은 기관들이 있지만 장애인의 욕구를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사업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드물며, 자신의 결정으로 능동적인 참여를 할 수 있는 체험을 하는 곳은 거의 없다고 주장하였다. 대부분이 단순한 놀이나 취미생활 수준의 프로그램이 제공되기 때문에 직장과 같은 체험을 할 수 있는 곳도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인식개선 프로그램은 있지만 장애인의 비판적 사고 향상을 위한 인식 개선 프로그램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이 자신의 능동적 능력을 활용하고 불평등한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체험관을 설립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장성애(2019)는 중도 장애 여성의 탈수급에 관한 연구를 통해 중도 여성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재활교육 과정 개설이 필요하다는 점, 여성 장애인의 기초생활수급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자조집단 구성, 여성 장애인의 자활과정을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홍보자료를 제작하여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방안 강구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선영, 이홍직(2018)은 수급 이력이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수급 탈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들은 장애등급에 따른 천편일률적인 서비스 제공보다는 개개인의 욕구를 반영한 복지서비스 제공이 오히려 빈곤을 완화하는데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 또한 수급기간이 장기화되기 이전에 다양한 인적자본 확충을 통해 수급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점, 빈곤의 장기화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근로에 대한 충분한 동기부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와 함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장애수당 등 관련 제도들 간의 연계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장애수당 등 유사제도 간의 조정을 통해 제도 간의 경합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선우(2015)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소득에서 공제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는 장애인 가구는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때문에 실질적인 가구소득은 그 추가비용만큼 비장애인보다 낮지만 이 부분이 고려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장애인 가구가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에도 지급되는 생계급여에는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박재홍(2015)은 연령이 높을수록 수급 탈피 의향이 부정적이며, 학력이 높고 고용서비스 경험이 높을수록 탈피 의향이 긍정적이라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따라서 장애인 정책의 방향은 취업 잠재력이 높은 장애인 수급자가 취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취업 잠재력이 낮은 장애인 수급자는 복지급여를 받으며 취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박경수(2015)는 장애인의 장애 수용과 기초생활보장 수급 탈피의향에 대한 연구에서 고용서비스 이용 경험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보면 장애인 고용서비스 이용 경험이 수급 탈피에 정적(+) 영향을 주는 변수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장애인의 고용서비스 이용 경험을 확대함으로써 수급 탈피 의지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직업훈련·교육 프로그램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윤상용, 김태완, 강민희, 이송희, 최미영, 임광영, 김동기(2009)는 장애인 수급자의 근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의 소득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장애인이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그 소득의 30%까지 공제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장애인 수급자의 근로를 유인하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장애인 수급자의 근로활동 유인을 위해 근로소득공제를 더욱 활성화하고 장애 관련 근로 비용을 공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오수경(2005)은 장애인 수급자의 탈빈곤과 사회통합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 첫째, 대상자 선정과 급여액 결정을 위한 소득인정액 산정에 있어서 근로소득공제의 적용범위를 일반 사업장의 소득까지 확대하고 장애로 인해 추가 발생하는 근로비용과 창업에 필요한 초기 투자 비용 등도 공제해야 하며, 둘째, 장애인들의 근로소득 증가로 수급 자격을 상실한 후에 곧바로 급여를 중단시키지 않고 소득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때까지 일정기간 현금 급여를 연장시켜야 한다. 또한 급여 탈피 후 일정기간 동안은 동일한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소득활동이 어려워 급여를 재신청하는 경우 쉽게 재획득 하도록 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성용, 강상경(2015)은 정신장애인의 탈수급과 관련하여 수급을 받는 정신장애인들이 오히려 의료비 지출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취업에 대한 동기가 부족할 수 있으며, 근로동기를 저해하는 제도상의 딜레마를 개선하는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실천현장에서 정신보건전문가들은 정신장애인의 개별 상황이나 욕구에 맞추어 개별화된 사례관리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특히 정신장애인 집단 중에서도 수급을 받는 당사자들에 대한 개입과정에서 취업으로 인해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어떤 이득과 불리를 경험할 수 있는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조상미(2012)는 사회적 기업에 취업한 정신장애인의 경험에 대해 현상학적 연구를 수행하면서 정신장애인의 경우 음성증상과 사회적 기능의 저하로 인해 취업 경험 자체가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재발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취업

으로 인해 오히려 기초생활 수급권과 장애 등록에서 탈락할 수 있음을 제기하였다.

비장애인 탈수급과 관련하여 노대명, 원일(2011)은 탈수급률이 낮은 이유로 기초생활보장제도로의 자원 집중화가 이 제도에 대한 수급자의 의존성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보았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이 제도가 보장하는 각종 급여 이외에도 다른 저소득층 지원제도에 대한 접근성이 높다는 것이다. 달리 표현하면,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주는 편익이 매우 커서 수급가구와 비수급 가구 간의 소득 역전은 물론이고, 차상위 가구와도 소득역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행정적인 소득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취업사실을 숨기거나 근로 소득을 하향 신고하여 현금 급여를 극대화하려는 유혹도 크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자활사업과 관련하여 류기락(2014)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제도 중에서 자활사업에서의 제도적 측면을 분석하여 자활 개념의 현실화를 주장하였다. 즉, 자활사업의 목표가 탈수급과 취·창업 지원으로 혼재되어 왔으며, 이는 참여대상의 이질성과 복잡성을 가중시켜 사업별로 참여 대상에 적합한 사업계획 수립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활 개념을 조건부 수급자에게는 탈수급으로, 일반 수급자에게는 근로역량 강화로, 차상위 계층에게는 취·창업을 통한 일반 노동시장 진출로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통합 및 보충급여 방식으로 인한 근로유인 저하 문제가 지적되어 왔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자활장려금이나 자활특례 제도를 실시하여 왔으나 여전히 자립을 위한 인센티브로서 그 기능이 미흡하다고 하였다. 자활특례제도는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수급자가 자활사업 참여에 따라 발생한 소득으로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인정액이 도달한 경우,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를 중단하는 대신에 최장 3년 기간 동안 자활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행급여 특례의 경우 희망키움 통장, 희망리본 사업,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가 탈수급하게 될 경우 최장 2년 동안 의료급여와 교육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저소득층의 가계지출 가운데서 의료급여와 교육급여 비중이 높지 않아 실제

www.kead.or.kr/KO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탈수급에 대한 유인으로 작동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안서연, 구인회, 이원진(2011)은 자활사업에 대한 논의에서 자활사업의 대상자는 비록 수급자나 빈곤층이라 하더라도 이들이 지는 인적자본의 양과 수준, 근로이력은 매우 다양하고, 가구 내 위치와 역할에 따라서도 근로 여건과 강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중고령자와 청년, 중장년 남성과 여성 등 대상 집단별로 세분화된 자활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들 연구를 통하여 첫째, 모든 집단에서 수급 탈출에 보편적으로 영향을 주는 변수는 '근로'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수급기간이 길어질수록 수급탈출 확률이 감소하는 현상은 일반적으로 수급자의 합리적 선택의 결과라기보다는 심리·정서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즉, 수급에 오래 머무르면서 무기력을 학습하여 수급탈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김용탁, 전주용, 이민영(2017)은 기존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지적된 문제점과 정책 제언 그리고 제언을 바탕으로 개선된 제도에 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2-6> 선행연구에서 지적된 문제점 및 제언과 개선 제도

| 지적사항 | 문제해결 방안(제언) | 개선된 제도 |
|---|---|---|
| 장애인추가비용 고려 없음 | - 장애인 가구의 추가비용 포함 | - 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 소득 제외 |
| 높은 수급 편익 | - 근로유인 동기 마련<br>- 근로소득 신고 체계 마련 | 행정처리 |
| 근로소득공제 항목 제한 | - 장애인의 경우 일반 사업장 확대<br>- 추가근로비용, 창업에 필요한 초기 투자비용 공제 | 없음 |
| 수급탈피 후 곧바로 급여 중단 | - 소득안정 시까지 현금 급여 지속 | 없음 |
| 낮은 근로소득 공제 비율 | - 자활사업 참여 시 소득공제율 상향 조정 | - 직업재활시설 등 50%<br>- 근로소득・사업소득 30%<br>- 행정・공공인턴 10% |

<표 2-6> (계속)

| 지적사항 | 문제해결 방안(제언) | 개선된 제도 |
|---|---|---|
| 급여 수급권 기간 | - 3년 이상으로 상향 조정 | - 현재 자활특례는 3년 |
| 의료비 문제 | - 의료급여 수급권 보장 | - 의료특례(본인만 해당) |
| 빈곤 유지 | - 자산형성 필요 | - 희망키움(생계・의료): 10만원<br>- 희망키움(주거・교육・차상위) : 10만원<br>- 내일키움(자활근로) : 자활사업단 매출 및 수익금 매칭 |
| 자산형성의 낮은 금액 문제 | - 적립금 증액<br>- 별도의 자산형성 지원 프로그램 도입 | 없음 |
| 자활사업목표 불분명 | - 조건부 수급자, 일반 수급자, 차상위 계층에 따라 다른 목표 제시 | 없음 |
| 자활사업 성과지표의 불확실성 | - 사업대상자에 따라 성과지표를 달리 책정해야 함 | 없음 |
| 부처별 사업대상자 구분 | -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정책 대상을 부처가 아닌 다른 형태로 대상화 | 없음 |
| 자활대상자의 인적 특성 무시 | - 자활대상자의 성별, 연령, 학력 등 인적 자본, 근로이력에 따라 프로그램 배치 필요 | 없음 |
| 근로와 연계된 심리적 문제 | - 수급기간을 줄여서 수급탈출 확률을 높여야 함 | - 근로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인별 자립계획 수립 |
| 저학력, 고용서비스 미경험의 문제 | - 교육/서비스 프로그램 개편 | 특별한 내용 없음 |
| 낮은 수입과 고용불안정으로 인한 취업 유지의 어려움 | - 고용안정<br>- 안정적 일자리 창출 | 특별한 내용 없음 |
| 급여 재신청의 어려움 | - 급여 재신청을 쉽게 하도록 하는 방안 | 없음 |

www.kead.or.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또한 국민기초생활수급 장애인을 시기별로 구분하여 수급 탈피의 문제점은 무엇이지 그리고 그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소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 2-7> 단계별 수급 탈피의 문제점과 해소 방안

| 없음시기 | 문제점 | 해소 방안 |
|---|---|---|
| 장애 등록<br>장애 발생 | ① 근로 무능력<br>② 근로의욕 감소<br>③ 근로의사 없음 | ① 근로능력 평가를 통한 가능한 서비스 종류 분류 - 취업·신체· 심리재활 등<br>② 관련 서비스 제공 및 기관 연계 |
| ↓ | | |
| 실업 | ① 취업 서비스 제공 못 받음<br>② 장애로 인한 근로 불가능 또는 근로의욕의 감소 | ① 장애 특성을 고려한 지원 정보 및 서비스 제공<br>② 훈련 서비스 제공<br>③ 실업 장애인 특화 프로그램: 사회적 기능 유지 |
| ↓ | | |
| 수급 신청 | ① 수급 관련 서비스 정보 미흡<br>② 수급 탈피 방안 제시 미흡 | ① 수급 관련 교육 프로그램<br>- 수급 내용, 의무, 탈피, 등에 대한 종합 지원<br>② 수급자에 대한 상담 프로그램<br>- 수급자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컨설팅 실시 |
| ↓ | | |
| 수급 유지 | ① 수급 탈피 방안 제시 미흡<br>② 수급자 의료비 가중 불안<br>③ 수급자 수급탈피 의욕감소<br>④ 근로 시 수급 급여 삭감 | ① 수급 관할 기관 - 고용서비스 연계<br>② 의료비 지원 방안<br>③ 근로의욕 고취 프로그램<br>④ 수급 탈피 두려움 등에 대한 심리 상담 등의 개입 |
| ↓ | | |

<표 2-7> (계속)

| 시기 | 문제점 | 해소 방안 |
|---|---|---|
| 수급탈피 | ① 각종 정보 제공 미흡<br>② 일할 기회가 없거나 일하게 되면 급여 축소 | ① 취업 및 직업훈련 서비스<br>② 아르바이트 등의 단기일자리 활성화<br>- 급여와 별개<br>③ 일하는 기간 동안의 적금 제도<br>④ 목돈 만들기 |
| ↓ | | |
| 고용유지 | ① 근로 시 수급 단절 두려움<br>② 일자리에서의 건강 문제<br>③ 고용 안정의 어려움<br>④ 취업 중 장애·건강 악화 | ① 수급 유예기간 연장<br>② 의료비 및 주거비 지원<br>③ 장애인 근로자 건강 보호 |

자료: 김용탁 외(2017)

국민기초생활수급 장애인의 탈수급 혹은 탈수급을 통한 노동시장 진입 방안에 대한 논의는 위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다. 이들 논의를 정리하면, 수급 탈피를 위한 방안, 고용으로 유인하는 방안, 고용을 유지하는 방안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각각의 단계에서 정보 제공이나 교육/직업훈련 그리고 일 경험 제공 역시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중증 장애인이나 정신 장애인 등에서는 의료비 문제가 핵심적인 이슈라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문제는 이렇듯 많이 제안된 방안들이 구체적인 제도 개선과 맞물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그런 점에서 기존 연구들에 대한 재검토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요구의 한계는 무엇인지 그리고 다시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이슈들은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찾을 것이며, 그런 논의에 기반하여 구체적이고 유효한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www.kead.or.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제3절 복지패널 분석

## 1. 분석 자료 및 개념 정의

본 연구의 분석 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18차년(2022년 조사) 한국 복지패널 조사 자료이다. 한국복지패널 조사는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기초로 2006년 설계된 가구단위 패널조사(목표 모집단 전국 거주 가구)로서 국내 가구단위 패널 조사 중 한국의료패널 조사 다음으로 규모가 큰 패널 조사이다. 2012년과 2022년 원표본 가구 감소에 대비하여 신규표본을 추가하여 18차년 기준으로 원표본 8,008가구 중 7,654가구가 조사 완료되었다(조사완료율 95.58%). 본 연구의 대상인 장애인 여부는 가구원 단위에서 설문을 통해 파악하며 1인 이상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를 장애인 가구로 정의하였다. 반면 기초수급 여부는 가구단위 설문에서 파악하고 기초수급 가구에 속한 가구원을 (모두) 기초수급자로 조작적인 정의를 하였다. 분석대상인 한국복지패널 조사는 표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확한 모집단 추정을 할 수 있도록 가중치를 산출하여 제공하고 있다. 이에 본 장에서는 복지패널이 제공하는 가중치[3]를 적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장애인 가구는 약 383만 가구로, 전체 가구에서 약 17.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초수급자 가구는 약 242만 가구로 전체 가구에서 약 11.2%를 차지하고 있다. 가구원 기준으로는 장애인 가구원은 전체 가구원의 약 6.6%를 차지하며 기초수급 가구원은 전체 가구원 중 약 7.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18차 한국복지패널이 제공하는 모수추정 일반 가중치(통합표본 횡단면 및 종단면 분석용)을 적용하여 분석

<표 2-8> 장애인 및 기초수급자 규모

(단위 : 천명, 가구, %)

| 구분 | 전체 | 장애인 | | 기초수급 | |
|---|---|---|---|---|---|
| 가구 | 21,579 | 3,833 | (17.8) | 2,427 | (11.2) |
| 가구원 | 51,628 | 3,419 | (6.6) | 3,741 | (7.2) |

## 2. 기초수급 장애인 특성 분석

기초수급 여부를 기준으로 장애인을 유형화하고 인적 특성, 장애, 건강 특성, 사회복지, 보험 등과 관련한 특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비장애인 기초수급자·비수급자 등 유형도 비교 대상으로 포함하여 검토하였다. 후술하는 경제활동 특성 분석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만 15세 이상 가구원으로 분석 대상을 제한하였다. 여기에서의 분석은 대부분 가구원 단위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보험, 소득수준 등 일부 변수에 대해서는 가구 단위에서 이루어졌다. 이들 변수의 정보는 개념상 가구 단위에서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장애인-기초수급 유형을 분류하면, 15세 이상 장애인은 2022년 현재 약 334만 명이고 전체 15세 이상 가구원(4,585만 명)에서 약 7.3%를 차지하고 있다. 장애인 기초수급자는 약 109만 명으로 15세 이상 장애인 전체에서 약 32.7%를 차지하는 데 비해 비장애인 중에서 기초수급 대상자는 약 5.9% 규모로 추정(약 250만 명)된다.

<표 2-9> 장애인-기초수급 유형별 규모

(단위 : 천명, %)

| 구분 | 전체 | | 기초수급자 | | 비수급자 | |
|---|---|---|---|---|---|---|
| 합계 | 45,852 | - | 3,588 | (7.8) | 42,263 | (92.2) |
| 장애인 | 3,334 | (7.3) | 1,091 | (32.7) | 2,243 | (67.3) |
| 비장애인 | 42,517 | (92.7) | 2,497 | (5.9) | 40,020 | (94.1) |

www.kead.or.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가. 기초 수급 장애인의 인적·장애 특성

전체 남자와 여자의 비율은 거의 일치하는데 반해 장애인의 성비율에서는 남자가 다소 높은데, 특히 비수급 장애인의 남자 비율은 약 57.4%로 좀 더 높았다. 반면, 비장애인의 경우, 특히 수급자에서 여자 비율이 좀 더 높았다.

<표 2-10> 기초수급 장애인 성별 분포

(단위 : 천명, %)

| 구분 | 전체 | 장애인 | | 비장애인 | |
|---|---|---|---|---|---|
| | | 수급자 | 비수급자 | 수급자 | 비수급자 |
| 합계 | 45,852 | 1,091 | 2,243 | 2,497 | 40,020 |
| 남자 | (49.5) | (53.4) | (57.4) | (39.6) | (49.6) |
| 여자 | (50.5) | (46.6) | (42.6) | (60.4) | (50.4) |

전체 가구원의 평균 연령은 약 48.0세이며 장애인의 평균 연령이 비장애인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장애인의 경우 특히 비수급자의 평균 연령이 수급자에 비해 높게 나타난 반면(비수급자 61.5세, 수급자 57.5세) 비장애인은 수급자의 연령이 좀 더 높게(수급자 55.5세, 비수급자 46.5세) 나타났다. 연령 계층으로 보면 30~50대가 과반수 이상(51.2%)을 나타냈으며, 장애인 수급자는 50~70대가 가장 많은 비중(68.5%)을 차지하고, 장애인 비수급자는 60~8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58.7%) 나타났다(<표 2-11> 참조).

장애인 기초수급자는 가장 평균적으로 학력이 낮게 나타난 집단으로 비수급자에 비해 무학(15.2%) 및 초·중·고졸(75.6%)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저학력은 노동시장에서 취약점으로 작용하는 대표적 요인 중 하나로서 기초수급 장애인의 경우, 장애와 저학력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볼 수 있다(<표 2-12> 참조).

<표 2-11> 기초수급 장애인 연령 분포

(단위 : 천명, 세, %)

| 연령 | 전체 | 장애인 | | 비장애인 | |
|---|---|---|---|---|---|
| | | 수급자 | 비수급자 | 수급자 | 비수급자 |
| 합계 | 45,852 | 1,091 | 2,243 | 2,497 | 40,020 |
| 15~19세 | (5.3) | (3.2) | (3.2) | (5.1) | (5.5) |
| 20~29세 | (14.7) | (4.2) | (2.8) | (15.6) | (15.6) |
| 30~39세 | (14.9) | (6.4) | (5.4) | (5.3) | (16.3) |
| 40~49세 | (17.6) | (10.0) | (11.4) | (5.9) | (18.9) |
| 50~59세 | (18.7) | (28.5) | (17.4) | (17.8) | (18.6) |
| 60~69세 | (15.7) | (27.4) | (23.8) | (23.0) | (14.5) |
| 70~79세 | (7.8) | (12.6) | (21.7) | (13.6) | (6.6) |
| 80~89세 | (4.7) | (6.6) | (13.2) | (12.7) | (3.6) |
| 90세 이상 | (0.6) | (1.0) | (1.1) | (1.1) | (0.4) |
| 평균 연령 | 48.0 | 57.5 | 61.5 | 55.5 | 46.5 |

<표 2-12> 기초수급 장애인 교육수준

(단위 : 천명, 년, %)

| 학력 | 전체 | 장애인 | | 비장애인 | |
|---|---|---|---|---|---|
| | | 수급자 | 비수급자 | 수급자 | 비수급자 |
| 합계 | 45,852 | 1,091 | 2,243 | 2,497 | 40,020 |
| 무학 | (4.0) | (15.2) | (10.6) | (12.6) | (2.7) |
| 초·중·고 | (50.4) | (75.6) | (71.5) | (63.3) | (47.8) |
| 대학 | (42.4) | (8.8) | (15.7) | (22.8) | (46.0) |
| 대학원 | (3.2) | (0.3) | (2.2) | (1.4) | (3.6) |

주 : 초등 중퇴는 교육연수 1년으로 처리, 중등 재학·휴학·중퇴는 초졸, 고등 재학·휴학·중퇴는 중졸, 대학 재학·휴학·중퇴는 고졸, 대학원 재학·휴학·중퇴는 대졸 등으로 처리

장애인 기초수급자의 연간 평균 가구소득은 2.4천만원 대로 나타나 전체 평균(경상소득 기준 5.765천만원, 가처분 소득 기준 5.161천만원)의 43~46% 수준으로 나타났다. 단 비장애인 수급자의 경우 연간 평균 가구소득이 전체 평균의 34~38%로 장애인 기초수급자에 비해서도 평균 가구소득이 더 낮으며 수급가구와 비수급가구 간 소득격차 또한 더 높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www.kead.or.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표 2-13> 기초수급 장애인 가구소득 분포

(단위 : 만원, %)

| 가구소득 | 전체 | 장애인 | | 비장애인 | |
|---|---|---|---|---|---|
| | | 수급자 | 비수급자 | 수급자 | 비수급자 |
| 경상소득 | 5,765 | 2,485 | 5,219 | 1,950 | 6,383 |
| | (100) | (43.1) | (90.5) | (33.8) | (110.7) |
| 가처분소득 | 5,161 | 2,420 | 4,734 | 1,907 | 5,680 |
| | (100) | (46.9) | (91.7) | (37.0) | (110.1) |

주 : 가구 기준.

기초수급 장애인의 장애유형을 보면 지체장애 32.0%, 정신지체(지적) 장애가 20.2%, 정신장애가 11.7% 그리고 시각장애가 10.2% 순으로 나타났다. 수급 여부에 따라 장애 유형 분포에 현저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지적장애(수급 20.2%, 비수급 8.0%)와 정신장애(수급 11.7%, 비수급 2.2%)에서 상당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2-14> 기초수급 장애인 장애유형

(단위 : 천명, %)

| 장애유형 | 전체 | 장애인 | |
|---|---|---|---|
| | | 수급자 | 비수급자 |
| 합계 | 45,852 | 1,091 | 2,243 |
| 지체장애 | (42.5) | (32.0) | (47.7) |
| 뇌병변장애 | (8.2) | (9.2) | (7.7) |
| 시각장애 | (9.5) | (10.2) | (9.1) |
| 청각장애 | (8.7) | (6.4) | (9.8) |
| 언어장애 | (0.4) | (0.0) | (0.4) |
| 정신지체(지적) | (12.0) | (20.2) | (8.0) |
| 발달장애(자폐성) | (1.3) | (2.8) | (0.6) |
| 정신장애 | (5.3) | (11.7) | (2.2) |
| 신장장애 | (6.8) | (3.2) | (8.5) |
| 심장장애 | (0.1) | (0.2) | (0.1) |

<표 2-14> (계속)

| 장애유형 | 전체 | 장애인 | |
|---|---|---|---|
| | | 수급자 | 비수급자 |
| 호흡기장애 | (0.8) | (1.3) | (0.5) |
| 간장애 | (0.5) | (0.3) | (0.6) |
| 안면장애 | (0.3) | (0.0) | (0.4) |
| 장루·요루장애 | (0.4) | (0.2) | (0.5) |
| 간질장애 | (0.7) | (1.2) | (0.5) |
| 비등록장애인 | (2.7) | (1.3) | (3.4) |

장애인 기초 수급자가 장애인 비수급자에 비해 장애 정도가 보다 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수급 장애인의 경우 중증장애가 64.5%를 차지하는 반면, 비수급 장애인은 경증 장애 수준에서 61.0%를 차지하고 있다. 장애의 중증도는 장애인의 노동시장 진입의 주요 요인이라는 점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표 2-15> 기초수급 장애인 장애 정도

(단위 : 천명, %)

| 장애등급 | 전체 | 장애인 | |
|---|---|---|---|
| | | 수급자 | 비수급자 |
| 합계 | 45,852 | 1,091 | 2,243 |
| 중증 장애인 | (3.3) | (64.5) | (35.6) |
| 경증 장애인 | (3.8) | (34.2) | (61.0) |
| 비등록장애인 | (0.2) | (1.3) | (3.4) |

전반적으로 장애인의 건강 상태는 비장애인에 비해 보다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 이하의 건강상태라고 응답한 장애인이 약 68~70%인 반면 수급을 받지 않는 비장애인의 경우는 약 26% 정도에 불과했다. 수급을 받고 있는 비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통 이하의 건강상태로 응답한 비율이 약 61% 정도로 비수급자에 비해 열악했으나 수급 장애인(약 70%), 비수급 장애인(약 69%)에 비해서는 양호하였다.

www.kead.or.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표 2-16> 기초수급 장애인 건강상태

(단위 : 천명, %)

| 건강상태 | 전체 | 장애인 | | 비장애인 | |
|---|---|---|---|---|---|
| | | 수급자 | 비수급자 | 수급자 | 비수급자 |
| 합계 | 45,852 | 1,091 | 2,243 | 2,497 | 40,020 |
| 매우건강 | (10.2) | (0.2) | (2.7) | (5.3) | (11.2) |
| 건강한편 | (58.5) | (30.2) | (28.6) | (33.2) | (62.5) |
| 보통 | (19.2) | (26.3) | (30.1) | (25.1) | (18.0) |
| 안 좋은 편 | (11.0) | (39.8) | (33.1) | (30.6) | (7.8) |
| 매우 안 좋음 | (1.1) | (3.6) | (5.5) | (5.8) | (0.5) |

건강상태에 대한 자가설문은 응답자의 건강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을 반영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의료기관 이용 빈도를 질의하여 건강 상태를 파악하였다. 외래진료 횟수는 평균 25.5~29.5회, 비장애인은 평균 10.1~24.8회 등으로 나타나 장애인의 외래진료 횟수는 비장애인에 비해 좀 더 열악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장애인 내에서는 기초수급자의 외래진료 횟수가 좀 더 많으며 수급자의 외래진료 횟수는 평균 29.5회, 비수급자는 약 25.5회를 보이고 있다.

<표 2-17> 기초수급 장애인 외래진료 횟수

(단위 : 천명, 회, %)

| 진료횟수 | 전체 | 장애인 | | 비장애인 | |
|---|---|---|---|---|---|
| | | 수급자 | 비수급자 | 수급자 | 비수급자 |
| 합계 | 45,852 | 1,091 | 2,243 | 2,497 | 40,020 |
| 0회 | (11.1) | (2.2) | (5.0) | (6.0) | (12.0) |
| 1~10회 | (52.0) | (23.3) | (34.4) | (37.7) | (54.6) |
| 11~30회 | (29.2) | (48.4) | (41.3) | (36.0) | (27.6) |
| 31~50회 | (4.5) | (14.5) | (8.8) | (9.6) | (3.7) |
| 51~100회 | (2.1) | (5.1) | (4.1) | (6.4) | (1.6) |
| 101~200회 | (0.9) | (6.0) | (6.1) | (3.1) | (0.3) |
| 201회 이상 | (0.2) | (0.5) | (0.3) | (1.2) | (0.1) |
| 평균 진료횟수 | 12.1 | 29.5 | 25.5 | 24.8 | 10.1 |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만성질환으로 인한 6개월 이상 장기 투병·투약의 비율이 더 높으며 특히 수급 장애인의 경우 전체 중 88.7%로 비수급 장애인(77.2%)에 비해서도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비장애인 수급자의 경우에도 비수급자(36.3%)에 비해 6개월 이상 장기 투병 및 투약의 비중이 높지만(66.7%) 장애인 수급자 및 비수급자에 비해서는 낮은 수치로 이는 장애인이 의료지출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표 2-18> 기초수급 장애인 만성질환 유형

(단위 : 천명, %)

| 만성질환 기간 | 전체 | 장애인 | | 비장애인 | |
|---|---|---|---|---|---|
| | | 수급자 | 비수급자 | 수급자 | 비수급자 |
| 합계 | 45,852 | 1,091 | 2,243 | 2,497 | 40,020 |
| 비해당 | (53.1) | (9.5) | (20.9) | (29.5) | (57.6) |
| 3개월 미만 투병 · 투약 | (4.4) | (1.3) | (1.1) | (2.8) | (4.8) |
| 3~6개월 미만 투병 · 투약 | (1.3) | (0.5) | (0.8) | (1.1) | (1.4) |
| 6개월 이상 투병 · 투약 | (41.2) | (88.7) | (77.2) | (66.7) | (36.3) |

## 나. 기초수급 장애인의 사회복지 · 보험 수혜 특성

기초생활보장급여 유형별로 수급 비중을 살펴본 결과 주거 및 의료급여에 대한 수급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전체 기초수급 장애인[4] 중 생계급여를 수급하는 비중은 90.9%, 의료수급은 93.0%의 기초수급 장애인이 수급, 주거급여는 96.7%, 교육급여는 10.2%의 기초수급 장애인이 수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징적인 것은 비장애인 수급자에 비해 장애인 수급자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수령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4) 기초생활보장급여 각 유형 중 최소 1개 유형의 급여를 수급하는 자를 모수로 함

www.kead.or.kr KO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표 2-19> 기초수급 장애인 수급형태

(단위 : 천명, %)

| 수급형태 | 전체 | 장애인 | | 비장애인 | |
|---|---|---|---|---|---|
| | | 수급자 | 비수급자 | 수급자 | 비수급자 |
| 합계 | 45,852 | 1,091 | 2,243 | 2,497 | 40,020 |
| 생계급여 | (6.1) | (90.9) | - | (71.7) | - |
| 의료급여 | (6.4) | (93.0) | - | (77.1) | - |
| 주거급여 | (7.4) | (96.7) | - | (94.1) | - |
| 교육급여 | (0.9) | (10.2) | - | (12.8) | - |

기초수급 장애인의 경우 공적연금 가입에 해당하지 않는 대상의 비중이 85.0%로 장애인 비수급자(36.2%), 비장애인 비수급자(28.1%)는 물론 비장애인 수급자(67.1%)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공적 연금 수급 비율은 장애인·비장애인 등 가릴 것 없이 비수급자에 비해 기초수급자에서 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5]. 그러나 장애인 수급자의 경우 비장애인 수급자에 비해 연금 가입 비중은 낮은 반면(4.7% vs 23.4%) 수령 비중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9.9% vs. 8.5%).

<표 2-20> 기초수급 장애인 공적연금 가입형태

(단위 : 천명, %)

| 공적연금 가입형태 | 전체 | 장애인 | | 비장애인 | |
|---|---|---|---|---|---|
| | | 수급자 | 비수급자 | 수급자 | 비수급자 |
| 합계 | 45,852 | 1,091 | 2,243 | 2,497 | 40,020 |
| 비해당 | (32.0) | (85.0) | (36.2) | (67.1) | (28.1) |
| 연금수급 | (13.8) | (9.9) | (32.9) | (8.5) | (13.2) |
| 연금가입 | (52.4) | (4.7) | (28.8) | (23.4) | (56.8) |
| 수급 &가입 | (0.3) | (0.0) | (1.2) | (0.2) | (0.2) |
| 미가입 | (1.5) | (0.3) | (0.8) | (0.9) | (1.6) |

5) 여기서 공적연금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직 우체국연금 등을 포함하고 보훈연금은 제외된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개인연금과 종신보험을 포함한 사적연금의 경우 전체 중에서도 미가입 비중이 약 80%로 매우 낮다. 그러나 기초수급자, 특히 장애인 기초수급자의 경우는 미가입 비율이 99.3%로 배우 높으며 이는 기초수급 장애인의 소득수준에서 사적연금을 가입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표 2-21> 기초수급 장애인 사적연금 가입형태

(단위 : 천명, %)

| 사적연금 가입형태 | 전체 | 장애인 | | 비장애인 | |
|---|---|---|---|---|---|
| | | 수급자 | 비수급자 | 수급자 | 비수급자 |
| 합계 | 45,852 | 1,091 | 2,243 | 2,497 | 40,020 |
| 개인연금 | (5.8) | (0.5) | (5.0) | (0.7) | (6.3) |
| 종신보험 | (11.0) | (0.2) | (7.6) | (2.5) | (12.0) |
| 개인 & 종신 | (3.3) | (0.0) | (1.3) | (0.0) | (3.7) |
| 미가입 | (79.9) | (99.3) | (86.2) | (96.9) | (78.0) |

우리나라 사회의료체계, 즉 건강보험은 대국민 모두를 포괄하고 있으며 직장·지역, 기초수급 여부 등에 따라 가입형태는 상이하게 나타났다. 대체로 직장·지역가입(피부양자, 세대원 등 포함) 유형이 전체 중 약 95%를 차지하고 나머지 5%는 의료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형태를 보인다. 의료급여 형태의 건강보험 가입은 주로 기초수급자에게서 볼 수 있다. 특히 장애인 수급자의 경우 비장애인 수급자에 비해 의료급여를 수급하는 비중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장애인 수급자의 경우, 전체 중 의료급여(1종과 2종)을 수급하는 비중이 87.2%인데 반해, 비장애인 수급자의 경우 전체 중 의료급여를 수급하는 비중이 57.2%로 나타나 30%가량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1종 의료급여 수급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차이를 상당 부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www.kead.or.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표 2-22> 기초수급 장애인 건강보험 가입형태

(단위 : 천명, %)

| 건강보험 가입 | 전체 | 장애인 | | 비장애인 | |
|---|---|---|---|---|---|
| | | 수급자 | 비수급자 | 수급자 | 비수급자 |
| 합계 | 45,852 | 1,091 | 2,243 | 2,497 | 40,020 |
| 직장가입 | (39.4) | (1.9) | (23.0 | (12.7) | (37.8) |
| 직장가입피부양자 | (30.4) | (3.0) | (42.8) | (12.2) | (37.7) |
| 지역가입 | (15.2) | (4.4) | (21.7) | (14.2) | (13.3) |
| 지역가입세대원 | (9.8) | (0.9) | (12.6) | (4.0) | (11.2) |
| 의료급여1종 | (3.9) | (78.0) | (0.0) | (39.3) | (0.0) |
| 의료급여2종 | (1.2) | (9.2) | (0.0) | (17.9) | (0.0) |
| 국가유공무료진료 | (.1) | (2.6) | (0.0) | (0.7) | (0.0) |

## 다. 기초수급 장애인의 경제활동 특성

본 장에서는 기초수급 장애인의 경제활동 특성을 살펴본다. 우선 기초수급 장애인의 주된 경제활동 상태를 살펴보면 15세 이상 전체 가구원 중에서 취업자는 약 63.8%, 실업자는 1.4%, 비경제활동인구는 34.8% 등으로 나타났다.[6] 대체로 취업자 비율은 장애인에서 낮고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은 장애인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장애인 내에서는 기초수급자의 비경제활동 비율이 높고 비수급자는 취업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대체로 경제활동상태는 장애인 - 기초수급 여부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인지할 수 있다. 비장애인보다는 장애인에서, 비수급자보다는 수급자에서, 그리고 기초수급 장애인에서 취업 비율(10.7%)이 가장 낮고 비경제활동 비율(89.1%)이 가장 높았다.

6) 후술하는 3절의 경제활동 상태 지표와 다소의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가구원 개인 설문에서 해당 문항의 결측값(missing data)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후술은 비경제활동인구에 대해 근로능력 유무를 제공하는 가구원 설문 자료에 기초하고 있다.

<표 2-23> 기초수급 장애인 주된 경제활동 상태

(단위 : 천명, %)

| 경제활동 형태 | 전체 | 장애인 | | 비장애인 | |
|---|---|---|---|---|---|
| | | 수급자 | 비수급자 | 수급자 | 비수급자 |
| 합계 | 45,852 | 1,091 | 2,243 | 2,497 | 40,020 |
| 상용직 | (28.3) | (0.9) | (10.2) | (6.9) | (31.4) |
| 임시직 | (16.4) | (2.9) | (15.1) | (14.8) | (16.9) |
| 일용직 | (4.4) | (0.1) | (1.8) | (6.9) | (4.5) |
| 자활·공공·노인일자리 | (2.1) | (2.7) | (4.4) | (3.1) | (1.9) |
| 고용주 | (1.7) | (0.0) | (1.3) | (0.5) | (1.9) |
| 자영업자 | (8.6) | (3.3) | (12.2) | (2.7) | (8.9) |
| 무급가족종사자 | (2.3) | (0.7) | (1.7) | (1.0) | (2.4) |
| 실업자 | (1.4) | (0.2) | (0.1) | (1.6) | (1.5) |
| 비경활 | (34.8) | (89.1) | (53.2) | (62.5) | (30.6) |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이들의 고용관계를 살펴보면, 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에 비해 간접고용의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의 경우 간접고용 비중이 9%(수급자)~9.9%(비수급자)인 반면, 비장애인의 경우는 간접고용 비중이 4.9%(비수급자)~5.6%(수급자)로 차이를 4% 내외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장애인 내에서는 기초수급자의 간접·특수고용 비율과 비수급자에서의 비율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10.5%, 11.7%).

<표 2-24> 기초수급 장애인 고용관계(임금근로자)

(단위 : 천명, %)

| 고용형태 | 전체 | 장애인 | | 비장애인 | |
|---|---|---|---|---|---|
| | | 수급자 | 비수급자 | 수급자 | 비수급자 |
| 합계 | 22,488 | 42 | 607 | 715 | 21,122 |
| 직접고용 | (91.2) | (89.5) | (88.3) | (92.6) | (91.2) |
| 간접고용 | (5.1) | (9.0) | (9.9) | (5.6) | (4.9) |
| 특수고용 | (3.7) | (1.5) | (1.8) | (1.8) | (3.9) |

주 : 만 15세 이상 가구원. 임금근로자(상용직+임시직+일용직+자활등) 기준

다음으로 임금근로자의 근로형태를 살펴보면, 대체로 장애인의 시간제 비율은 비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장애인의 시간제 비율은 약 19.7~29.3%인 반면, 비장애인은 11.5~41.4%를 보였다. 이는 장애인이 장애 등으로 인한 건강 상태 상 시간제 일자리를 선호하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 내에서는 기초수급자의 시간제 비율이 비수급자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장애인 기초수급자 29.3%, 장애인 비수급자 19.7%). 이는 기초수급 장애인이 수급 요건 충족을 위해 고임금 일자리를 피하는 경향을 반영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도 있다.

<표 2-25> 기초수급 장애인 근로형태(임금근로자)

(단위 : 천명, %)

| 근로형태 | 전체 | 장애인 | | 비장애인 | |
|---|---|---|---|---|---|
| | | 수급자 | 비수급자 | 수급자 | 비수급자 |
| 합계 | 22,488 | 42 | 607 | 715 | 21,122 |
| 시간제 | (12.7) | (29.3) | (19.7) | (41.4) | (11.5) |
| 전일제 | (87.3) | (70.7) | (80.3) | (58.6) | (88.5) |

주 : 만 15세 이상 가구원. 임금근로자(상용직+임시직+일용직+자활 등) 기준

전체 취업자는 대체로 전문가, 사무직, 단순노무 등의 직종에 가장 많이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장애인은 단순노무직, 농림·어업직, 장치·기계 조립직 등 숙련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직종에 종사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수급자의 단순노무 종사자 비율은 47.6%로 나타났으며, 비수급 장애인의 단순노무 비율도 27.8%를 보인다. 이 수치는 비장애인 수급자의 27.8%, 비장애인 비수급자의 16.5%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26> 기초수급 장애인 직종 유형(취업자)

(단위 : 천명, %)

| 직종 | 전체 | 장애인 | | 비장애인 | |
|---|---|---|---|---|---|
| | | 수급자 | 비수급자 | 수급자 | 비수급자 |
| 합계 | 29,220 | 115 | 1,046 | 897 | 27,160 |
| 관리자 | (4.6) | (4.7) | (3.9) | (2.0) | (4.7) |
| 전문가 | (17.4) | (6.8) | (3.7) | (13.6) | (18.1) |
| 사무직 | (16.6) | (6.0) | (12.4) | (11.3) | (17.0) |
| 서비스 | (10.8) | (1.3) | (6.7) | (15.8) | (10.8) |
| 판매직 | (9.4) | (11.5) | (6.7) | (13.8) | (9.3) |
| 농림 · 어업 | (6.6) | (21.2) | (13.3) | (2.6) | (6.4) |
| 기능원 | (8.7) | (0.0) | (9.9) | (8.5) | (8.7) |
| 장치 · 기계조작 | (8.4) | (.9) | (15.7) | (6.2) | (8.2) |
| 단순노무 | (17.3) | (47.6) | (27.8) | (26.2) | (16.5) |
| 군인 | (.2) | (0.0) | (0.0) | (0.0) | (.3) |

주 : 만 15세 이상 가구원

취업자는 대체로 제조업, 도소매·운수·숙박업, 공공행정·교육·보건업 등의 업종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업종별 취업자 분포는 장애인 여부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장애인 취업자의 농림·어업, 임업 건설업 등 종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13.6~21.8%). 기초수급 여부에 따른 업종별 취업자 분포 역시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기초수급 비장애인의 경우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 상대적으로 높았다(17.5%)(<표 2-27> 참조).

취업자의 사업장 규모는 5인 미만 사업장 비율이 가장 많았으며(32.6%), 300인 미만 중소기업 규모는 약 82.8%로 나타나 취업자의 대다수가 중소기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업장 규모별 취업자 분포는 장애인 여부에 별다른 차이가 없으나 기초수급 여부에서는 비수급자의 대기업(300인 이상) 취업자 비율이 16.2%인 반면, 수급자는 3.7%로 차이를 보였다(<표 2-28> 참조).

www.kead.or.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표 2-27> 기초수급 장애인 업종 유형(취업자)

(단위 : 천명, %)

| 업종 | 전체 | 장애인 | | 비장애인 | |
|---|---|---|---|---|---|
| | | 수급자 | 비수급자 | 수급자 | 비수급자 |
| 합계 | 28,414 | 114 | 1,045 | 897 | 26,357 |
| 농업, 임업 및 어업(01~03) | (6.9) | (21.8) | (13.6) | (2.7) | (2.7) |
| 광업(05~08) | (.2) | (.0) | (.0) | (0.0) | (0.0) |
| 제조업(10~34) | (17.8) | (9.2) | (12.6) | (6.5) | (6.5) |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35) | (.7) | (.0) | (.8) | (0.0) | (0.0) |
|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36~39) | (.7) | (1.6) | (.1) | (0.0) | (0.0) |
| 건설업(41~42) | (7.6) | (.0) | (8.3) | (6.2) | (6.2) |
| 도매 및 소매업(45~47) | (12.5) | (13.5) | (9.5) | (16.7) | (16.7) |
| 운수 및 창고업(49~52) | (5.3) | (.0) | (7.6) | (4.3) | (4.3) |
| 숙박 및 음식점업(55~56) | (6.7) | (2.2) | (6.0) | (14.2) | (14.2) |
| 정보통신업(58~63) | (4.0) | (4.1) | (1.5) | (3.7) | (3.7) |
| 부동산업(68) | (1.1) | (.0) | (1.2) | (.2) | (.2) |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0~73) | (2.7) | (.0) | (1.5) | (1.0) | (1.0) |
|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74~76) | (4.1) | (8.1) | (5.9) | (4.3) | (4.3) |
|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84) | (6.1) | (27.6) | (10.9) | (4.9) | (4.9) |
| 교육 서비스업(85) | (5.8) | (.2) | (4.5) | (6.0) | (6.0) |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6~87) | (10.6) | (3.9) | (9.0) | (17.5) | (17.5) |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91) | (1.6) | (.0) | (.3) | (1.0) | (1.0) |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94~96) | (4.9) | (7.8) | (5.0) | (8.9) | (8.9) |
|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 생산활동(97~98) | (.8) | (.0) | (1.4) | (1.8) | (1.8) |
| 국제 및 외국기관(99) | (.0) | (.0) | 0.0) | (0.0) | (0.0) |

주 : 만 15세 이상 가구원. 결측값(missing data) 제외

<표 2-28> 기초수급 장애인 사업장 규모(취업자)

(단위 : 천명, %)

| 규모 | 전체 | 장애인 | | 비장애인 | |
|---|---|---|---|---|---|
| | | 수급자 | 비수급자 | 수급자 | 비수급자 |
| 합계 | 29,220 | 115 | 1,046 | 897 | 27,160 |
| 5인 미만 | (32.6) | (39.8) | (40.4) | (42.1) | (32.0) |
| 5~10인 미만 | (11.7) | (24.8) | (5.2) | (11.4) | (11.9) |
| 10~30인 미만 | (14.6) | (20.0) | (13.9) | (20.4) | (14.4) |
| 30~100인 미만 | (15.1) | (11.0) | (14.2) | (12.9) | (15.3) |
| 100~300인 미만 | (8.4) | (0.7) | (8.3) | (5.2) | (8.6) |
| 300~1,000인 미만 | (4.8) | (3.7) | (5.1) | (4.5) | (4.8) |
| 1,000인 이상 | (12.4) | (0.0) | (11.1) | (3.6) | (12.8) |
| 잘 모름 | (0.4) | (0.0) | (1.9) | (0.0) | (0.4) |

한편, 비경제활동인구는 근로의사 없음, 학업, 가사 등을 주된 사유로 취업이나 구직 등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은 근로의사 없음, 구직활동포기, 근로무능력 등이 비경제활동의 주된 사유로 나타났고, 비장애인은 학업, 가사, 근로의사 없음 등이 주된 사유로 나타났다. 특히 기초수급 장애인의 비경제활동 사유는 근로의사 없음이 84.1%를 차지하였는데, 이 비율은 장애인 비수급자 61.7%, 비장애인 수급자 74.4%, 비장애인 비수급자 36.0%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난 것이다.

www.kead.or.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표 2-29> 기초수급 장애인 비경제활동 사유(비경제활동인구)

(단위 : 천명, %)

| 사유 | 전체 | 장애인 | | 비장애인 | |
|---|---|---|---|---|---|
| | | 수급자 | 비수급자 | 수급자 | 비수급자 |
| 합계 | 15,967 | 973 | 1,194 | 1,560 | 12,239 |
| 근로무능력 | (1.6) | (4.7) | (11.1) | (0.7) | (0.6) |
| 군복무 | (0.9) | (0.0) | (0.0) | (0.0) | (1.2) |
| 정규교육기관학업 | (19.8) | (1.7) | (4.6) | (8.2) | (24.2) |
| 진학준비 | (1.5) | (0.0) | (0.5) | (0.7) | (1.8) |
| 취업준비 | (5.5) | (0.3) | (0.2) | (2.3) | (6.8) |
| 가사 | (15.8) | (5.2) | (12.2) | (6.6) | (18.2) |
| 양육 | (4.1) | (0.0) | (0.4) | (0.4) | (5.2) |
| 간병 | (0.6) | (0.5) | (0.5) | (1.1) | (0.5) |
| 구직활동포기 | (5.3) | (3.6) | (8.1) | (5.5) | (5.2) |
| 근로의사없음 | (44.6) | (84.1) | (61.7) | (74.4) | (36.0) |
| 기타 | (0.3) | (0.0) | (0.7) | (0.1) | (0.3) |

주 : 만 15세 이상 가구원. 결측값(missing data) 제외

## 3. 비경활(근로능력) 기초수급 장애인 특성 분석

본 절에서는 앞 절의 기초수급 여부에 따른 장애인 유형 분류에 경제활동 여부를 추가하여 장애인의 유형을 좀 더 세분하고 인적 특성, 장애·건강, 경제활동 등 경제활동(고용) 관점에서 장애인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분석은 가구원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경제활동상태 분석 등을 고려하여 만 15세 이상 가구원으로 연령을 제한하였다.

2022년 현재 15세 이상 가구원 중에서 취업자 비율은 63.7%, 실업자 비율은 1.4%,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은 약 34.9%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근로능력을 가진 사람이 34.3%로, 비경제활동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장애인의 경우 기초수급 대상자에서 미취업자의 비율이 높고 비수급 대상

자에서 취업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기초수급 장애인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비경제활동인구가 85.0% 규모로 추정되며, 비수급 장애인의 47.3%에 비해 현저하게 높게 나타났다. 한편, 비장애인에서도 기초수급자의 비경활(근로능력) 비율이 비수급자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표 2-30> 기초수급 장애인 근로유형별 규모

(단위 : 천명, %)

| 근로유형 | 전체 | 장애인 | | 비장애인 | |
|---|---|---|---|---|---|
| | | 수급자 | 비수급자 | 수급자 | 비수급자 |
| 합계 | 45,852 | 1,091 | 2,243 | 2,497 | 40,020 |
| | (100.0) | (2.4) | (4.9) | (5.4 | (87.3) |
| 취업자 | 29,220 | 115 | 1,046 | 897 | 27,160 |
| | (63.7) | (10.6) | (46.6) | (35.9) | (67.9) |
| 실업자 | 664 | 2 | 2 | 38 | 619 |
| | (1.4) | (0.2) | (0.1) | (1.6) | (1.5) |
| 비경활(근로능력) | 15,707 | 927 | 1,061 | 1,550 | 12,167 |
| | (34.3) | (85.0) | (47.3) | (62.1) | (30.4) |
| 비경활(무능력) | 260 | 45 | 132 | 10 | 72 |
| | (0.6) | (4.2) | (5.9) | (0.4) | (0.2) |

주 : 만 15세 이상 가구원. 결측값(missing data) 제외

### 가. 비경활(근로능력) 기초수급 장애인의 인적 특성

비경제활동인구 중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의 수급자는 남자가 51.4%, 여자가 48.6%로 나타났다. 취업자 중 기초수급자는 남자가 67.0%, 여자가 33.0%로, 취업 남성이 수급자인 비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www.kead.or.kr/KO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표 2-31> 비경활(근로능력) 기초수급 장애인 성별 분포

(단위 : 천명, %)

| 성별 | 전체 | 비경활(근로능력) | | 취업자 | |
|---|---|---|---|---|---|
| | | 수급자 | 비수급자 | 수급자 | 비수급자 |
| 합계 | 3,335 | 927 | 1,061 | 115 | 1,046 |
| 남자 | (56.1) | (51.4) | (45.2) | (67.0) | (70.5) |
| 여자 | (43.9) | (48.6) | (54.8) | (33.0) | (29.5) |

평균 연령의 경우 장애인 취업자의 경우 수급자가 52.6세 비수급자가 59.6세인데 비해 비경활 장애인은 수급자가 58.2세, 비수급자 63.7세로 나타났다. 연령계층에서도 이러한 격차를 확인할 수 있는데, 장애인 취업자는 20대, 40~50대 등이 다수인 반면, 비경활(근로능력) 장애인은 50~70대가 다수로 나타났다.

<표 2-32> 비경활(근로능력) 기초수급 장애인 연령 분포

(단위 : 천명, 세, %)

| 연령 | 전체 | 비경활(근로능력) | | 취업자 | |
|---|---|---|---|---|---|
| | | 수급자 | 비수급자 | 수급자 | 비수급자 |
| 합계 | 3,335 | 927 | 1,061 | 115 | 1,046 |
| 15~19세 | (3.2) | (3.8) | (5.0) | (0.0) | (0.0) |
| 20~29세 | (3.3) | (3.3) | (2.9) | (8.8) | (2.2) |
| 30~39세 | (5.7) | (5.1) | (7.0) | (14.5) | (4.5) |
| 40~49세 | (11.0) | (10.7) | (5.5) | (5.5) | (17.6) |
| 50~59세 | (21.0) | (28.9) | (11.0) | (30.8) | (26.0) |
| 60~69세 | (25.0) | (26.1) | (23.3) | (33.6) | (25.0) |
| 70~79세 | (18.7) | (13.8) | (25.9) | (4.2) | (16.6) |
| 80~89세 | (11.0) | (7.2) | (17.1) | (2.2) | (8.1) |
| 90세 이상 | (1.1) | (1.1) | (2.3) | (0.4) | (0.1) |
| 평균 연령 | - | 58.2 | 63.7 | 52.6 | 59.6 |

학력 수준을 살펴보면, 장애인 취업자는 대졸 이상 고학력의 비율이 높은 반면 비경활(근로능력) 장애인은 무학력, 초·중졸 등 저학력의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다만, 비경활 장애인의 경우 수급과 비수급간의 교육 수준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표 2-33> 비경활(근로능력) 기초수급 장애인 교육수준

(단위 : 천명, 년, %)

| 학력 | 전체 | 비경활(근로능력) | | 취업자 | |
|---|---|---|---|---|---|
| | | 수급자 | 비수급자 | 수급자 | 비수급자 |
| 합계 | 3,335 | 927 | 1,061 | 115 | 1,046 |
| 무학 | (2.0) | (7.4) | (6.8) | (2.6) | (4.2) |
| 초졸 중퇴 | (1.9) | (7.8) | (7.8) | (4.9) | (2.9) |
| 초졸 | (9.5) | (25.6) | (22.1) | (42.1) | (19.1) |
| 중졸 | (10.8) | (22.3) | (21.8) | (3.7) | (14.0) |
| 고졸 | (30.1) | (27.8) | (26.3) | (34.0) | (39.1) |
| 전문대졸 | (18.7) | (6.4) | (7.1) | (2.6) | (6.6) |
| 대학졸 | (23.6) | (2.3) | (5.7) | (10.0) | (12.3) |
| 석사졸 | (2.8) | (0.4) | (2.0) | (0.0) | (0.9) |
| 박사졸 | (0.5) | (0.0) | (0.4) | (0.0) | (1.0) |

주 : 중등 재학·휴학·중퇴는 초졸, 고등 재학·휴학·중퇴는 중졸, 대학 재학·휴학·중퇴는 고졸, 대학원 재학·휴학·중퇴는 대졸 등으로 처리

## 나. 비경활(근로능력) 기초수급 장애인의 장애·건강 특성

장애인 비경제활동인구 중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지체장애, 정신지체장애, 정신장애 순으로 나타났으며, 취업자 중 수급자는 정신지체장애, 지체장애, 시각장애 순으로 나타났다. 정신지체 장애인의 경우 취업자이면서도 기초수급

www.kead.or.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비율(25.2%)이 비경활 인구 중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비중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표 2-34> 참조).

비경활(근로능력) 장애인이나 취업자 중 수급자 비중이 각각 65.1%와 47.1%로 비수급자에 비해 더 높았다. 비경활 장애인의 수급자 비율은 그러나 취업자 수급자 비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표 2-35> 참조).

<표 2-34> 비경활(근로능력) 기초수급 장애인 장애 유형

(단위 : 천명, %)

| 장애 유형 | 전체 | 비경활(근로능력) | | 취업자 | |
|---|---|---|---|---|---|
| | | 수급자 | 비수급자 | 수급자 | 비수급자 |
| 합계 | 3,335 | 927 | 1,061 | 115 | 1,046 |
| 비장애인 | (0.0) | (0.0) | (0.0) | (0.0) | (0.0) |
| 지체장애 | (42.5) | (33.9) | (42.1) | (21.0) | (54.6) |
| 뇌병변장애 | (8.2) | (9.4) | (7.9) | (8.3) | (3.3) |
| 시각장애 | (9.5) | (8.7) | (10.0) | (20.4) | (9.2) |
| 청각장애 | (8.7) | (5.8) | (12.6) | (9.6) | (7.5) |
| 언어장애 | (0.3) | (0.0) | (0.6) | (0.0) | (0.2) |
| 정신지체 | (12.0) | (18.9) | (10.0) | (25.2) | (5.5) |
| 발달장애 | (1.3) | (3.1) | (0.6) | (0.0) | (0.7) |
| 정신장애 | (5.3) | (13.2) | (2.3) | (2.9) | (2.4) |
| 신장장애 | (6.8) | (3.4) | (7.5) | (3.0) | (10.5) |
| 심장장애 | (0.1) | (0.2) | (0.2) | (0.0) | (0.1) |
| 호흡기장애 | (0.8) | (1.1) | (0.8) | (0.0) | (0.0) |
| 간장애 | (0.5) | (0.3) | (0.5) | (0.0) | (0.7) |
| 안면장애 | (0.3) | (0.0) | (0.9) | (0.0) | (0.0) |
| 장루・요루장애 | (0.4) | (0.2) | (0.2) | (0.0) | (0.9) |
| 간질장애 | (0.7) | (1.4) | (1.0) | (0.0) | (0.0) |
| 비등록장애인 | (2.7) | (0.3) | (2.8) | (9.7) | (4.4) |

<표 2-35> 비경활(근로능력) 기초수급 장애인 장애 정도

(단위 : 천명, %)

| 장애등급 | 전체 | 비경활(근로능력) | | 취업자 | |
|---|---|---|---|---|---|
| | | 수급자 | 비수급자 | 수급자 | 비수급자 |
| 합계 | 3,335 | 927 | 1,061 | 115 | 1,046 |
| 비장애인 | (0.0) | (0.0) | (0.0) | (0.0) | (0.0) |
| 중증 장애인 | (45.1) | (65.1) | (37.5) | (47.1) | (28.4) |
| 경증 장애인 | (52.2) | (34.6) | (59.7) | (43.1) | (67.1) |
| 비등록 장애인 | (2.7) | (0.3) | (2.8) | (9.7) | (4.4) |

비경활(근로능력) 장애인 중 수급자의 건강상태를 보면, 안 좋은 편이 전체의 41.6%로 나타났는데 이는 비경활(근로능력)의 비수급자의 41.3%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취업자 중 수급자의 24.6%, 비수급자의 22.2%가 건강이 안 좋다고 답변한 비중에 비해서는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경활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28.5%가 건강한 편이라고 답변하였는데, 이 비중 역시 취업자 중 수급자의 55.1%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6> 비경활(근로능력) 기초수급 장애인 건강상태

(단위 : 천명, %)

| 건강상태 | 전체 | 비경활(근로능력) | | 취업자 | |
|---|---|---|---|---|---|
| | | 수급자 | 비수급자 | 수급자 | 비수급자 |
| 합계 | 3,335 | 927 | 1,061 | 115 | 1,046 |
| 매우 건강 | (1.9) | (0.2) | (0.8) | (0.0) | (5.1) |
| 건강한 편 | (29.2) | (28.5) | (24.2) | (55.1) | (35.7) |
| 보통 | (28.8) | (27.0) | (27.0) | (17.5) | (36.1) |
| 안 좋은 편 | (35.3) | (41.6) | (41.3) | (24.6) | (22.2) |
| 매우 안 좋음 | (4.8) | (2.6) | (6.8) | (2.8) | (1.0) |

www.kead.or.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비경활(근로능력) 장애인 수급자의 연간 외래진료횟수는 11~30회가 50.8%로 가장 많았다. 비경활(근로능력) 비수급자와 취업자 중 비수급자 역시 11~30회 진료가 가장 많았다. 반면 수급자 중 취업자의 경우는 평균 외래진료 횟수가 1~10회인 비중이 가장 높았다. 연간 외래진료횟수가 0회라고 응답한 자의 비율은 비경활(근로능력) 수급자가 2.1%인데 비해 각 3.9%, 4.7%, 6.2%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경활 장애인 수급자가 외래진료를 받는 횟수가 가장 많은 집단임을 보여준다.

<표 2-37> 비경활(근로능력) 기초수급 장애인 외래진료횟수

(단위 : 천명, 횟수, %)

| 진료횟수 | 전체 | 비경활(근로능력) | | 취업자 | |
|---|---|---|---|---|---|
| | | 수급자 | 비수급자 | 수급자 | 비수급자 |
| 합계 | 3,335 | 927 | 1,061 | 115 | 1,046 |
| 0회 | (4.1) | (2.1) | (3.9) | (4.7) | (6.2) |
| 1~10회 | (30.7) | (20.6) | (29.7) | (40.7) | (37.5) |
| 11~30회 | (43.6) | (50.8) | (39.8) | (24.6) | (45.2) |
| 31~50회 | (10.7) | (14.0) | (11.0) | (24.7) | (6.1) |
| 51~100회 | (4.4) | (5.2) | (5.2) | (2.7) | (2.0) |
| 101~200회 | (6.1) | (6.7) | (9.8) | (2.6) | (3.0) |
| 201회 이상 | (0.4) | (0.6) | (0.6) | (0.0) | (0.0) |
| 평균 진료횟수 | 37.4 | 31.2 | 33.0 | 21.2 | 18.1 |

비경활(근로능력) 장애인 중 수급자의 89.2%가 6개월 이상 투병·투약을 하고 있었다. 이 비중은 비경활 비수급자 80.1%, 취업자 수급자 80.3%, 취업자 비수급자 73.5% 등으로 낮아진다. 수급자나 비경제활동인구의 만성질병 유병률이 전체적으로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38> 비경활(근로능력) 기초수급 장애인 만성질환 유형

(단위 : 천명, %)

| 만성질환 기간 | 전체 | 비경활(근로능력) | | 취업자 | |
|---|---|---|---|---|---|
| | | 수급자 | 비수급자 | 수급자 | 비수급자 |
| 합계 | 3,335 | 927 | 1,061 | 115 | 1,046 |
| 비해당 | (17.2) | (8.7) | (18.8) | (19.7) | (23.5) |
| 3개월 미만 투병·투약 | (1.1) | (1.5) | (0.4) | (0.0) | (1.9) |
| 3~6개월 미만 투병·투약 | (0.7) | (0.6) | (0.6) | (0.0) | (1.1) |
| 6개월 이상 투병·투약 | (81.0) | (89.2) | (80.1) | (80.3) | (73.5) |

## 다. 비경활(근로능력) 기초수급 장애인의 사회복지·보험 수혜 특성

근로능력이 있는 비경활 기초수급 장애인의 경우 교육급여를 제외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에 대해 94~97%의 높은 수급율을 나타내고 있다. 취업을 한 장애인 수급자의 경우, 생계급여의 수급율은 64.5%로 비경활 장애인과 특히 차이가 큰 부분이었다.

<표 2-39> 비경활(근로능력) 기초수급 장애인 기초보장 수급형태

(단위 : 천명, %)

| 수급형태 | 전체 | 비경활(근로능력) | | 취업자 | |
|---|---|---|---|---|---|
| | | 수급자 | 비수급자 | 수급자 | 비수급자 |
| 합계 | 3,335 | 927 | 1,061 | 115 | 1,046 |
| 생계급여 | (29.8) | (94.3) | - | (64.5) | - |
| 의료급여 | (30.4) | (94.2) | | (89.5) | |
| 주거급여 | (31.6) | (97.6) | - | (85.6) | - |
| 교육급여 | (3.4) | (11.8) | - | (1.7) | - |

www.kead.or.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능력이 있는 비경활 장애인의 공적연금 수급비율을 보면, 해당되지 않는 비중이 89.0%로 비경활 비수급자 50.8%, 취업자 수급자 49.6%, 취업자 비수급자 17.2%에 비해 매우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연금을 수급하는 비율은 비경활(근로능력) 수급자 10.1%, 취업자 수급자 9.4%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반면 연금 가입은 비경활(근로능력) 수급자가 0.8% 인데 비해 취업자 수급자는 37.7%로 높게 나타났다(<표 2-40> 참조).

근로능력이 있는 비경활 장애인의 사적연금 미가입 비율은 수급자는 99.3%, 비수급자는 92.2%로 나타났다. 반면, 취업자의 경우 수급자는 99.3%, 비수급자는 78.5%가 미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연금의 경우 비경활 수급자는 0.6%, 취업자 수급자는 0.0%로 나타났다(<표 2-41> 참조).

<표 2-40> 비경활(근로능력) 기초수급 장애인 공적연금 가입형태

(단위 : 천명, %)

| 가입형태 | 전체 | 비경활(근로능력) | | 취업자 | |
|---|---|---|---|---|---|
| | | 수급자 | 비수급자 | 수급자 | 비수급자 |
| 합계 | 3,335 | 927 | 1,061 | 115 | 1,046 |
| 비해당 | (52.2) | (89.0) | (50.8) | (49.6) | (17.2) |
| 연금수급 | (25.4) | (10.1) | (34.4) | (9.4) | (32.9) |
| 연금가입 | (20.9) | (0.8) | (14.8) | (37.7) | (46.4) |
| 수급 & 가입 | (0.8) | (0.0) | (0.0) | (0.0) | (1.7) |
| 미가입 | (0.7) | (0.0) | (0.0) | (3.3) | (1.7) |

<표 2-41> 비경활(근로능력) 기초수급 장애인 사적연금 가입형태

(단위 : 천명, %)

| 가입형태 | 전체 | 비경활(근로능력) | | 취업자 | |
|---|---|---|---|---|---|
| | | 수급자 | 비수급자 | 수급자 | 비수급자 |
| 합계 | 3,335 | 927 | 1,061 | 115 | 1,046 |
| 개인연금 | (3.5) | (0.6) | (3.1) | (0.0) | (7.3) |
| 종신보험 | (5.2) | (0.2) | (4.7) | (0.7) | (11.5) |
| 개인 · 종신 | (0.9) | (0.0) | (0.0) | (0.0) | (2.7) |
| 미가입 | (90.5) | (99.3) | (92.2) | (99.3) | (78.5) |

근로능력이 있는 비경활 수급 장애인의 대부분이 의료급여 1종 또는 의료급여 2종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비경활 비수급자는 직장부양 피부양자나 지역 가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취업자의 경우 수급자는 의료급여가 대부분이지만 직장 가입도 15.7%로 나타났다. 비수급자의 주된 건강보험 가입형태는 직장가입과 피부양자, 지역가입 순으로 나타났다.

<표 2-42> 비경활(근로능력) 기초수급 장애인 건강보험 가입형태

(단위 : 천명, %)

| 가입형태 | 전체 | 비경활(근로능력) | | 취업자 | |
|---|---|---|---|---|---|
| | | 수급자 | 비수급자 | 수급자 | 비수급자 |
| 합계 | 3,335 | 927 | 1,061 | 115 | 1,046 |
| 직장가입 | (16.1) | (0.3) | (1.0) | (15.7) | (48.0) |
| 직장가입 피부양자 | (29.7) | (2.6) | (60.3) | (6.6) | (24.1) |
| 지역가입 | (16.0) | (3.7) | (22.2) | (6.1) | (20.8) |
| 지역가입 세대원 | (8.8) | (0.8) | (16.6) | (0.0) | (7.0) |
| 의료급여 1종 | (25.5) | (81.9) | (0.0) | (49.5) | (0.0) |
| 의료급여 2종 | (3.0) | (9.0) | (0.0) | (12.5) | (0.0) |
| 국가유공 무료진료 | (0.9) | (1.8) | (0.0) | (9.7) | (0.0) |
| 미가입 | - | - | - | - | - |

www.kead.or.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비경제활동인구의 가장 큰 비경제활동 사유는 근로의사 없음으로 전체의 71.8%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가사(9.1%), 근로무능력(8.2%), 구직활동 포기(6.1%) 등이 주된 비경제활동 사유로 나타나고 있다.

비경활 장애인과 비경활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의 비경제활동 사유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비경활 수급자는 근로의사 없음(84.1%), 가사(5.2%), 근로무능력(4.7%), 구직활동 포기(3.6%) 순으로 주된 비경제활동 사유를 응답하였다. 이에 반해 비경활 비수급자는 근로의사 없음(61.7%), 가사(12.2%), 근로무능력(11.1%), 구직활동 포기(8.1%)등이 주된 비경제활동 사유로 나타났다. 비경활 장애인중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 비경활 사유는 수급자의 경우 근로의사 없음(88.2%), 가사(5.5%), 구직활동 포기(3.7% 순이었으며, 비수급자는 근로의사 없음(69.4%), 가사(13.7%), 구직활동 포기(9.1%) 순이었다. 근로능력 유무와 무관하게 비경활 수급자의 경우 비수급자에 비해 근로의사 없음이 20% 이상 높게 나타난 것이 특징적인 점으로 볼 수 있다.

<표 2-43> 비경활(근로능력) 기초수급 장애인 비경제활동 사유

(단위 : 천명, %)

| 사유 | 전체 | 비경활 | | 비경활(근로능력) | |
|---|---|---|---|---|---|
| | | 수급자 | 비수급자 | 수급자 | 비수급자 |
| 합계 | 2,167 | 973 | 1,194 | 927 | 1,061 |
| 근로무능력 | (8.2) | (4.7) | (11.1) | (0.0) | (0.0) |
| 군복무 | - | - | - | - | - |
| 정규교육기관학업 | (3.3) | (1.7) | (4.6) | (1.7) | (5.2) |
| 진학준비 | (0.3) | (0.0) | (0.5) | (0.0) | (0.5) |
| 취업준비 | (0.2) | (0.3) | (0.2) | (0.3) | (0.2) |
| 가사 | (9.1) | (5.2) | (12.2) | (5.5) | (13.7) |
| 양육 | (0.2) | (0.0) | (0.4) | (0.0) | (0.4) |
| 간병 | (0.5)) | (0.5) | (0.5) | (0.5) | (0.6) |
| 구직활동포기 | (6.1) | (3.6) | (8.1) | (3.7) | (9.1) |
| 근로의사 없음 | (71.8) | (84.1) | (61.7) | (88.2) | (69.4) |
| 기타 | (0.4) | (0.0) | (0.7) | (0.0) | (0.8) |

비경활 장애인의 구직 경험에 대한 질문에서는 비경활 수급자의 2.0%, 근로능력이 있는 비경활 수급자의 2.0%가 경험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비수급자의 경우 근로능력 유무를 떠나 7.1%가 구직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44> 비경활(근로능력) 기초수급 장애인 구직 경험

(단위 : 천명, %)

| 구분 | 전체 | 비경활 | | 비경활(근로능력) | |
|---|---|---|---|---|---|
| | | 수급자 | 비수급자 | 수급자 | 비수급자 |
| 합계 | 2,167 | 973 | 1,194 | 927 | 1,061 |
| 있다 | (0.6) | (2.0) | (7.1) | (2.0) | (7.1) |
| 없다 | (11.3) | (98.0) | (92.9) | (98.0) | (92.9) |

## 4. 기초생활 수급자 특성 분석

본 절에서는 구체적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 선정과 수급 그리고 탈피 사유 등에 대한 내용을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수급 신청 사유를 보면 기본생계 문제 해결과 의료급여 지원이 주요 이유인데, 장애인에 비해 비장애인이 주거문제나 교육문제로 수급을 신청하는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2-45>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 사유

(단위 : 천명, %)

| 구분 | 비장애인 | 장애인 |
|---|---|---|
| 합계 | 421 | 55 |
| 기본 생계문제 해결 | (55.1) | (70.5) |
| 의료급여 지원 | (28.7) | (17.6) |
| 주거비 지원 | (12.2) | (5.6) |
| 자녀교육비 지원 | (4.0) | (6.2) |

www.kead.or.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선정되지 못한 장애인의 생계문제 해결은 주로 절약(32.7%)이나 공공기관 프로그램 참여(25.7%), 빚내서(17.8%) 등으로 답변하였으나 비장애인의 경우 절약(34.9%), 스스로 벌어서(19.5%), 부양의무자 친지 등 도움(17.3%) 순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표 2-46> 수급자 비선정 후 생계문제 해결방식: 생계급여

(단위 : 천명, %)

| 구분 | 비장애인 | 장애인 |
|---|---|---|
| 합계 | 207 | 14 |
| 부양의무자 · 친지 등 도움 | (17.3) | (8.8) |
| 빚내서 | (16.5) | (17.8) |
| 민간단체 도움 | (8.2) | (9.7) |
| 절약 | (34.9) | (32.7) |
| 저축등 재산 소진 | (0.9) | (5.3) |
| 공공기관 프로그램 참여 소득 | (2.7) | (25.7) |
| 스스로 벌어서(공공기관 프로그램 참여 제외) | (19.5) | (0.0) |
| 기존 수급 가구원 중 일부 수급가구의 국민 기초생활보장급여로 | (0.0) | (0.0)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중 생계급여 수급 사유를 보면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일자리 상실이 가장 중요한 수급 요인으로 나타났다(각 49.8%, 45.4%). 하지만 비장애인의 경우 수입감소(11.2%), 친지 등 도움 감소(10.8%), 의료비 지출 증가(10.6%) 순으로 차순위 수급사유를 응답한 반면 장애인은 친지 등 도움 감소(15.3%), 의료비 지출 증가(10.7%), 소득가구원 이탈(9.4%)이 중요한 순서로 나타나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는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자가 소득보다는 도움에 의지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추측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표 2-47>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사유(생계급여)

(단위 : 천명, %)

| 구분 | 비장애인 | 장애인 |
|---|---|---|
| 합계 | 1,810 | 992 |
| 수입 감소 | (11.2) | (7.2) |
| 일자리 상실 | (49.8) | (45.4) |
| 친지 등 도움 감소 | (10.8) | (15.3) |
| 소득가구원 이탈 | (9.0) | (9.4) |
| 소득가구원 사망 | (6.1) | (9.0) |
| 가구원 증가 | (0.9) | (0.0) |
| 의료비 지출 증가 | (10.6) | (10.7) |
| 타 지역 이사 | (0.0) | (0.5) |
| 기타 | (1.5) | (2.6) |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의료급여 수급 사유를 살펴보면, 비장애인은 일자리 상실(43.1%), 의료비지출 증가(17.0%), 수입감소(11.2%) 순으로 응답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나, 장애인은 일자리 상실(38.6%), 의료비 지출 증가(21.4%), 친지 등 도움 감소(14.4%) 순으로 나타났다. 생계급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비장애인의 경우 자신의 수입 감소가 주요 급여 수급 요인인 반면 장애인의 경우에는 친지 등의 도움 감소가 주요 수급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48>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사유(의료급여)

(단위 : 천명, %)

| 구분 | 비장애인 | 장애인 |
|---|---|---|
| 합계 | 1,907 | 987 |
| 수입 감소 | (11.2) | (5.7) |
| 일자리 상실 | (43.1) | (38.6) |
| 친지 등 도움 감소 | (9.9) | (14.4) |
| 소득가구원 이탈 | (9.6) | (9.0) |
| 소득가구원 사망 | (5.0) | (8.4) |
| 가구원 증가 | (1.0) | (0.0) |
| 의료비 지출 증가 | (17.0) | (21.4) |
| 타 지역 이사 | (0.0) | (0.5) |
| 기타 | (3.2) | (2.1) |

www.kead.or.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은 장애인은 수급대상에서 벗어나더라도 계속 받고 싶은 지원은 '의료비 지원'이 가장 많았다(68.4%). 다음으로 주거비 지원(29.3%), 자활지원(0.9%) 순이었다. 비장애인의 경우도 이러한 비중으로 지원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장애인이 상대적으로 의료비 지원을 더 많이 희망하고 있고 비장애인은 주거비 지원을 더 많이 희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49> 국민기초생활보장 비수급 시 계속 바라는 지원(생계비 제외)

(단위 : 천명, %)

| 구분 | 비장애인 | 장애인 |
|---|---|---|
| 합계 | 2,497 | 1,070 |
| 의료비 지원 | (59.6) | (68.4) |
| 교육비 지원 | (1.7) | (0.0) |
| 주거비 지원 | (37.1) | (29.3) |
| 자활 지원 | (1.3) | (0.9) |
| 없다 | (0.1) | (0.0) |
| 기타 | (0.2) | (1.4) |

## 5. 시사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복지패널을 통해 기초수급 장애인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일반적인 특성으로는 여성에 비해 남성이, 연령으로는 50-59세와 60-69세가 상대적으로 수급자가 더 많이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고졸 이하, 장애유형으로는 지체장애, 지적 장애, 정신장애 순으로 많은 분포를 차지하였고, 중증장애인 수급자가 더 많았다. 6개월 이상 투병과 투약이 필요한 비율은 장애인이 88.7%였는데, 비장애인의 경우에는 66.7%로 차이를 보였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경제활동 특성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먼저, 경제활동 상태에서 장애인 수급자의 89.1%가 비경제활동인구인 반면, 장애인 비수급자는 53.2%, 비장애인 수급자는 62.5%로 장애인 수급자의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이 매

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초수급 장애인 취업자의 특성을 비장애인과 비교하면 직접 고용은 비장애인 수급자, 간접 고용은 장애인 수급자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나타났다. 근로형태는 장애인의 경우 전일제 비중이 높고 비장애인은 시간제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취업자의 직종은 장애인 수급자의 경우 단순노무, 농림·어업 중심인 반면, 비장애인 수급자는 단순노무, 서비스, 판매직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초수급 장애인의 비경제활동 사유를 보면, 장애인 수급자의 경우 근로의사없음, 가사, 근로무능력 등이 주된 이유였는데, 비장애인 수급자는 근로의사없음, 정규교육기관 학업, 가사 등의 순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비경제활동 인구 중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수급 장애인의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비경제활동인구를 근로능력 여부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비경제활동 사유의 경우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그렇지 않은 수급자에 비해 근로의사 없음 비중이 높았다. 구직 경험의 경우 근로능력 유무와 관계없이 없는 비중이 매우 높았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보면, 수급을 신청한 사유에 대해 장애인의 경우 기본 생계문제 해결에 매우 높았으나, 비장애인의 경우에는 기본 생계문제 해결 외에 의료급여 비중도 높음을 알 수 있다. 수급자로 선정되지 않았을 경우 생계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는 비장애인은 절약이나 스스로 벌어서, 부양의무자, 친지 도움이 중요한 순서였으나 장애인의 경우에는 절약, 공공기관 프로그램 참여, 빚내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기초생활 수급 비수급시 바라는 지원의 경우 비장애인과 장애인 모두 의료비 지원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주거비 지원으로 나타났다.

정리하면, 수급 장애인의 건강과 의료 문제가 중요하며, 근로의사가 없기 때문에 비경제활동 영역에 머무른다는 결과는 장애인 수급자를 노동시장으로 유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직 경험이 전혀 없다는 점은 복지 영역에서 고용 서비스를 받을 만한 기회를 제공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수급 장애인은 의료비 지원을 가장 많이 언급한 것도 현실을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www.kead.or.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제 3 장
# 국민기초생활수급 장애인 실태조사

## 제1절 조사 개요

본 조사는 기초생활수급 장애인의 고용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국민기초생활 수급 장애인의 실태를 파악하여 현황분석과 정책 방안 제시 등에 필요한 기초 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전국 기초생활수급보장 경험이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2024년 8월 20일부터 9월 20일까지 32일간 온라인 설문조사 및 전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350명이 응답하였다.

<표 3-1> 조사 설계

| 구 분 | 내용 |
|---|---|
| 모집단 | 기초생활 수급 보장 경험이 있는 전국 장애인 |
| 조사 방법 | 구축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 전화조사 |
| 표본 수 | 350 표본 |
| 조사 기간 | 2024년 8월 20일(화) ~ 2024년 9월 20일(금), 32일간 |
| 신뢰수준 | 95% (±5.24%p) |
| 조사·분석기관 | ㈜리서치앤유 |

본 조사는 전체 응답자 350명을 대상으로 빈도분석 결과에 초점을 맞춰 아래와 같이 분석을 진행하였다. 첫째, 전체 유효표본의 조사 문항에 대해 빈도분석을 수행하였다. 둘째, 응답자 특성에 따른 질문 문항별 교차분석과 다중응답 분석, 순위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조사는 국민기초생활 수급 장애인 실태 파악을

위해 응답자 기본 정보, 가족 일반사항, 사회복지/보험 특성, 경제활동 일반사항, 국민기초생활수급특성(공통, 수급자, 수급탈피자) 총 8개 영역, 109개 문항에 대해 조사하였다.

<표 3-2> 조사 내용①

| 범주 | 질문 문항 |
|---|---|
| 응답자 기본 정보 (11) | • 성별, 출생연도, 거주지역, 학력, 혼인상태, 주장애유형, 중복장애유형, 장애정도, 건강상태, 세대주 여부,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상태 |
| 가족 일반사항 (6) | • 가족구성 |
| | • 가족 수 |
| | • 가족의 주된 수입원 |
| | • 가족 월 평균 총 소득(세전소득)<br>- 전 가구원 월 소득<br>- 개인 월 소득 |
| | • 가족 월 평균 총 생활비 |
| | • 가족 월 평균 희망 최소 생활비<br>- 가구 희망 생활비<br>- 본인 개인 희망 생활비 |
| 사회복지/보험 특성 (4) | • 기초생활수급 종류 |
| | • 공적연금(국민연금 등) 가입 여부 |
| | • 개인연금 가입 여부 |
| | • 건강보험가입 형태 |
| 경제활동 일반사항 (24) | • 근로 능력 정도<br>- 집안일도 하기 어려운이유 |
| | • 현재 근로 관련 건강상태 |
| | • 장애 상태가 구직 활동에 미치는 영향 |
| | • 현재 경제활동 참여 여부 |
| | • 주된 경제활동 참여 상태 |
| | • 일자리 종류<br>• 지위<br>• 근로시간 형태<br>• 직종<br>• 사업장 규모<br>• 월 평균 급여 (세전)<br>• 일을 하고 있는 이유 |

www.kead.or.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표 3-3> 조사 내용②

| 범주 | 질문 문항 |
|---|---|
| 경제활동 일반사항 (24) | • 일을 하지 않는 이유<br>• 일을 그만 둔 이유<br>• 일자리 발생 시 근로의사<br>• 일을 하고자 하는 이유<br>- 희망 사업체, 희망일자리, 희망 지위, 희망 근로시간, 희망일자리 종류, 희망임금<br>• 일자리가 발생해도 일을 하지 않겠다는 이유 |
| 국민기초생활수급 특성(공통) (22) | • 현재 생활 만족도 |
| | • 급여 신청 이유 |
| | • 급여 수준 |
| | • 수급에 있어 어려움이나 고충 |
| | • 수급에서 벗어나기 위한 조건 |
| | • 수급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지원정책 |
| | • 수급 탈피를 위한 소득 및 지원 금액<br>- 상세금액 |
| | • 수급 탈피를 위해 필요한 정책 |
| | • 수급자를 위한 기타 필요 정책 |
| | •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상태 |
| 국민기초생활수급 특성(수급자) (10) | • 수급에서 벗어나기 위한 기간<br>- 벗어날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br>- 벗어나기 힘들것으로 예상하는 이유<br>- 벗어나고 싶지 않은 이유 |
| | • 수급을 계속 유지하는 이유 |
| | • 수급을 유지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이나 고충 |
| | • 수급 유지에 있어 가장 큰 장점 |
| | • 수급 계속 유지 희망 여부<br>- 수급 계속 유지 희망 이유<br>- 수급 탈피 희망 이유 |

<표 3-3> (계속)

| 범주 | 질문 문항 |
|---|---|
| 국민기초생활수급 특성(수급탈피자) (19) | • 수급에서 탈피한 가장 큰 이유 |
| | • 수급에서 탈피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된 것 |
| | • 수급 탈피 이후 가장 큰 장점 |
| | • 수급 탈피 이후 가장 큰 어려움이나 고충 |
| | • 수급 당시와 수급 탈피 후 생활 만족도 |
| | • 재수급 희망 여부<br>- 다시 받기를 희망하는 이유<br>- 다시 받기를 원하지 않는 이유 |
| 국민기초생활수급 특성(재수급자) (13) | • 수급에서 벗어난 후 재수급까지 기간 |
| | • 수급을 다시 받게 된 이유 |
| | • 수급을 다시 받는데 가장 큰 어려움이나 고충 |
| | • 수급 유지에 있어 가장 큰 장점 |
| | • 수급 탈피 당시와 재수급시 생활 만족도 |
| | • 재수급 희망 여부<br>- 다시 받기를 희망하는 이유<br>- 다시 받기를 원하지 않는 이유 |

# 제2절 조사 결과

## 1. 일반 현황

응답자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 구성은 여성 53.7%(188명), 남성 46.3%(162명)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대는 30대가 26.3%(92명), 40대 25.1%(88명), 50대 21.4%(75명) 등의 순이었다. 장애정도는 중증장애인 81.1%(284명), 경증장애인 18.9%(66명)을 차지하였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상태의 경우 수급자 83.1%(291명), 수급탈피자 16.9%(59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 유형은 단독 가구 66.9%(234명), 비단독 가구가 33.1%(116명)을 차지하였다.

www.kead.or.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표 3-4> 응답자 특성

| 구분 | | 표본수 (명) | 비율 (%) |
|---|---|---|---|
| 전체 | | 350 | 100.0 |
| 성별 | 남성 | 162 | 46.3 |
| | 여성 | 188 | 53.7 |
| 연령대 | 20대 | 35 | 10.0 |
| | 30대 | 92 | 26.3 |
| | 40대 | 88 | 25.1 |
| | 50대 | 75 | 21.4 |
| | 60대 이상 | 60 | 17.1 |
| 장애 정도 | 중증장애인 | 284 | 81.1 |
| | 경증장애인 | 66 | 18.9 |
| 수급 상태 | 수급자 | 291 | 83.1 |
| | 수급탈피자 | 59 | 16.9 |
| 가구 유형 | 단독 | 234 | 66.9 |
| | 비단독 | 116 | 33.1 |

응답자의 주장애 유형 유형에 대해 살펴보면 '지체장애'가 21.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뇌병변장애' 15.4%, '시각장애' 15.1%, '신장장애' 13.7%, '청각장애' 12.9%, '정신장애' 10.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5> 주장애 유형

| 구분 | 지체장애 | 뇌병변장애 | 시각장애 | 신장장애 | 청각장애 | 정신장애 | 지적장애 | 호흡기장애 | 자폐성장애 | 언어장애 | 심장장애 | 장루, 요루장애 |
|---|---|---|---|---|---|---|---|---|---|---|---|---|
| 빈도(명) | 76 | 54 | 53 | 48 | 45 | 35 | 32 | 2 | 2 | 1 | 1 | 1 |
| 비율(%) | 21.7 | 15.4 | 15.1 | 13.7 | 12.9 | 10.0 | 9.1 | 0.6 | 0.6 | 0.3 | 0.3 | 0.3 |

중복장애유형 유형의 경우 '중복장애 없음'이 63.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뇌병변장애' 8.3%, '지체장애' 8.0%, '시각장애', '신장장애'각 5.1%, '언어장애' 4.3%, '지적장애' 4.0% 등의 순이었다.

<표 3-6> 중복장애유형(복수응답)

| 구분 | 중복장애없음 | 뇌병변장애 | 지체장애 | 시각장애 | 신장장애 | 언어장애 | 지적장애 | 청각장애 | 정신장애 | 장루,요루장애 | 뇌전증장애 | 심장장애 | 간장애 | 호흡기장애 |
|---|---|---|---|---|---|---|---|---|---|---|---|---|---|---|
| 빈도(명) | 221 | 29 | 28 | 18 | 18 | 15 | 14 | 13 | 7 | 3 | 3 | 2 | 1 | 1 |
| 비율(%) | 63.1 | 8.3 | 8.0 | 5.1 | 5.1 | 4.3 | 4.0 | 3.7 | 2.0 | 0.9 | 0.9 | 0.6 | 0.3 | 0.3 |

응답자의 건강상태에 대해 살펴보면 '보통이다'가 38.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28.6%, '건강한 편이다' 19.1%, '아주 건강하다' 7.1%, '건강이 아주 안좋다' 6.9%의 순으로 긍정[7] 26.3%, 부정[8] 35.4%로 나타났으며, 100점 환산 시 47.8점이었다.

<표 3-7> 건강상태

| 구분 | 아주 건강하다 | 건강한 편이다 | 보통이다 |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 건강이 아주 안 좋다 | 긍정(Top2) | 보통(Mid) | 부정(Bot2) | 100점 환산(점) |
|---|---|---|---|---|---|---|---|---|---|
| 빈도(명) | 25 | 67 | 134 | 100 | 24 | 92 | 134 | 124 | 47.8 |
| 비율(%) | 7.1 | 19.1 | 38.3 | 28.6 | 6.9 | 26.3 | 38.3 | 35.4 | |

가족 구성에 대해 살펴보면 '단독가구'가 66.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부부+자녀 가구' 10.6%, '모자가구' 9.7%, '부부가구' 6.3%, '부자가구' 2.6%, '조손가구' 0.6%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은 3.4%로 나타났다.

7) '아주 건강하다' + '건강한 편이다' 의 합 비율.

8)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 '건강이 아주 안좋다'의 합 비율.

www.kead.or.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표 3-8> 가족 구성

|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부부 +자녀 가구 | 모자가구 | 부자가구 | 조손가구 | 기타 |
|---|---|---|---|---|---|---|---|
| 빈도(명) | 234 | 22 | 37 | 34 | 9 | 2 | 12 |
| 비율(%) | 66.9 | 6.3 | 10.6 | 9.7 | 2.6 | 0.6 | 3.4 |

가족 수에 대해 살펴보면 '단독'이 66.9%로 가장 많았으며, '3인' 10.6%, '4인' 9.7%, '2인' 6.3%, '5인 이상' 2.6%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9> 가족 수

| 구분 | 단독 | 2인 | 3인 | 4인 | 5인 이상 |
|---|---|---|---|---|---|
| 빈도(명) | 239 | 54 | 34 | 19 | 4 |
| 비율(%) | 66.9 | 6.3 | 10.6 | 9.7 | 2.6 |

가족의 주된 수입원에 대해 살펴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가 55.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세대주 소득' 31.1%, '가족/자녀/부모 소득' 6.6%, '친척 등 지원' 3.1%, '세대주 + 가족/자녀/부모 소득' 2.3%, 기타 1.7%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10> 가족의 주된 수입원

| 구분 | 국민기초 생활보장 급여 | 세대주 소득 | 가족/자녀 /부모 소득 | 친척 등 지원 | 세대주 + 가족/자녀/ 부모 소득 | 기타 |
|---|---|---|---|---|---|---|
| 빈도(명) | 193 | 109 | 23 | 11 | 8 | 6 |
| 비율(%) | 55.1 | 31.1 | 6.6 | 3.1 | 2.3 | 1.7 |

가족 월 평균 총 소득을 살펴보면 '100만원-150만원 미만'이 30.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50만원-100만원 미만'25.7%, '200만원-250만원 미만' 11.7%, '50만원 미만' 9.7%, '150만원-200만원 미만' 9.1%, '300만원 이상' 8.6%, '250만원-300만원 미만' 5.1% 순으로 나타났다.

<표 3-11> 가족 월 평균 총 소득(전가구원)

| 구분 | 50만원 미만 | 50만원-100만원 미만 | 100만원-150만원 미만 | 150만원-200만원 미만 | 200만원-250만원 미만 | 250만원-300만원 미만 | 300만원 이상 |
|---|---|---|---|---|---|---|---|
| 명 | 34 | 90 | 105 | 32 | 41 | 18 | 30 |
| % | 9.7 | 25.7 | 30.0 | 9.1 | 11.7 | 5.1 | 8.6 |

개인 월 평균 총 소득을 살펴보면 '50만원-100만원 미만'이 34.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100만원-150만원 미만'31.4%, '50만원 미만' 16.9%, '200만원-250만원 미만' 6.6%, '150만원-200만원 미만' 6.3%, '250만원-300만원 미만' 2.9%, '300만원 이상' 1.7% 순이었다.

<표 3-12> 가족 월 평균 총 소득(개인)

| 구분 | 50만원 미만 | 50만원-100만원 미만 | 100만원-150만원 미만 | 150만원-200만원 미만 | 200만원-250만원 미만 | 250만원-300만원 미만 | 300만원 이상 |
|---|---|---|---|---|---|---|---|
| 명 | 59 | 120 | 110 | 22 | 23 | 10 | 6 |
| % | 16.9 | 34.3 | 31.4 | 6.3 | 6.6 | 2.9 | 1.7 |

가족 월 평균 생활비를 살펴보면 '50만원-100미만'이 31.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100만원-150만원 미만' 26.3%, '150만원-200만원 미만' 16.9%, '200만원-250만원 미만' 9.7% '300만원 이상' 6.3%, '50만원 미만' 6.0%, '250만원-300만원 미만' 3.4% 순으로 나타났다.

www.kead.or.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표 3-13> 가족 월 평균 생활비

| 구분 | 50만원 미만 | 50만원-100만원 미만 | 100만원-150만원 미만 | 150만원-200만원 미만 | 200만원-250만원 미만 | 250만원-300만원 미만 | 300만원 이상 |
|---|---|---|---|---|---|---|---|
| 명 | 21 | 110 | 92 | 59 | 34 | 12 | 22 |
| % | 6.0 | 31.4 | 26.3 | 16.9 | 9.7 | 3.4 | 6.3 |

가족 월 평균 희망 생활비를 살펴보면 '100만원-150만원 미만'이 20.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150만원-200만원 미만'20.0%, '200만원-250만원 미만'이 19.7%, '300만원 이상'16.0%, '50만원-100미만' 11.7%, '50만원 미만','250만원-300만원 미만' 각 6.0% 순으로 나타났다.

<표 3-14> 가족 월 평균 희망 최소 생활비(가구)

| 구분 | 50만원 미만 | 50만원-100만원 미만 | 100만원-150만원 미만 | 150만원-200만원 미만 | 200만원-250만원 미만 | 250만원-300만원 미만 | 300만원 이상 |
|---|---|---|---|---|---|---|---|
| 명 | 21 | 41 | 72 | 70 | 69 | 21 | 56 |
| % | 6.0 | 11.7 | 20.6 | 20.0 | 19.7 | 6.0 | 16.0 |

개인 월 평균 희망 생활비를 살펴보면 '100만원-150만원 미만'이 29.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150만원-200만원 미만'이 21.4%, '50만원-100만원 미만'16.3%, '200만원-250만원 미만'16.0%, '50만원 미만' 8.3%, '300만원 이상' 4.9%, '250만원-300만원 미만' 3.7% 순으로 나타났다.

<표 3-15> 가족 월 평균 희망 최소 생활비(개인)

| 구분 | 50만원 미만 | 50만원-100만원 미만 | 100만원-150만원 미만 | 150만원-200만원 미만 | 200만원-250만원 미만 | 250만원-300만원 미만 | 300만원 이상 |
|---|---|---|---|---|---|---|---|
| 명 | 29 | 57 | 103 | 75 | 56 | 13 | 17 |
| % | 8.3 | 16.3 | 29.4 | 21.4 | 16.0 | 3.7 | 4.9 |

## 2. 사회복지/보험 특성

기초생활수급 종류를 복수응답으로 살펴보면 '생계급여'가 79.7%로 가장 많았으며, '의료급여' 66.0%, '주거급여' 63.7%, '교육급여' 8.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16> 기초생활수급 종류(복수응답)

| 구분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
|---|---|---|---|---|
| 빈도(명) | 279 | 231 | 223 | 30 |
| 비율(%) | 79.7 | 66.0 | 63.7 | 8.6 |

공적연금 가입 여부를 살펴보면 '미가입' 63.1%, '가입' 36.9%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17> 공적연금(국민연금 등) 가입 여부

| 구분 | 미가입 | 가입 |
|---|---|---|
| 빈도(명) | 221 | 129 |
| 비율(%) | 63.1 | 36.9 |

개인연금 가입 여부를 살펴보면, '미가입' 87.1%, '가입' 12.9%의 순으로 나타났다.

www.kead.or.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표 3-18> 개인연금 가입 여부

| 구분 | 미가입 | 가입 |
|---|---|---|
| 빈도(명) | 305 | 45 |
| 비율(%) | 87.1 | 12.9 |

건강보험 가입형태에 대해 살펴보면, '의료급여 1종'이 49.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직장가입자' 20.0%, '미가입' 12.3%, '의료급여 2종' 7.7%, '지역가입자' 6.3%,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3.7%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0.9%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19> 건강보험 가입형태

| 구분 | 의료 급여 1종 | 직장 가입자 | 미가입 | 의료 급여 2종 | 지역 가입자 |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 | 지역 가입자의 세대원 |
|---|---|---|---|---|---|---|---|
| 빈도(명) | 172 | 70 | 43 | 27 | 22 | 13 | 3 |
| 비율(%) | 49.1 | 20.0 | 12.3 | 7.7 | 6.3 | 3.7 | 0.9 |

## 3. 경제활동 일반사항

### 가. 근로 능력

근로 능력 정도에 대해 살펴보면, '단시간 또는 단순한 근로가능'이 38.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집안일 정도만 가능' 23.7%, '일반적인 근로가능' 22.6%, '집안일도 하기 어려움' 15.7%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20> 근로 능력 정도

| 구분 | 일반적인 근로가능 | 단시간 또는 단순한 근로가능 | 집안일 정도만 가능 | 집안일도 하기 어려움 |
|---|---|---|---|---|
| 빈도(명) | 79 | 133 | 83 | 55 |
| 비율(%) | 22.6 | 38.0 | 23.7 | 15.7 |

집안일도 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 살펴보면, '중증장애'가 87.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질병 또는 부상', '노령으로 인한 심신 무능력' 각 5.5%, 기타 1.8%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21> 집안일도 하기 어려운 이유

| 구분 | 중증장애 | 질병 또는 부상 | 노령으로 인한 심신 무능력 | 기타 |
|---|---|---|---|---|
| 빈도(명) | 48 | 3 | 3 | 1 |
| 비율(%) | 87.3 | 5.5 | 5.5 | 1.8 |

현재 근로 관련 건강상태에 대해 살펴보면, '일을 할 수 있는 편이다'가 52.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일을 할 수 없는 편이다' 26.9%, '전혀 일을 할 수 없다' 14.9%, '일을 매우 잘할 수 있다' 6.3%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22> 근로 관련 건강 상태

| 구분 | 전혀 일을 할 수 없다 | 일을 할 수 없는 편이다 | 일을 할 수 있는 편이다 | 일을 매우 잘할 수 있다 |
|---|---|---|---|---|
| 빈도(명) | 52 | 94 | 182 | 22 |
| 비율(%) | 14.9 | 26.9 | 52.0 | 6.3 |

www.kead.or.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나. 장애 상태가 구직활동에 미치는 영향

장애 상태가 구직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면, '지장을 초래하는 편이다'가 42.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상당히 지장을 초래한다' 29.1%,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편이다' 21.1%, '전혀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 6.9%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23> 장애 상태가 구직활동에 미치는 영향

| 구분 | 전혀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 |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편이다 | 지장을 초래하는 편이다 | 상당히 지장을 초래한다 |
|---|---|---|---|---|
| 빈도(명) | 24 | 74 | 150 | 102 |
| 비율(%) | 6.9 | 21.1 | 42.9 | 29.1 |

경제활동 참여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일하고 있지 않음' 51.4%, '일하고 있음' 48.6%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24> 경제활동 참여 여부

| 구분 | 일하고 있음 | 일하고 있지 않음 |
|---|---|---|
| 빈도(명) | 170 | 180 |
| 비율(%) | 48.6 | 51.4 |

현재 근로를 하고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주된 경제활동 참여 상태에 대해 살펴보면, '상용직 임금근로자'가 51.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임시직 임금근로자' 27.6%, '일용직 임금근로자와' 9.4%, '자영업 '1.8%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9] 응답은 10.0%이다.

9) 기타 응답에는 '장애인 협회 근무', '장애인 복지 일자리' 등이 있다.

<표 3-25> 주된 경제활동 참여 상태

| 구분 | 상용직 임금근로자 | 임시직 임금근로자 | 일용직 임금근로자 | 자영업 | 기타 |
|---|---|---|---|---|---|
| 빈도(명) | 87 | 47 | 16 | 3 | 17 |
| 비율(%) | 51.2 | 27.6 | 9.4 | 1.8 | 10.0 |

현재 근로를 하고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일자리 종류에 대해 살펴보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일자리(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자립작업장 등)'가 30.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정부 및 지자체가 창출한 재정지원 일자리' 28.8%, '일반 사업체의 임금 근로 일자리' 25.3%, '권리중심일자리' 7.1%, 기타 2.9%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은 5.9%이다.

<표 3-26> 근무중인 일자리 종류

| 구분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일자리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자립작업장 등) | 정부 및 지자체가 창출한 재정지원 일자리 (공공근로, 자활근로, 장애인 복지일자리 등) | 일반 사업체의 임금 근로 일자리 | 권리중심 일자리 (권익옹호, 문화예술, 인식개선 활동 등) | 자영업자 | 기타 |
|---|---|---|---|---|---|---|
| 빈도(명) | 51 | 49 | 43 | 12 | 5 | 10 |
| 비율(%) | 30.0 | 28.8 | 25.3 | 7.1 | 2.9 | 5.9 |

현재 근로를 하고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근로 지위에 대해 살펴보면 '비정규직' 53.5%, '정규직' 46.5%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27> 근로 지위

| 구분 | 정규직 | 비정규직 |
|---|---|---|
| 빈도(명) | 79 | 91 |
| 비율(%) | 46.5 | 53.5 |

www.kead.or.kr/ko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현재 근로를 하고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형태에 대해 살펴보면 '기간제' 59.4%, '전일제' 40.6%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28> 근로시간 형태

| 구분 | 전일제 | 기간제 |
|---|---|---|
| 빈도(명) | 69 | 101 |
| 비율(%) | 40.6 | 59.4 |

현재 근로를 하고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근로 직종에 대해 살펴보면 '단순노무 종사자'가 37.6%로 가장 많았으며, '사무종사자' 28.8% '서비스 종사자' 15.9%,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7.1%, '관리자' 4.7%,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2.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29> 근로 직종

| 구분 | 단순 노무 종사자 | 사무 종사자 | 서비스 종사자 |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 관리자 |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판매 종사자 |
|---|---|---|---|---|---|---|---|---|
| 빈도(명) | 64 | 49 | 27 | 12 | 8 | 5 | 4 | 1 |
| 비율(%) | 37.6 | 28.8 | 15.9 | 7.1 | 4.7 | 2.9 | 2.4 | 0.6 |

현재 근로를 하고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사업장 규모에 대해 살펴보면, '1~4명'이 24.7%로 가장 많았으며, '30~69명' 18.8%, '10~29명' 17.1%, '잘 모르겠음' 15.3%, '5~9명' 12.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30> 근로 사업장 규모

| 구분 | 1~4명 | 5~9명 | 10~29명 | 30~69명 | 70~99명 | 100~299명 | 300명 이상 | 잘 모르겠음 |
|---|---|---|---|---|---|---|---|---|
| 빈도(명) | 42 | 21 | 29 | 32 | 4 | 10 | 6 | 26 |
| 비율(%) | 24.7 | 12.4 | 17.1 | 18.8 | 2.4 | 5.9 | 3.5 | 15.3 |

현재 근로를 하고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월평균 급여에 대해 살펴보면, '50만원-100만원'이 37.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50만원 미만' 27.1%, '200만원 이상' 18.2%, '100만원-150만원' 9.4%, '150만원-200만원' 8.2%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31> 월 평균 급여

| 구분 | 50만원 미만 | 50만원 -100만원 | 100만원 -150만원 | 150만원 -200만원 | 200만원 이상 |
|---|---|---|---|---|---|
| 빈도(명) | 46 | 63 | 16 | 14 | 31 |
| 비율(%) | 27.1 | 37.1 | 9.4 | 8.2 | 18.2 |

현재 근로를 하지 않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면, '소득 증대로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으므로'가 51.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나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20.6%,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는 기회이므로' 14.7%,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피할 수 있어서' 9.4%, 기타 4.1%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32>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이유

| 구분 | 소득 증대로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으므로 | 나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는 기회이므로 |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피할 수 있어서 | 기타 |
|---|---|---|---|---|---|
| 빈도(명) | 87 | 35 | 25 | 16 | 7 |
| 비율(%) | 51.2 | 20.6 | 14.7 | 9.4 | 4.1 |

현재 근로를 하지 않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현재 일을 하지 않는 이유의 1순위를 살펴보면 '장애로 인해 업무 수행이 어려울 거 같아서'가 52.2%로 가장 많았으며, '일을 하면 기초수급 자격이 박탈되거나 생계급여가 감소할 것을 우려해'10.6%의 순으로 나타났다. 1+2순위로는 '장애로 인해 업무 수행이 어려울 거 같아서가' 56.1%로 가장 많았으며, '장애 이외의 질병이나 사고로(건강 문제)' 21.7%, '그저 일하고 싶지 않아서 또는 일할 필요가 없어서' 18.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33> 현재 일을 하지 않는 이유

| 구분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
| 1 순위 | 빈도 (명) | 94 | 12 | 16 | 6 | 5 | 12 | 19 | 0 | 4 | 4 | 2 | 1 | 5 |
| | 비율 (%) | 52.2 | 6.7 | 8.9 | 3.3 | 2.8 | 6.7 | 10.6 | 0.0 | 2.2 | 2.2 | 1.1 | 0.6 | 2.8 |

1 : 장애로 인해 업무 수행이 어려울 거 같아서
2 : 장애 이외의 질병이나 사고로(건강 문제)
3 : 그저 일하고 싶지 않아서 또는 일할 필요가 없어서
4 : 교육, 기술, 경험이 부족해서
5 : 이전에 찾아보았지만,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6 : 원하는 임금 수준이나 근로조건에 맞는 일자리가 없을 거 같아서
7 : 일을 하면 기초 수급 자격이 박탈되거나 생계급여가 감소할 것을 우려해
8 : 취업/창업을 준비 중이어서
9 :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고용주가 채용하지 않을 거 같아서
10 : 장애에 대한 차별과 선입견 때문에
11 :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자리가 없을 거 같아서
12 : 육아 또는 가사로 인해
13 : 기타

현재 근로를 하지 않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일을 그만두게 하거나 그만 둔 이유에 대해 살펴보면, '장애 발생 또는 장애의 악화'가 36.1%로 가장 많았으며, '해당사항 없음(근로 경험이 없음)' 12.8%, '국민기초생활 수급신청 또는 유지를 위해' 9.4%, '장애 또는 건강 문제로 피해를 주기 싫어서' 7.8%, '일거리가 없어서, 사업 부진, 조업 중단', '일 자체가 어렵고 힘들어서' 각 7.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34> 일을 그만두게 하거나 그만둔 이유

| 구분 | 장애 발생 또는 장애의 악화 | 해당 사항 없음 (근로 경험이 없음) | 국민기초 생활 수급 신청 또는 유지를 위해 | 장애 또는 건강 문제로 피해를 주기 싫어서 | 일거리가 없어서, 사업 부진, 조업 중단 | 일 자체가 어렵고 힘들어서 | 장애에 대한 편견이나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 대인 관계 (상사, 동료와의 마찰)의 문제 | 적성, 흥미, 전공 등이 맞지 않아서 | 새로운 일을 찾기 위해 | 회사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 기타 |
|---|---|---|---|---|---|---|---|---|---|---|---|---|
| 빈도(명) | 65 | 23 | 17 | 14 | 13 | 13 | 7 | 7 | 5 | 5 | 5 | 6 |
| 비율(%) | 36.1 | 12.8 | 9.4 | 7.8 | 7.2 | 7.2 | 3.9 | 3.9 | 2.8 | 2.8 | 2.8 | 3.3 |

현재 근로를 하지 않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일자리 발생 시 근로 의사에 대해 살펴보면, '근로를 하지 않겠다' 57.2%, '하겠다' 42.8%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35> 일자리 발생 시 근로 의사

| 구분 | 하지 않겠다 | 하겠다 |
|---|---|---|
| 빈도(명) | 103 | 77 |
| 비율(%) | 57.2 | 42.8 |

현재 근로를 하지 않으나, 희망하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근로 희망 이유를 살펴보면, '소득 증대로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으므로'가 53.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자립을 위해' 15.6%, '나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13.0%,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피할 수 있어서'와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는 기회'이므로 각 6.5%, 기타 5.2%의 순으로 나타났다.

www.kead.or.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표 3-36> 근로 희망 이유

| 구분 | 소득 증대로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으므로 |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자립을 위해 | 나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피할 수 있어서 |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는 기회이므로 | 기타 |
|---|---|---|---|---|---|---|
| 빈도(명) | 41 | 12 | 10 | 5 | 5 | 4 |
| 비율(%) | 53.2 | 15.6 | 13.0 | 6.5 | 6.5 | 5.2 |

현재 근로를 하지 않으나, 희망하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희망 사업체에 대해 살펴보면, '상관없다'가 67.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상점(가게), 사무실 등 개인사업체 규모' 15.6%, '중소기업' 7.8%, '대기업(공무원 등 포함)' 5.2%, 기타 3.9%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37> 희망 사업체

| 구분 | 상관없다 | 상점(가게), 사무실 등 개인사업체 규모 | 중소기업 | 대기업 (공무원 등 포함) | 기타 |
|---|---|---|---|---|---|
| 빈도(명) | 52 | 12 | 6 | 4 | 3 |
| 비율(%) | 67.5 | 15.6 | 7.8 | 5.2 | 3.9 |

현재 근로를 하지 않으나, 희망하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희망 일자리에 대해 살펴보면, '정당한 편의 제공 등 장애에 대한 배려가 높은 일자리'가 49.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안정적인 고용이 보장된 일자리' 19.5%, '장애에 대한 차별이 없고 장애 감수성이 높은 일자리' 18.2%, '우수한 근무조건과 환경을 갖춘 일자리 (유연한 근무 시간, 출퇴근 거리 등)' 7.8%, '성장 및 발전 가능성이 높은 일자리' 3.9%, '임금 및 보상이 높은 일자리' 1.3%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38> 희망 일자리

| 구분 | 정당한 편의 제공 등 장애에 대한 배려가 높은 일자리 | 안정적인 고용이 보장된 일자리 | 장애에 대한 차별이 없고 장애 감수성이 높은 일자리 | 우수한 근무조건과 환경을 갖춘 일자리 (유연한 근무시간, 출퇴근 거리 등) | 성장 및 발전 가능성이 높은 일자리 | 임금 및 보상이 높은 일자리 |
|---|---|---|---|---|---|---|
| 빈도(명) | 38 | 15 | 14 | 6 | 3 | 1 |
| 비율(%) | 49.4 | 19.5 | 18.2 | 7.8 | 3.9 | 1.3 |

현재 근로를 하지 않으나, 희망하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희망 지위를 살펴보면 '정규직' 49.4%, '비정규직' 19.5%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39> 희망 지위

| 구분 | 정규직 | 비정규직 |
|---|---|---|
| 빈도(명) | 58 | 19 |
| 비율(%) | 49.4 | 19.5 |

현재 근로를 하지 않으나, 희망하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희망 근로 시간을 살펴보면, '시간제' 67.5%, '전일제' 32.5%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40> 희망 근로 시간

| 구분 | 시간제 | 전일제 |
|---|---|---|
| 빈도(명) | 52 | 25 |
| 비율(%) | 67.5 | 32.5 |

www.kead.or.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현재 근로를 하지 않으나, 희망하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희망 일자리 종류를 살펴보면, '정부 및 지자체가 창출한 재정지원 일자리(공공근로, 자활근로, 장애인 복지 일자리 등)'가 40.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일자리(보호작업장, 근로 사업장, 자립작업장 등)' 37.7%, '일반 사업체의 임금 근로 일자리' 11.7%, '권리중심일자리', 기타 각 5.2%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41> 희망 일자리 종류

| 구분 | 정부 및 지자체가 창출한 재정지원 일자리 (공공근로, 자활근로, 장애인 복지 일자리 등)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일자리 (보호작업장, 근로 사업장, 자립작업장 등) | 일반 사업체의 임금 근로 일자리 | 권리중심 일자리 | 기타 |
|---|---|---|---|---|---|
| 빈도(명) | 31 | 29 | 9 | 4 | 4 |
| 비율(%) | 40.3 | 37.7 | 11.7 | 5.2 | 5.2 |

현재 근로를 하지 않으나, 희망하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희망 임금을 살펴보면, '100만원-150만원'이 29.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50만원-100만원' 23.4%, '150만원-200만원' 22.1%, '200만원 이상' 20.8%, '50만원 미만' 3.9%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42> 희망 임금

| 구분 | 50만원 미만 | 50만원 -100만원 | 100만원 -150만원 | 150만원 -200만원 | 200만원 이상 |
|---|---|---|---|---|---|
| 빈도(명) | 3 | 18 | 23 | 17 | 16 |
| 비율(%) | 3.9 | 23.4 | 29.9 | 22.1 | 20.8 |

현재 근로를 하지 않으며, 희망하지 않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일자리가 발생해도 근로가 의사 없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면, '건강이 좋지 않아서'가 45.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일을 해서 소득이 발생하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해서' 35.9%, '원하는 수준의 급여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6.8%, '그냥 편하게 살고 싶어서' 3.9%, '정부지원금만으로도 살 수 있어서' 1.9%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은 5.8%이다.

<표 3-43> 일자리 발생에도 근로 의사 없는 이유

| 구분 | 건강이 좋지 않아서 | 일을 해서 소득이 발생하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해서 | 원하는 수준의 급여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 그냥 편하게 살고 싶어서 | 정부지원금만으로도 살 수 있어서 | 기타 |
|---|---|---|---|---|---|---|
| 빈도(명) | 47 | 37 | 7 | 4 | 2 | 6 |
| 비율(%) | 45.6 | 35.9 | 6.8 | 3.9 | 1.9 | 5.8 |

## 4. 국민기초생활수급 특성

경제적 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10] 19.4%, 불만족[11] 46.6%, 100점 환산 점수 41.2점으로 나타났다. 신체 상태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 21.4%, 불만족 47.1%, 100점 환산 점수 40.5점으로 나타났다.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 33.1%, 불만족 21.7%, 100점 환산 점수 53.8점으로 나타났다. 주거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 33.7%, 불만족 29.4%, 100점 환산 점수 52.5점으로 나타났다. 여가 및 사회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 28.9%, 불만족 33.4%, 100점 환산 점수 48.9점으로 나타났다. 전반적 만족도는 만족 26.6%, 불만족 27.4%, 100점 환산 점수 50.4점으로 나타났다.

10) '매우 만족' + '약간 만족'의 합 비율. 이하 동일.

11) '약간 불만족' + '매우 불만족'의 합 비율. 이하 동일.

www.kead.or.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표 3-44> 현재 생활 만족도

| 구분 | 매우 만족 | 약간 만족 | 보통 | 약간 불만족 | 매우 불만족 | 만족 (Top2) | 보통 (Mid) | 불만족 (Bot2) | 100점 환산 (점) |
|---|---|---|---|---|---|---|---|---|---|
| 경제적 생활 | 6.0 | 13.4 | 34.0 | 32.6 | 14.0 | 19.4 | 34.0 | 46.6 | 41.2 |
| 신체상태 | 8.3 | 13.1 | 31.4 | 26.6 | 20.6 | 21.4 | 31.4 | 47.1 | 40.5 |
| 가족관계 | 12.9 | 20.3 | 45.1 | 12.6 | 9.1 | 33.1 | 45.1 | 21.7 | 53.8 |
| 주거생활 | 12.6 | 21.1 | 36.9 | 22.6 | 6.9 | 33.7 | 36.9 | 29.4 | 52.5 |
| 여가 및 사회생활 | 9.7 | 19.1 | 37.7 | 24.0 | 9.4 | 28.9 | 37.7 | 33.4 | 48.9 |
| 전반적 만족도 | 8.0 | 18.6 | 46.0 | 21.7 | 5.7 | 26.6 | 46.0 | 27.4 | 50.4 |

급여를 신청하게 된 가장 큰 이유에 대해 살펴보면, '기본적인 생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가 60.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의료급여를 받기 위해' 13.7%, '주거비를 지원받기 위해' 11.1%, '일(근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10.3%, '자녀 교육비를 지원받기 위해' 2.0%, '취업알선, 창업 등 자활지원을 받기 위해' 0.9%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은 2.0%이다.

<표 3-45> 급여를 신청하게 된 이유

| 구분 | 기본적인 생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 의료 급여를 받기 위해 | 주거비를 지원받기 위해 | 일(근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 자녀 교육비를 지원받기 위해 | 취업알선, 창업 등 자활 지원을 받기 위해 | 기타 |
|---|---|---|---|---|---|---|---|
| 빈도(명) | 210 | 48 | 39 | 7 | 3 | 36 | 7 |
| 비율(%) | 60.0 | 13.7 | 11.1 | 10.3 | 2.0 | 0.9 | 2.0 |

생계급여에 대한 인식은 만족 22.6%, 불만족 56.0%, 100점 환산 점수 39.4점으로 나타났다. 의료급여는 만족 41.0%, 불만족 29.9%, 100점 환산 점수 54.6점으로 나타났다. 주거급여는 만족 27.7%, 불만족 41.5%, 100점 환산 점수 46.5점으로 나타났다. 교육급여는 만족 27.1%, 불만족 34.1%, 100점 환산 점수 48.1점으로 나타났다.

<표 3-46> 급여수준에 대한 인식

| 구분 | 매우 적절하다 | 적절하다 | 보통이다 | 부족하다 | 매우 부족하다 | 긍정[12] (Top2) | 보통 (Mid) | 부정[13] (Bot2) | 100점 환산 (점) |
|---|---|---|---|---|---|---|---|---|---|
| 생계급여 | 8.4 | 14.2 | 21.4 | 38.6 | 17.5 | 22.6 | 21.4 | 56.0 | 39.4 |
| 의료급여 | 15.3 | 25.7 | 29.0 | 21.9 | 8.1 | 41.0 | 29.0 | 29.9 | 54.6 |
| 주거급여 | 8.8 | 18.9 | 30.8 | 32.3 | 9.1 | 27.7 | 30.8 | 41.5 | 46.5 |
| 교육급여 | 10.5 | 16.7 | 38.8 | 22.9 | 11.2 | 27.1 | 38.8 | 34.1 | 48.1 |

수급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이나 고충에 대해 살펴보면, '복잡한 행정절차'가 25.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일관성 없는 조사 결과(소득, 재산 등 변화는 없으나 조사 결과가 다르게 나옴)' 20.3%, '엄격한 자격 조건' 17.1%, '없음' 15.1%, '신청 후 승인까지의 긴 대기시간' 12.0%, '주위의 부정적인 시선' 7.4%, 기타 2.9%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47> 수급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이나 고충

| 구분 | 복잡한 행정절차 | 일관성 없는 조사 결과 (소득, 재산 등 변화는 없으나 조사 결과가 다르게 나옴) | 엄격한 자격 조건 | 없음 | 신청 후 승인까지의 긴 대기시간 | 주위의 부정적인 시선 | 기타 |
|---|---|---|---|---|---|---|---|
| 빈도(명) | 88 | 71 | 60 | 53 | 42 | 26 | 10 |
| 비율(%) | 25.1 | 20.3 | 17.1 | 15.1 | 12.0 | 7.4 | 2.9 |

12) '매우 적절하다' + '적절하다'의 합 비율.

13) '부족하다' + '매우 부족하다'의 합 비율.

수급에서 벗어나기 위한 조건에 대해 살펴보면, '취업 또는 창업을 통한 안정적인 소득원 확보'가 47.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의료비 부담 해결' 28.6%, '안정적인 주거공간 확보' 17.7%, '자녀 교육비 해결' 2.6%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은 3.7%이다.

<표 3-48> 수급에서 벗어나기 위한 조건

| 구분 | 취업 또는 창업을 통한 안정적인 소득원 확보 | 의료비 부담 해결 | 안정적인 주거공간 확보 | 자녀 교육비 해결 | 기타 |
|---|---|---|---|---|---|
| 빈도(명) | 166 | 100 | 62 | 9 | 13 |
| 비율(%) | 47.4 | 28.6 | 17.7 | 2.6 | 3.7 |

수급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해 살펴보면, '소득 발생(근로) 후에도 일정 기간 수급 유예를 통해 자산 형성 지원'이 50.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장애인 맞춤형 고용 프로그램 확대' 20.3%, '경제적 자립을 위한 교육 및 훈련 과정 제공' 13.4%, '탈수급자 전용 주택 지원' 6.3%, '건강관리 재활 지원' 5.1%, '자립에 대한 심리 프로그램(예 : 자신감 향상 프로그램) 등 심리적 지원' 2.3%, 기타 2.0%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49> 수급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

| 구분 | 소득 발생(근로) 후에도 일정 기간 수급 유예를 통해 자산 형성 지원 | 장애인 맞춤형 고용 프로그램 확대 | 경제적 자립을 위한 교육 및 훈련 과정 제공 | 탈수급자 전용 주택 지원 | 건강관리 재활 지원 | 자립에 대한 심리 프로그램 (예 : 자신감 향상 프로그램) 등 심리적 지원 | 기타 |
|---|---|---|---|---|---|---|---|
| 빈도(명) | 177 | 71 | 47 | 22 | 18 | 8 | 7 |
| 비율(%) | 50.6 | 20.3 | 13.4 | 6.3 | 5.1 | 2.3 | 2.0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액 기준으로 수급자에서 탈피하기 위한 지원 금액 소득을 살펴보면, 기존에 수급 받은 금액 대비 생계급여 평균 175.2%, 의료급여 147.5%, 주거급여 147.1%, 교육급여 150.7%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3-50> 수급자에서 탈피하기 위한 지원 금액 또는 소득

| 구분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
|---|---|---|---|---|
| 최소(%) | 80.0 | 50.0 | 50.0 | 50.0 |
| 중간(%) | 175.2 | 147.5 | 147.1 | 150.7 |
| 최대(%) | 500.0 | 1000.0 | 500.0 | 1000.0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액 기준으로 수급자에서 탈피하기 위한 지원 금액 소득을 살펴보면 월 평균 245.5만 원으로 나타났다.

<표 3-51> 수급자에서 탈피하기 위한 월 소득

| 구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액 기준으로<br>수급자에서 탈피하기 위한 지원 금액 소득 |
|---|---|
| 최소 | 50.0만 원 |
| 중간 | 245.5만 원 |
| 최대 | 800.0만 원 |

수급 탈피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살펴보면 '수급비 확대', '의료비에 부담이 없고, 기본 생계급여와 본인 근로 추가 수입이 발생할 수 있다면 근로에 대한 의욕이 높아질 것 같음', '적은 돈이라도 장기간 저축하도록 지원',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수급자 정책으로 직장을 구할 수 없음', '소득 대비 임대료를 더 내고 영구 임대 아파트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자녀수입이 있어도 중증장애인은 수급지원', '안정적인 직업 보장지원' 등이 있다. 수급자를 위해 기타 필요한 정책을 살펴보면 '의료, 교육 문제 때문에 일자리가 있어도 수급을 탈피

하지 못함', '수급자도 공부할 수 있도록 국가의 지원 필요', '폭넓은 일자리 지원 정책', '부양의무제도 폐지', '생계, 의료급여 증가 필요하고 장애인 수급자를 위한 맞춤형 직업교육 및 일자리 제공',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 '탈수급 후에도 의료지원정책' 등이 있다.

## 5.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별 특성

응답자의 수급유형에 대해 살펴보면,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수급자)'가 81.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과거 기초생활수급자(현재는 탈피; 수급 탈피자)' 16.9%, '과거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피 후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재수급자)' 1.7%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52> 수급유형

| 구분 |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수급자) | 과거 기초생활수급자 (현재는 탈피; 수급 탈피자) | 과거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피 후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재수급자) |
|---|---|---|---|
| 빈도(명) | 285 | 59 | 6 |
| 비율(%) | 81.4 | 16.9 | 1.7 |

### 가. 국민기초생활수급 특성: 수급자

수급자를 대상으로 수급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하는 기간에 대해 살펴보면,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가 69.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벗어나고 싶지 않다' 9.5%, '1년~3년 이내' 7.7%, '3년 이후' 6.3%, '6개월~1년 이내' 2.1%, '6개월 이내' 1.4%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은 3.2%이다.

<표 3-53> 수급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하는 기간

| 구분 | 6개월 이내 | 6개월 ~1년 이내 | 1년 ~3년 이내 | 3년 이후 |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 벗어나고 싶지 않다 | 기타 |
|---|---|---|---|---|---|---|---|
| 빈도(명) | 4 | 6 | 22 | 18 | 199 | 27 | 9 |
| 비율(%) | 1.4 | 2.1 | 7.7 | 6.3 | 69.8 | 9.5 | 3.2 |

수급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하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이유를 살펴보면 '장애 정도가 호전되기 때문에',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 경제활동을 함으로 자격 박탈 예정', '수급자로만 살 수 없어서, 도움이 되고 싶어서', '1년 후쯤 창업을 생각하고 있어서', '현재 근로 중이라 저축을 열심히 하면 탈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등이 있다. 수급자를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예상하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이유를 살펴보면 '수입이 있으면 수급비가 깎여 돈을 모을 수 없어서 벗어날 수 없다', '나이가 많고 정신장애가 있어 취업이 어려움', '물가 상승으로 생계비 액수로 생활하기도 벅참', '장애로 인해 꾸준히 일을 하기 힘들다', '취업이 어렵다', '경제 상황', '정규직으로 전환이 어려워서', '안정적인 일자리와 소득이 없어서' 등이 있다.

수급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은 응답자를 대상으로 이유를 살펴보면 '안정적으로 살고 싶어서, 계속 돈은 벌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서', '의료급여 때문에', '나이가 많고 청각장애로 소통 문제가 있어 취업이 어려워 현재로서는 수급 지원이 없으면 살 수가 없다', '소득이 있어도 생계급여 차감이 있어 실소득이 적다' 등이 있다. 수급자를 대상으로 수급을 유지하는 이유 1순위를 살펴보면 '기본적인 생계유지가 어려워서'가 62.5%로 가장 많았으며, '의료비 및 약값 부담이 어려워서' 14.7%, '근로 능력이 없어 경제적 활동이 어려워서' 11.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1+2순위까지 살펴보면 '기본적인 생계유지가 어려워서'가 79.3%로 가장 많았으며, '의료비 및 약값 부담이 어려워서' 54.4%, '근로 능력이 없어 경제적 활동이 어려워서' 30.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www.kead.or.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표 3-54> 수급을 유지하는 이유

| 구분 | | 기본적인 생계 유지가 어려워서 | 의료비 및 약값 부담이 어려워서 | 근로 능력이 없어 경제적 활동이 어려워서 | 주거비 부담이 해소되지 않아서 | 현재 수급 유지에 만족해서 | 자녀 교육비를 충당할 수 없어서 | 일을 하고 싶지 않아서 | 기타 |
|---|---|---|---|---|---|---|---|---|---|
| 1순위 | 빈도(명) | 178 | 42 | 33 | 14 | 7 | 8 | 2 | 1 |
| | 비율(%) | 62.5 | 14.7 | 11.6 | 4.9 | 2.5 | 2.8 | 0.4 | 0.7 |

수급자를 대상으로 수급을 유지하는 데 가장 큰 어려움에 대해 살펴보면, '소득 증가로 대상자에서 탈락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41.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엄격한 수급 자격 유지 조건' 14.4%, '없음' 13.0%, '일관성 없는 조사 결과' 12.6%, '수급상태 유지로 인한 취업 기회 제한' 10.2%, '사회적 편견이나 차별 경험' 6.3%, 기타 1.8%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55> 수급을 유지하는 데 가장 큰 어려움

| 구분 | 소득 증가로 대상자에서 탈락하는 것에 대한 우려 | 엄격한 수급 자격 유지 조건 | 없음 | 일관성 없는 조사 결과 (소득, 재산 등 변화는 없으나 조사 결과가 다르게 나옴) | 수급상태 유지로 인한 취업 기회 제한 | 사회적 편견이나 차별 경험 | 기타 |
|---|---|---|---|---|---|---|---|
| 빈도(명) | 119 | 41 | 37 | 36 | 29 | 18 | 5 |
| 비율(%) | 41.8 | 14.4 | 13.0 | 12.6 | 10.2 | 6.3 | 1.8 |

수급자를 대상으로 수급 유지에 있어 가장 큰 장점에 대해 살펴보면, '기본적인 생계문제 해결로 경제적 불안정성 해소'가 60.4%로 가장 많았으며, '필요한 의료 서비스 이용 가능' 22.5%, '안정적인 주거생활 가능' 10.9%, '심리적 안정감 유지' 2.8%, '자녀 교육에 대한 부담감 해소' 1.8%, '일(근로)을 하지 않아도 됨' 각 1.1%, 기타 0.7%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56> 수급 유지에 있어 가장 큰 장점

| 구분 | 기본적인 생계문제 해결로 경제적 불안정성 해소 | 필요한 의료 서비스 이용 가능 | 안정적인 주거생활 가능 | 심리적 안정감 유지 | 자녀 교육에 대한 부담감 해소 | 일(근로)을 하지 않아도 됨 | 기타 |
|---|---|---|---|---|---|---|---|
| 빈도(명) | 172 | 64 | 31 | 8 | 5 | 3 | 2 |
| 비율(%) | 60.4 | 22.5 | 10.9 | 2.8 | 1.8 | 1.1 | 0.7 |

수급자를 대상으로 수급 유지 희망 여부를 살펴보면 '여건이 돼도 계속 유지하고 싶다' 59.3%, '여건만 되면 탈피하고 싶다' 40.7%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57> 수급 유지 희망 여부

| 구분 | 여건이 돼도 계속 유지하고 싶다 | 여건만 되면 탈피하고 싶다 |
|---|---|---|
| 빈도(명) | 169 | 116 |
| 비율(%) | 59.3 | 40.7 |

수급자를 대상으로 수급 유지 희망 이유를 살펴보면 '병원 혜택도 받으면서 마음이 안정화된 느낌.', '지출이 수입에 비해서 너무 높다', '돈벌기가 힘들 정도로 아파서', '생활의 안전 때문에',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직장과 소득이 유지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 등이 있다. 수급자를 대상으

www.kead.or.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로 수급 유지 비희망 이유를 살펴보면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국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독립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싶음', '주민센터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지속적인 조사로 마음의 부담이 커서', '사회적 시선', '편견 때문에', '스스로 자립할 수 있고 그만큼의 급여를 받는다면 성취감도 있고 자존감이 높아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힘드니까', '납세의 의무를 지키고 싶어서', '남의 시선과 편견 때문에' 등이 있다.

### 나. 국민기초생활수급 특성: 수급 탈피자

수급 탈피자를 대상으로 수급에서 탈피한 가장 큰 이유에 대해 살펴보면, '가족의 수입(소득 등)이 발생해서'가 33.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하고 있던 일의 수입이 늘어서' 27.1%, '상속, 증여, 재개발 등으로 재산이 늘어서' 25.4%, '사회적 편견을 벗어나고 싶어서' 5.1%, '소득, 재산 등 변화는 없으나 조사 결과가 다르게 나와서' 3.4%, '병이 나아서' 1.7%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은 3.4%이다.

<표 3-58> 수급 탈피 이유

| 구분 | 가족의 수입 (소득 등)이 발생해서 | 하고 있던 일의 수입이 늘어서 | 상속, 증여, 재개발 등으로 재산이 늘어서 | 사회적 편견을 벗어나고 싶어서 | 소득, 재산 등 변화는 없으나 조사 결과가 다르게 나와서 | 병이 나아서 | 기타 |
|---|---|---|---|---|---|---|---|
| 빈도(명) | 20 | 16 | 15 | 3 | 2 | 1 | 2 |
| 비율(%) | 33.9 | 27.1 | 25.4 | 5.1 | 3.4 | 1.7 | 3.4 |

수급 탈피자를 대상으로 수급 탈피에 가장 큰 도움이 된 것을 살펴보면, '취업 등 소득원 발생 또는 증가'가 57.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가족이나 친지

등 주변의 경제적 지원' 15.3%, '장애인 단체나 기관 등에서의 자립을 위한 지원' 8.5%, '재활치료 및 의료지원', '임대아파트 등 저렴한 주택지원' 각 6.8%, '교육 및 직업 훈련 프로그램 지원' 1.7%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은 3.4%이다.

<표 3-59> 수급 탈피에 가장 큰 도움이 된 것

| 구분 | 취업 등 소득원 발생 또는 증가 | 가족이나 친지 등 주변의 경제적 지원 | 장애인 단체나 기관 등에서의 자립을 위한 지원 | 재활치료 및 의료지원 | 임대아파트 등 저렴한 주택 지원 | 교육 및 직업 훈련 프로그램 지원 | 기타 |
|---|---|---|---|---|---|---|---|
| 빈도(명) | 34 | 9 | 5 | 4 | 4 | 1 | 2 |
| 비율(%) | 57.6 | 15.3 | 8.5 | 6.8 | 6.8 | 1.7 | 3.4 |

수급 탈피자를 대상으로 수급 탈피 이후 장점에 대해 살펴보면, '주거 등 생활 수준 등 삶의 질 향상'이 35.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경제적 자립' 28.8%, '스스로에 대한 성취감 및 자신감 향상' 11.9%, '자립에 대한 의지 향상' 10.2%, '자녀 교육을 위한 지원 강화', '주변의 부정적 시선에서 탈피' 각 5.1%, 기타 3.4%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60> 수급 탈피 이후 장점

| 구분 | 주거 및 생활 수준 등 삶의 질 향상 | 경제적 자립 | 스스로에 대한 성취감 및 자신감 향상 | 자립에 대한 의지 향상 | 자녀 교육을 위한 지원 강화 | 주변의 부정적 시선에서 탈피 | 기타 |
|---|---|---|---|---|---|---|---|
| 빈도(명) | 21 | 17 | 7 | 6 | 3 | 3 | 2 |
| 비율(%) | 35.6 | 28.8 | 11.9 | 10.2 | 5.1 | 5.1 | 3.4 |

www.kead.or.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수급 탈피자를 대상으로 수급 탈피 이후 가장 큰 어려움에 대해 살펴보면, '불안정한 소득'이 32.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충분한 의료 서비스 이용 어려움', '직업의 안정성 부족' 각 20.3%, '장애로 인한 건강 문제 관리 어려움' 15.3%, '안정적인 주거 공간 확보 어려움' 6.8%, '없음' 3.4%, '자녀 교육비 부담' 1.7%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61> 수급 탈피 이후 가장 큰 어려움

| 구분 | 불안정한 소득 | 충분한 의료 서비스 이용 어려움 | 직업의 안정성 부족 | 장애로 인한 건강 문제 관리 어려움 | 안정적인 주거 공간 확보 어려움 | 자녀 교육비 부담 | 없음 |
|---|---|---|---|---|---|---|---|
| 빈도(명) | 19 | 12 | 12 | 9 | 4 | 1 | 2 |
| 비율(%) | 32.2 | 20.3 | 20.3 | 15.3 | 6.8 | 1.7 | 3.4 |

수급 탈피자를 대상으로 수급 당시와 수급 탈피 후 만족도를 비교해보면, 경제적 생활은 수급 당시 만족 20.3%, 보통 30.5%, 불만족 49.2%에서 수급 탈피 후 만족 18.6%, 보통 47.5%, 불만족 33.9%로 불만족이 15.3% 감소하였고, 100점 환산시 수급 당시 42.8점에서 수급 탈피 후 46.6점으로 3.8점 높아졌다. 신체 상태는 수급 당시 만족 16.9%, 보통 52.5%, 불만족 30.5%에서 수급 탈피 후 만족 20.3%, 보통 40.7%, 불만족 39.0%로 불만족이 8.5% 증가하였고, 100점 환산시 수급 당시 48.3점에서 수급 탈피 후 46.2점으로 2.1점 낮아졌다. 가족관계는 수급 당시 만족 27.1%, 보통 52.5%, 불만족 20.3%에서 수급 탈피 후 만족 20.3%, 보통 49.2%, 불만족 30.5%로 불만족이 10.2% 증가하였고, 100점 환산시 수급 당시 54.2점에서 수급 탈피 후 48.7점으로 5.5점 낮아졌다. 주거생활은 수급 당시 만족 18.6%, 보통 42.4%, 불만족 39.0%에서 수급 탈피 후 만족 16.9%, 보통 52.5%, 불만족 30.5%로 불만족이 8.5% 감소하였고, 100점 환산시 수급 당시 46.6점, 수급 탈피 후 47.5점으로 0.9점 높아졌다.

여가 및 사회생활은 수급 당시 만족 22.0%, 보통 28.8%, 불만족 49.2%에서 수급 탈피 후 만족 23.7%, 보통 45.8%, 불만족 30.5%로 불만족이 18.7% 감소하였고, 100점 환산시 수급 당시 42.8점에서 수급 탈피 후 49.2점으로 6.4점 높아졌다.

전반적 만족도는 수급 당시 만족 20.3%, 보통 45.8%, 불만족 33.9%에서 수급 탈피 후 만족 20.3%, 보통 52.5%, 불만족 27.1%로 불만족이 6.8% 감소하였고, 100점 환산시 수급 당시 47.9점에서, 수급 탈피 후 48.3점으로 0.4점 높아졌다.

<표 3-62> 수급 당시와 수급 탈피 후 만족도

| 구분 | | 매우 만족 | 약간 만족 | 보통 | 약간 불만족 | 매우 불만족 | 만족 (Top2) | 보통 (Mid) | 불만족 (Bot2) | 100점 환산 (점) |
|---|---|---|---|---|---|---|---|---|---|---|
| 경제적 생활 | 수급당시 | 3.4 | 16.9 | 30.5 | 45.8 | 3.4 | 20.3 | 30.5 | 49.2 | 42.8 |
| | 수급 탈피 후 | 3.4 | 15.3 | 47.5 | 32.2 | 1.7 | 18.6 | 47.5 | 33.9 | 46.6 |
| | 차이[14] | 0.0 | -1.6 | 17.0 | -13.6 | -1.7 | -1.7 | 17.0 | -15.3 | 3.8 |
| 신체 상태 | 수급당시 | 11.9 | 5.1 | 52.5 | 25.4 | 5.1 | 16.9 | 52.5 | 30.5 | 48.3 |
| | 수급 탈피 후 | 11.9 | 8.5 | 40.7 | 30.5 | 8.5 | 20.3 | 40.7 | 39.0 | 46.2 |
| | 차이 | 0.0 | 3.4 | -11.8 | 5.1 | 3.4 | 3.4 | -11.8 | 8.5 | -2.1 |
| 가족 관계 | 수급당시 | 10.2 | 16.9 | 52.5 | 20.3 | 0.0 | 27.1 | 52.5 | 20.3 | 54.2 |
| | 수급 탈피 후 | 8.5 | 11.9 | 49.2 | 27.1 | 3.4 | 20.3 | 49.2 | 30.5 | 48.7 |
| | 차이 | -1.7 | -5.0 | -3.3 | 6.8 | 3.4 | -6.8 | -3.3 | 10.2 | -5.5 |
| 주거 생활 | 수급당시 | 10.2 | 8.5 | 42.4 | 35.6 | 3.4 | 18.6 | 42.4 | 39.0 | 46.6 |
| | 수급 탈피 후 | 6.8 | 10.2 | 52.5 | 27.1 | 3.4 | 16.9 | 52.5 | 30.5 | 47.5 |
| | 차이 | -3.4 | 1.7 | 10.1 | -8.5 | 0.0 | -1.7 | 10.1 | -8.5 | 0.9 |
| 여가 및 사회 생활 | 수급당시 | 8.5 | 13.6 | 28.8 | 39.0 | 10.2 | 22.0 | 28.8 | 49.2 | 42.8 |
| | 수급 탈피 후 | 8.5 | 15.3 | 45.8 | 25.4 | 5.1 | 23.7 | 45.8 | 30.5 | 49.2 |
| | 차이 | 0.0 | 1.7 | 17.0 | -13.6 | -5.1 | 1.7 | 17 | -18.7 | 6.4 |
| 전반적 만족도 | 수급당시 | 8.5 | 11.9 | 45.8 | 30.5 | 3.4 | 20.3 | 45.8 | 33.9 | 47.9 |
| | 수급 탈피 후 | 3.4 | 16.9 | 52.5 | 23.7 | 3.4 | 20.3 | 52.5 | 27.1 | 48.3 |
| | 차이 | -5.1 | 5.0 | 6.7 | -6.8 | 0.0 | 0.0 | 6.7 | -6.8 | 0.4 |

www.kead.or.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수급 탈피자를 대상으로 재수급 희망 여부를 살펴보면 '다시 받고싶다' 72.9%, '다시 받고 싶지 않다' 27.1%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63> 재수급 희망 여부

| 구분 | 다시 받고 싶다 | 다시 받고 싶지 않다 |
|---|---|---|
| 빈도(명) | 43 | 16 |
| 비율(%) | 72.9 | 27.1 |

재수급자를 대상으로 재수급 희망 이유를 살펴보면 '의료비가 많이 들고, 주거비도 월급의 반을 사용하여 수입의 3분의 2가 자부담으로 들어가서 수급자로 있었을 때랑 거의 나은 것이 없음.', '재활치료 병원비 부담', '일자리와 건강 문제로', '국민연금 때문에 수급자에서 탈락되어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생활에 어려움이 있음' 등이 있다. 재수급자를 대상으로 재수급 비희망 이유를 살펴보면 '삶의 질이 향상되었고 약간 불안정한 면은 있지만 일하는 행복과 마음이 안정되어 좋다', '수급을 받는 데 익숙해지면 희망과 동기가 사라지기 때문' 등이 있다.

## 다. 국민기초생활수급 특성: 재수급자

재수급자를 대상으로 수급 탈피 이후 재수급까지 걸린 기간을 살펴보면, '6개월~1년 이내'가 33.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1년~3년 이내'와 '1년~3년 이내' 각 16.7%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은 33.3%이다.

14) '수급 탈피 후' - '수급 당시' 비율. 이하 동일.

<표 3-64> 수급 탈피 이후 재수급까지의 기간

| 구분 | 6개월~1년 이내 | 1년~3년 이내 | 3년~5년 이내 | 기타 |
|---|---|---|---|---|
| 빈도(명) | 2 | 1 | 1 | 2 |
| 비율(%) | 33.3 | 16.7 | 16.7 | 33.3 |

재수급자를 대상으로 재수급 이유를 살펴보면, '장애로 인한 직장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실직이나, 자영업 실패 등으로 소득원 감소' 각 33.3%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가족의 소득(수입) 감소' 16.7%, 기타 16.7%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65> 재수급 이유

| 구분 | 장애로 인한 직장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 실직이나, 자영업 실패 등으로 소득원 감소 | 가족의 소득(수입) 감소 | 기타 |
|---|---|---|---|---|
| 빈도(명) | 2 | 2 | 1 | 1 |
| 비율(%) | 33.3 | 33.3 | 16.7 | 16.7 |

재수급자를 대상으로 재수급 과정동안 어려움이나 고충에 대해 살펴보면, '복잡한 행정절차', '신청 후 승인까지의 긴 대기시간'이 33.3%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일관성 없는 조사 결과' 16.7%, '스트레스 등 심리적 고통' 16.7%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66> 재수급 과정동안 어려움이나 고충

| 구분 | 복잡한 행정절차 | 신청 후 승인까지의 긴 대기시간 | 일관성 없는 조사 결과 | 스트레스 등 심리적 고통 |
|---|---|---|---|---|
| 빈도(명) | 2 | 2 | 1 | 1 |
| 비율(%) | 33.3 | 33.3 | 16.7 | 16.7 |

www.kead.or.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재수급자를 대상으로 재수급의 장점을 살펴보면 '기본적인 생계문제 해결로 경제적 불안정성 해소'가 66.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필요한 의료 서비스 이용 가능' 16.7%, '심리적 안정감 유지' 16.7%의 순으로 나타났음.

<표 3-67> 재수급의 장점

| 구분 | 기본적인 생계문제 해결로 경제적 불안정성 해소 | 필요한 의료 서비스 이용 가능 | 심리적 안정감 유지 |
|---|---|---|---|
| 빈도(명) | 4 | 1 | 1 |
| 비율(%) | 66.7 | 16.7 | 16.7 |

재수급자를 대상으로 수급 탈피 당시와 재수급후의 만족도를 비교해보면, 경제적 생활은 수급 탈피 당시 보통 66.7%, 불만족 33.3%에서 재수급후 만족 16.7%, 보통 88.3%로 불만족이 33.3% 감소하였고, 100점 환산 시 수급 탈피 당시 33.3점에서 재수급후 54.2점으로 20.9점 높아졌다. 신체 상태는 수급 탈피 당시 보통 33.7%, 불만족 66.7%에서 재수급후 보통 66.7%, 불만족 33.3%로 불만족이 33.4% 감소하였고, 100점 환산 시 수급 탈피 당시 25.0점에서 재수급후 37.5점으로 12.5점 높아졌다.

가족관계는 수급 탈피 당시 보통 66.7%, 불만족 33.3%에서 재수급후 만족 16.7%, 보통 88.3%로 불만족이 33.3% 감소하였고, 100점 환산 시 수급 탈피 당시 33.3점에서 재수급후 54.2점으로 20.9점 높아졌다.

주거생활은 수급 탈피 당시 만족 16.7%, 보통 50.0%, 불만족 33.3%에서 재수급후 만족 16.7%, 보통 83.3%으로 불만족이 33.3% 감소하였고, 100점 환산 시 수급 탈피 당시 37.5점에서 재수급후 54.2점으로 16.7점 높아졌다.

여가 및 사회생활은 수급 탈피 당시 보통 33.3%, 불만족 66.7%에서 재수급후 만족 16.7%, 보통 88.3%로 불만족이 66.7% 감소하였고, 100점 환산 시 수급 탈피 당시 25.0점에서 재수급후 54.2점으로 29.2점 높아졌다.

전반적 만족도는 수급 탈피 당시 보통 66.7%, 불만족 33.3%에서 재수급후 만족 16.7%, 보통 66.7%, 불만족 16.7%로 불만족이 16.6% 감소하였고, 100점 환산시 수급 탈피 당시 33.3점에서 재수급후 50.0점으로 16.7점 높아졌다.

<표 3-68> 수급 당시와 수급 탈피 후 만족도

| 구분 | | 매우 만족 | 약간 만족 | 보통 | 약간 불만족 | 매우 불만족 | 만족 (Top2) | 보통 (Mid) | 불만족 (Bot2) | 100점 환산 (점) |
|---|---|---|---|---|---|---|---|---|---|---|
| 경제적 생활 | 수급 탈피 당시 | - | - | 66.7 | 33.3 | - | - | 66.7 | 33.3 | 33.3 |
| | 재수급후 | - | 16.7 | 83.3 | - | - | 16.7 | 83.3 | - | 54.2 |
| | 차이[15] | - | - | 16.6 | - | - | 16.7 | 16.6 | -33.3 | 20.9 |
| 신체 상태 | 수급 탈피 당시 | - | - | 33.3 | 33.3 | 33.3 | - | 33.3 | 66.7 | 25.0 |
| | 재수급후 | - | - | 66.7 | 16.7 | 16.7 | - | 66.7 | 33.3 | 37.5 |
| | 차이 | - | - | 33.4 | -16.6 | -16.6 | - | 33.4 | -33.4 | 12.5 |
| 가족 관계 | 수급 탈피 당시 | - | - | 66.7 | 33.3 | - | - | 66.7 | 33.3 | 33.3 |
| | 재수급후 | - | 16.7 | 83.3 | - | - | 16.7 | 83.3 | - | 54.2 |
| | 차이 | - | - | 16.6 | - | - | 16.7 | 16.6 | -33.3 | 20.9 |
| 주거 생활 | 수급 탈피 당시 | - | 16.7 | 50.0 | - | 33.3 | 16.7 | 50.0 | 33.3 | 37.5 |
| | 재수급후 | - | 16.7 | 83.3 | - | - | 16.7 | 83.3 | - | 54.2 |
| | 차이 | - | - | 33.3 | - | - | 0.0 | 33.3 | -33.3 | 16.7 |
| 여가 및 사회 생활 | 수급 탈피 당시 | - | - | 33.3 | 33.3 | 33.3 | - | 33.3 | 66.7 | 25.0 |
| | 재수급후 | - | 16.7 | 83.3 | - | - | 16.7 | 83.3 | - | 54.2 |
| | 차이 | - | - | 50.0 | - | - | 16.7 | 50.0 | -66.7 | 29.2 |
| 전반적 만족도 | 수급 탈피 당시 | - | - | 66.7 | - | 33.3 | - | 66.7 | 33.3 | 33.3 |
| | 재수급후 | - | 16.7 | 66.7 | 16.7 | - | 16.7 | 66.7 | 16.7 | 50.0 |
| | 차이 | - | - | 0.0 | - | - | 16.7 | 0.0 | -16.6 | 16.7 |

www.kead.or.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재수급자를 대상으로 수급 유지 희망 여부를 살펴보면 '여건이 돼도 계속 유지하고 싶다', '여건만 되면 탈피하고 싶다' 각 50.0%로 나타났다.

<표 3-69> 수급 유지 희망 여부

| 구분 | 여건이 돼도 계속 유지하고 싶다 | 여건만 되면 탈피하고 싶다 |
|---|---|---|
| 빈도(명) | 3 | 3 |
| 비율(%) | 50.0 | 50.0 |

재수급자를 대상으로 수급 유지 희망 이유를 살펴보면 '생활 유지를 위해서', '근로능력이 없어서'가 있다. 재수급자를 대상으로 수급 탈피 희망 여부를 살펴보면 '지속적인 급여를 받는다면 탈피하고 싶다. 하지만 의료급여는 받고 싶음' 등이 있다.

## 제3절 소결

지금까지 국민기초생활 수급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조사 대상자는 수급자 및 재수급자는 291명, 탈수급자는 59명이었다. 수급자 및 재수급자의 경우 생계급여가 79.7%로 가장 많았고, 의료급여 66.0%, 주거급여 63.7%, 교육급여 8.6%로 나타났다. 가구 유형으로는 단독가구가 234, 비단독 가구가 116명을 차지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논의를 보면, 현재의 건강상태는 부정적 답변이 35.4%, 긍정적 답변이 26.3%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비율이 좀 더 높았다. 가족 구성의 경우 단독가구가 66.9%로 가장 많았으며, 가족의 주된 수입원은 수급 급여로 55.1%로 나타났다. 가족의 월평균 총 소득은 100-150만원 수

15) '재수급후' - '수급 탈피 당시' 비율. 이하 동일.

준이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였다. 가구 평균 소득은 137.4만원으로 나타났다. 공적연금 미가입 비율은 63.1%, 개인연금 미가입 비율은 87.1%, 건강보험의 경우 의료급여 1종이 49.1%로 가장 많았다.

경제활동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근로능력의 경우 근로가능비율은 60.8%로 나타났는데, 이 비율을 수급자와 비수급자로 구분하면, 수급자는 54.0%, 수급 탈피자는 93.2%를 차지하였다. 현재 근로 관련 건강상태는 일을 할 수 있는 편이라고 답변한 비율이 58.3%로 나타났다. 장애 상태가 구직 활동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는 지장을 초래한다는 답변이 72.0%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수급 탈피자가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현재 경제활동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일하고 있는 비중이 48.6%, 일하고 있지 않는 비중이 51.4%로 나타났다. 수급자의 44,4%, 비수급자의 89,8%가 일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주된 경제활동 참여상태를 보면, 상용직이 51.2%로 가장 높았다. 수급자와 비수급자를 비교할 경우 일용직 근로자 비중이 11,1%와 5.7%로 큰 차이를 보였다. 일자리의 종류로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일자리가 30.0%, 재정지원 일자리 28.8%로 나타났으며, 일반사업체는 25.3%를 차지하였다. 수급자의 경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41.0%, 재정지원 일자리 29.9%, 일반 사업체가 14.5%인 반면, 비수급자는 일반사업체 49.1%, 재정지원 일자리 26.4%,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5.7%로 차이를 보였다. 노동시장 지위는 정규직이 46.5%, 비정규직이 53.5%였으며, 수급자는 비정규직이 58.1%, 비수급자는 43.4%로 나타나 수급자의 비정규직 비율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근로시간 형태의 경우 시간제가 59.4%, 전일제가 40.6%인데, 수급자의 시간제 비율은 70.1%, 비수급자는 35.8%로 큰 차이를 보였다. 직종에서는 단순노무종사자가 37.6%, 사무종사자 28.8%, 서비스 종사자 15.9% 순이었다. 이 비은 수급자의 경우 단순노무종사자가 49.6%, 비수급자는 11.3%로 큰 차이를 보였다. 사무종사자 비율은 수급자가 16.2%인데 비해 비수급자는 56.6%로 큰 격차를 보였다. 월평균 임금의 경우 50-100만원이 37.1%로 가장 많았고, 50만원 미만이 27.1%였

www.kead.or.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다. 수급자의 경우 50-100만원이 48.7%, 50만원 미만이 36.8%인 반면, 비수급자는 200만원 이상이 50.9%로 차이를 보였다.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경제적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가 51.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반면 현재 일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장애로 인해 업무 수행이 어려울 거 같아서가 52.2%를 차지하였다. 수급자의 경우 10.9%가 수급 박탈을 우려해서 일을 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일자리가 발생했을 때 근로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42.8%가 하겠다고 답변한 반면, 57.2%는 하지 않겠다고 답변하였다.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으나 근로를 희망하는 이유에 대해 경제적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가 53.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일자리가 생겨도 근로의사가 없는 이유에 대해 건강이 좋지 않아서(45.6%), 기초수급 탈락(35.9%)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국민기초생활 수급과 관련한 특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현재 생활만족도의 경우 전반적인 만족도 수준은 100점 만점에 50.4점 수준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신체 상태에 대한 만족도가 40.5점으로 가장 낮고, 다음으로 경제적 생활(41.2점), 여가 및 사회생활(48.9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수급 신청 사유를 보면, 생계문제 해결이 60.0%로 가장 많았으며, 의료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13.7%로 나타났다. 급여 수준에 대한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39.4점 수준에 불과하였다. 수급을 벗어나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는 취업 또는 창업을 통한 소득원 확보가 47.4%로 가장 높았으며, 의료비 부담 해결도 28.6%로 나타났다. 수급 탈피를 위한 정부지원 방안으로는 일정기간 유예를 두어야 한다는 답변이 50.6%로 가장 많았으며, 고용 프로그램 20.3%, 경제적 자립 교육 및 훈련이 13.4% 등으로 나타났다. 수급에서 탈피하기 위해 필요한 소득으로 평균 245.5만원이라고 답변하였다. 수급 탈피를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수급비 확대, 의료비 부담 감소, 장기간 저축 지원, 영구 임대 아파트 지원 등과 같은 내용을 제시하였다.

수급자에 대한 특성을 보면, 수급자가 수급을 벗어날 것으로 예상하는 기간에 대한 질문에 대해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라는 답변이 69.8%이며, 벗어나고 싶지

않다는 답변이 9.5%,로 나타났다. 수급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로는 '수입이 있으면 수급비가 깎여 돈을 모을 수 없다', '나이가 많아 취업이 어렵다', '장애로 인해 꾸준히 일하기 어려움' 등이었다. 수급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안정적으로 살고 싶어서', '계속 돈을 벌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서', '의료급여 때문에' 등으로 답변하였다. 수급을 유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생계유지가 어려워서', '의료비 및 약값 부담이 어려워서', '근로능력이 없어 경제적 활동이 어려워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수급 유지로 인해 좋은 점으로는 '기본적인 생계 문제 해결로 경제적 불안정성 해소', '필요한 의료 서비스 이용 가능', '안정적인 주거생활 가능' 등을 제시하였다. 수급 유지 희망 여부에 대해서 여건만 된다면 59.4%는 유지하고 싶다고 답변하였다. 수급을 유지하고자 하는 이유로는 '병원 혜택과 마음의 안정', '돈벌기 어려움', '생활의 안전' 등이 제시되었으며, 반대로 수급을 탈피하고 싶은 이유로는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국가의 도움 없이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싶어서', '사회적 시선과 편견' 등을 제시하였다.

수급 탈피자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 수급을 탈피한 이유로는 '가족 수입증가', '일의 수입 증가', '재산 증가'등으로 나타났으며, 수급 탈피에 가장 많은 도움을 준 것으로 '취업 등 소득원 발생 또는 증가'라고 답변하였다. 수급 탈피 이후 좋은 점으로는 '생활 수준의 향상', '경제적 자립', '스스로에 대한 성취감 및 자신감 향상' 등이라고 답변하였다. 반면, 수급 이후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불안정한 소득', '의료 서비스 이용의 어려움', '직업의 안정성 부족' 등을 꼽았다. 수급 당시와 수급 탈피 후의 만족도를 비교한 결과를 보면, 전반적 만족도의 경우 수급 당시에는 47.9점에서 수급 탈피후에는 48.3점으로 0.4점이 높아졌다. 경제적 만족도는 3.8점, 주거 생활은 0.9점, 여가 및 사회생활은 6.4점 높아졌다. 반면, 신체 상태는 2.1점 낮아졌고, 가족관계는 5.5점 낮아졌다. 수급 탈피자를 대상으로 재수급 여부에 대한 질문에서 다시 받고 싶다는 답변이 72.%, 다시 받고 싶지 않다는 답변이 27.1%로 나타났다. 재수급을 희망하는 이유로는 '의료비', '수급 상태와 거의 나은 것이 없음', '재활치료 병원비 부담' 등이라고 답변하였

으며, 재수급을 희망하지 않는 이유는 '삶의 질 향상되고 일하는 행복과 마음의 안정', '희망과 동기' 등과 같은 답변이었다.

재수급자에 대한 조사에서 재수급 사유에 대한 질문에 대해 '장애로 인한 직장생활의 어려움', '실직이나 자영업 실패 등으로 소득원 감소' 등이라고 답변하였다. 재수급의 장점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생계문제 해결로 경제적 불안정성 해소', '필요한 의료 서비스 이용 가능', '심리적 안정감 유지' 등으로 답변하였다. 수급 탈피 당시와 재수급후의 만족도에 대한 조사에서 전반적 만족도는 16.7점이 높아졌다. 경제적 만족도는 20.9점, 신체상태는 12.5점, 가족관계는 20.9점, 주거생활 16.7점, 여가 및 사회생활은 29.2점 높아졌다. 수급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이유에 대해 '생활유지', '근로능력이 없어서' 로 나타났다.

이러한 논의를 정리하면 장애 상태가 구직활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 일을 하는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이며, 일을 하지 않는 이유는 장애 문제와 수급 박탈 우려 때문이었다. 일자리가 생겨도 근로의사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건강 문제와 기초수급 탈락 우려가 주된 답변이었다. 결과적으로 수급 장애인은 건강과 장애 그리고 수급 탈락에 대한 우려로 인해 쉽게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참여한다 하더라도 낮은 수준에서의 일자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급은 주로 생계문제 해결이나 의료 급여 때문에 신청하였으나 수급자의 생활만족도 100점 만점에 50점 수준으로 낮았고 급여 수준에 대한 만족도 역시 39.4점에 불과하였다. 수급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월 평균 245.5만원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였다. 수급 탈피를 위한 방안으로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취업 또는 창업 지원이나 고용 프로그램 확대 방안, 두 번째는 의료비 부담 경감 그리고 세 번째는 경제적 자립이나 장기간 저축 지원, 수급비 확대 등과 같이 소득을 높이는 방안 등이다.

# 제 4 장
# 심층인터뷰 조사

## 제1절 조사 개요

### 1. 조사 방법 및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 장애인의 근로 현황과 수급 탈피와 관련된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복지패널 조사 결과와 실태조사 등의 결과로는 세부적인 문제점 등을 도출하기 어렵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양적 분석에 나타난 의문점 등을 중심으로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양적 조사를 기반으로 심층 면접을 통해 질적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연구 문제에 대한 보다 풍부한 설명을 가능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다(Creswell & Creswell, 2019). 따라서 본 연구는 기초수급 장애인의 수급 관련 상황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이들을 일자리로 유인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 함의 도출을 위해 심층 인터뷰 조사를 시행하였다.

먼저 연구 참여자 선정에는 비확률표집 방법(purposeful sampling) 방법론을 활용하였다. 해당 표집 방법론은 제한된 자원에서 풍부한 정보를 보유한 사례를 판별 및 선택하기 위해 질적 연구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기법이다(Palincas et al, 2015; Patton, 2002). 비확률표집 방법은 확률 표집 방법론이 목표로 하는 표본 대표성의 달성보다는 연구자의 연구 목표에 적합한 표본을 의도적으로 선택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론이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비확률 표집 방법 중

www.kead.or.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판단 표집 방법을 사용하였다. 판단 표집은 연구자가 연구 문제와 모집단에 대한 충분한 경험과 지식 및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면서 연구 목적에 가장 적합한 표본이라고 생각하는 연구 대상을 표본으로 선정하는 표집방법으로서 유의 표집 또는 목적 표집(purposive sampling)이라고 한다. 이러한 판단표집은 연구자가 임의로 표본을 구성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편의표집과 유사하지만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으로 표본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연구대상을 선택하는 노력을 기울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강영걸, 정주석, 김경섭, 김정우, 2012).

본 연구에서는 연구 목적에 적합한 면접 참여자 선정을 위해 장애인 자립재활센터를 통해 연구 목표를 설명하고 연구 목적에 적합한 면접 대상을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자 선정을 위한 가장 중요한 준거는 기초수급 관련 상황으로, 수급, 재수급, 탈수급이라는 3대 범주를 선정하여 해당 범주별로 3명 내외의 면접 대상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구체적인 연구 목적에 대한 설명과 동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8명이 심층인터뷰에 참여하였다

<표 4-1> 연구참여자 특성

| 구분 | 성별 | 연령 | 수급상황 | 비고 |
|---|---|---|---|---|
| 1 | 남 | 50대 | 수급 | 뇌병변, 심한 장애 |
| 2 | 여 | 40대 | 수급 | 지체장애, 심한 장애 |
| 3 | 여 | 60대 | 수급 | 지체장애, 심한 장애 |
| 4 | 남 | 50대 | 재수급 | 지체장애, 심한 장애, 단시간 근무 |
| 5 | 남 | 40대 | 재수급 | 뇌병변, 심한 장애, 단시간 근무 |
| 6 | 남 | 60대 | 탈수급 | 지체장애, 심한 장애, 정규직 근무 |
| 7 | 여 | 50대 | 탈수급 | 지체장애. 심한 장애, 정규직 근무 |
| 8 | 남 | 40대 | 탈수급 | 뇌병변 심한 장애, 장애인 재활 센터 근무 |

## 2. 조사 내용

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수급을 탈피하고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그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안을 찾아 고용 확대 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심층 인터뷰의 내용도 이 점에 초점을 맞추어 구성되었다. 심층 인터뷰 진행은 기본적으로 정량적 자료 확보보다는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는 의도가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설문지는 정량적이기보다는 개방형 질문 혹은 반구조화된 질문으로 진행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민기초생활 수급과 수급 탈피에 대한 포괄적인 질문들로 구성된 설문지를 작성하여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활용하였다. 세부적인 질문 항목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급을 받게 된 사유와 재수급 사유 등 주로 수급을 받게 된 이유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여기에는 수급 신청 및 선정 이유, 수급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 수급 탈피가 어려운 이유, 수급과정에서의 어려움, 재수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등을 중심으로 설문 내용을 구성하였다.

둘째, 탈수급과 관련하여 탈 급 사유, 수급시기와 탈수급 시기와의 비교, 탈수급에 따른 생활상의 차이, 재수급에 대한 의향 등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설문 내용을 구성하였다.

셋째, 수급 기간 중 취업 경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취업 계기, 취업에 따라 달라진 점, 취업시 받은 임금과 수급과의 관계, 소득에 따른 공제 제도 활용 여부 등을 포함하였으며, 특히 이 과정에서 장애인 고용 서비스 등을 받은 경험에 대한 내용을 질문에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초수급 장애인의 고용 확대를 위한 현실적인 방안 등에 대한 국가 사회적 지원, 수급탈피를 위한 근로 유인 방안 등에 대한 제언 등을 포함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구체적으로 담고자 하였다.

www.kead.or.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표 4-2> 질문지 구성

| 구분 | 항목 | 내용 |
|---|---|---|
| 수급자 | 1. 수급 신청/선정 이유 | - 수급 신청의 구체적 이유<br>- 수급 대상자 선정 이유 |
| | 2. 수급 유지 의견 | - 수급 대상자로서의 자신에 대한 의견<br>- 수급의 장단점/ 수급 탈피 이유 |
| | 3. 수급 과정 중 일자리 경험 | - 일한 경험이 있을 경우 ① 근로 이유 및 근로 조건 ② 수급 탈락 인지 및 수급 유지 여부<br>- 일한 경험이 없을 경우 ① 미구직 이유 및 수급 유지와의 연관성 |
| | 4. 수급 과정 중 고용/복지 서비스 | - 근로소득공제제도 ① 제도 인지 및 이용 여부 ② 제도에 대한 의견(실제 이용 여부 무관)<br>- 그 외 고용/복지 서비스 ① 받은 서비스의 내용 ② 서비스를 받지 못했을 경우 이유 ③ 받았을 경우 서비스에 대한 의견 |
| | 5. 수급 탈피 의향 및 근로 촉진 방안 | - 수급 탈피 의향 여부 및 이유<br>- 수급 탈피를 위해 필요한 사항<br>- 기초수급장애인이 일하기 위한 필요 지원책 |
| 재수급자 | 1. 재수급 사유 | - 재수급을 하게 된 상황<br>- 재수급 시 어려움/애로사항 |
| | 2. 수급과 탈수급 비교 | - 수급, 탈수급, 재수급 과정 각각에서의 장단점<br>- 재수급 과정의 어려움 |
| | 3. 수급 과정에서의 일자리 경험 | *※ 수급자 대상 질문과 동일* |
| | 4. 수급 과정에서의 고용/복지 서비스 | |
| | 5. 수급 탈피 의향 및 근로 촉지 방안 | |
| 탈수급자 | 1. 탈수급 사유 | - 수급을 받은 이유와 현재 수급을 탈피한 이유<br>- 수급 당시와 탈수급 상황 각각의 생활 만족도 |
| | 2. 수급 당시의 정책/제도적 지원 | - 수급시 수급/탈수급 관련 지원 서비스 수령 여부 및 내용<br>- 해당 서비스의 도움 정도<br>- 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없을 시 그 사유<br>- 근로소득공제제도 경험 여부 |
| | 3. 수급 당시 일자리 경험 | *※ 수급자 대상 질문과 동일* |
| | 4. 탈수급 계기 및 지원 여부 | - 탈수급을 하게 된 가장 큰 계기<br>- 탈수급 과정에서 국가/사회/기관에서 받은 지원 및 도움 정도 |
| | 5. 수급자 근로 촉진 방안 | - 수급자가 근로를 회피하는 이유<br>- 수급자가 일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 |

심층인터뷰는 2024년 10월 25일과 28일 등 2일 동안 실시되었다. 심층인터뷰 내용은 참여자에게 사전 동의를 구하여 녹음을 하였으며, 인터뷰 시간은 1시간-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었다. 인터뷰 진행 이후 각각의 인터뷰 내용은 주제별로 다시 구분하여 체계화하였으며, 주제 분석 방법론을 통해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 제2절 조사 결과

### 1. 수급 관련 상황 및 수급에 대한 태도

장애인들은 기초수급을 경제적 어려움에 대처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방안으로서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뷰에 응한 기초수급 장애인들은 가족의 해체와 같은 경제상황이 갑자기 악화되는 상황을 직면하여 기초수급을 선택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 10년 전에 장애가 발생하고 가정이 파탄나고 혼자 살려니까 어쩔 수 없이 수급자 신청을 하게 된 거고 그래서 지금 수급자 생활을 하고 있고요. (참여자 1)

> 처음부터 저는 진짜 국가에서 보조받는 것보다 내 스스로 이렇게 살아가는 걸 좋아했고 남편이 옛날에 이제 우리가 월급이 적어도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엄마가 장애가 있으니까 학교에서 급식비 같은 거 받으라고 해도 저는 안 받았어요. (중략) 그런데 남편이 돈을 빌려주고 받지는 못하면서 그 빚이 다 나한테로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혼을 하게 되면서 그 빚을 내가 다 떠안고 하다 보니까 내가 살 길이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수급을 하게 됐어요. (참여자 2)

군 제대하고 바로 중도 장애인이 됐거든요. 어머니 계실 때는 어머니가 이렇게 해서 그냥 살았고 그 뒤에는 컴퓨터 열심히 해서 자격증도 따고 구청에다 등록 그런 걸 해놓고 나름대로 이제 몸부림을 쳤죠.(중략) 그런데 내 나이에 이 장애를 가지고 어디 가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지인들을 통해 노력은 했는데 도저히 해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수급자가 되었어요. (참여자 4)

수급 이후 탈수급에 성공하였다가 재수급을 하게 된 사례에서는 기초수급이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이득 측면이 보다 명확하게 드러난다. 이론적으로는 수급을 포기함으로서 벌 수 있는 급여가 많지만, 현실적으로 장애인의 일자리 사정을 고려하면 수급을 통해 받을 수 있는 혜택과 비교하여 크지 않다는 판단을 이들은 하고 있었다.

결혼하기 전에 제가 큰 수술을 받을 일이 있었어요. 장애로 인해서 허리가 이제 많이 흰 상태였는데 그걸 수술을 받기 위해서 수급 신청을 해서 크게 의료 혜택을 이제 받았던 경험이 있었고요.그 뒤 결혼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수급을 탈피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수급을 하게 된 것은 남편 회사에 부도가 나서 남편이 갑자기 실직을 하고 재취업이 어려웠는데 아이 교육도 시켜야 하고 저도 의료나 주거 같은 것들을 감당하기 힘들어서 다시 수급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참여자 3)

제가 공직생활을 했었어서 수급 제도를 알고 있었어서 당장 특별한 대책이 없으니까 수급을 신청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신청을 했고 절차를 거쳐서 선정이 되고 혜택을 받게 되었죠. 그런데 금액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수급을 포기하고 다른 일자리를 찾아봤어요.(중략) 그런데 막상 일을 해보니 상황이 생각과 다른 거예요. 주거 그다음에 생계, 의료, 교육 이렇게 4가지 혜택을 받는데, 사실은 그 혜택을 다 따져봤을 때는 그것도 적지 않거든요. 결국은 나는 힘들게 일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계산적으로 보면 이게 플러스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신청을 했죠. (참여자 6)

그럼에도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면 수급을 탈피하고 싶은 욕망을 품고 있었다. 자신이 수급대상자라는 점 때문에 기초수급 장애인은 자존감의 손상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들은 수급 탈피를 통해 이를 해소하고 싶어했다.

너무 이게 진짜 우리는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친구들도 만나고 싶지만 맨날 우리가 가면 얻어먹는다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저도 이제 몸이 불편하다 보니까 내가 계산을 하고 싶은데 먼저 가서 계산을 하잖아요. 그랬는데 진짜 저는 이런 일도 당했어요. 이제 내가 이제 맨날 친구가 고향 친구인데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어 알았어 그러고 나는 내가 낼 마음으로 만났는데 이제 나 저기 카드 꺼내고 뭐 하는 순간에 자기가 가서 내 내고 난 뒤에 나중에 하는 말이 친구들 진짜 동창 모임이 있어서 딱 갔는데 그 많은 친구들 앞에서 야 맨날 너는 얻어먹지 말고 한번 사 이러는 거예요. 그런 충격도 받은 거예요. (참여자 2)

조건이나 기회가 된다면은 탈피하고 싶죠. 사실은 정부에서 그 돈 조금 받으면서 서라도 눈치 보고 신경 쓰이고 아주 그것도 자존심 문제도 있고 아주 별로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닌 것 같아. 근데 만약에 스스로 능력으로 뭔가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사회가 만약 그런 구조가 된다면 그건 당연히 내가 그냥 내 힘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최고죠. (참여자 6)

극적인 사례로는 수급을 받음으로서 근로를 포기하게 되면서 삶이 무력하지고 궁극적으로 망가지는 경우 또한 나타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얼마 정도 이제 저기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의 이제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근데 저 아는 분들이 진짜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수급비를 받기 시작하면서 알코올 중독으로 가신 분은 몇 사람을 봤어요.(중략) 집도 가지고 있던 분들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봤더니 너무 행색이 초라한 거야. 그래서 아니 왜 그래 어디가 아프셔요? 이랬더니

www.kead.or.kr KO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돈을 다 형제들한테 준 거야. 나 수급비 돈 매달 나오니까 그 돈 가지고 할 일이 없으니까 공원 가서 술을 마시기 시작하다 나중에는 알콜 중독자가 되어 돌아가시는 것을 봤어요. (참여자 2)

이같은 정당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신을 재정리하고자 하는 희망은 기초수급장애인의 탈수급을 촉진하는 주요 동기로 나타났다.

그런 건 있죠. 물질적인 만족도보다는 내가 좀 일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성취감, 예를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80만 원짜리 일자리보다는 정직원으로 일자리 하는 게 자신감 같은 게 게 있잖아요. 보람이나 성취감도 있고 그런 거 있지. 물질적으로 크게 내가 정직원이 되어서 월급이 많아졌으니까 소득이 많아졌다 그런 건 피부로 잘 못 느끼죠. (참여자 5)

수급이나 내 수입이나 계산해 보면 거의 비슷하면 오히려 좀 손해라도 내가 일을 하면서 별 차이가 없게끔 되니까 제가 그래도 수급을 탈피하고 싶다는 자존감 회복이죠.(중략) 장애인도 일을 하면서 정부에서 지원을 안 받고 내가 내 일을 해갖고 소득을 얻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한번 해보자 싶어서 탈수급을 해본 거예요. (참여자 7)

탈수급이 저는 되게 편한 것 같아요. 마음속으로 내가 당당하게 내가 움직여서 대가를 받고 그 대가 받은 걸로 내가 스스로 살아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장애인 비장애인이 떠나서 공통된 모습이 아닌가. 나도 한 사회에서 한 사람의 시민이고 국민이고 사람 사람 똑같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는 여건이 되면은 수급보다는 탈수급이 나는 편하다. (참여자 8)

그러나 수급에 대해서도 장애인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의 영위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이는 장애인의 보다 자립적이고 활력있는 생활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일단은 수급을 받을 때는 제 몸은 편하잖아요. 일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나름대로 좀 여가생활도 즐길 수가 있고 좀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좀 플러스 되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적은 돈 가지고 아껴 쓰면 되니까 예를 들어 세끼 먹을 거 두끼 먹으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냥 그 돈을 가지고 쓰면 되는데 조금 여유가 있어요. 일을 하게 되면 우리가 힘든 일을 안 한다 하더라도 출근 제때 해야 되고 퇴근은 제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적으로 어떤 전혀 뭐 이런 여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낙이 없는데 그렇다고 거기에 비례해서 뭔가 경제가 달라지거나 하면 또 거기에 어떤 문제가 성사되는 면이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건 그렇다고 경제가 나아지지도 않고 몸만 더 힘든 거죠. (참여자 6)

예전에는 수급하기 전에는 내가 굶어 죽을 판인데 먹을 게 없어서 한데 수급하니까 그래도 굶어 죽지는 않잖아 그렇잖아요.  의료 보호도 되고 그렇죠. 그러면 3000 정도의 수입이 된다고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생계비는 아니더라도 전체를 생각해 보고 그러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 수급이 힘들었던 그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만 해도 만족도가 있는 거죠. 그때보다 훨씬 좋아졌어 그러니까요. (참여자 7)

그럼에도 수급을 받는 것이 육체적으로는 편할 수 있지만 정신적으로는 상당한 스트레스를 부여할 수도 있었다.

그때(탈수급을 하였을 때)는 이제 신경 안 써서 좋았죠. 수급을 받으면 말이죠. 여러 가지로 또 참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리고 또 제지를 받잖아요. 뭐 조사하네 어쩌네 하면서 은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스트레스들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www.kead.or.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그래서 그런 게 편하죠. 속은 편하고 내가 몸만 움직이면 되니까. (참여자 6)

기초수급의 구성 항목 중에서는 의료급여에 대한 중요성 인식 및 선호도가 크게 나타났다. 장애인의 경우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이 필수적인 경우가 많으며 특히 장애인이 고령화 될 경우에는 고령에 따른 의료비의 추가적인 부담이 기초수급과 같은 사유로 별도의 자산을 형성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있어 더욱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일단은 장애인들 같으면 제일 우선시되는 게 생계도 중요하지만 저는 의료가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병원 가는 일이 수시로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가 딴 건 포기하지 의료 수급은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급을 탈피해서 급여가 상당하더라도 의료 수급만큼 급여가 충당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결코 수급을 포기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참여자 1)

대개 지병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의료비 같은 경우도 이제 가까운 동네 병원 같은 경우는 그냥 그냥 가면 보험 그걸 하게 되는데 대학병원 쪽으로 이렇게 조금 고급 병원으로 가다 보니까 특진료라는 그런 부분들이 그런 거를 이렇게 제대로 생각할 때 우리가 의료 급여를 놓쳐버리면은 감당하기 힘들어요. (참여자 3)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의 경우 가족을 이루고 있는 장애인에게 있어 특히 중요한 서비스로 인식된다. 특히 주거급여의 경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면접자의 비중이 높으며 교육급여 또한 자녀를 키우고 있는 장애인 수급자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서비스였다.

그리고 의료도 중요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거가 아주 중요했었거든요. 제가 이제 남편과 이혼을 하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 맨몸으로 나온 상태잖아요. 그러면 돈도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방을 얻으려면 그냥 돈을 누가 집을 주나요? 매달

월세를 얼마씩 내야 되고 기본이 못해도 15만 원에서 20만 원을 내야 되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진짜 그때 많은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참여자 2)

## 2. 수급탈피가 어려운 이유

기초수급을 받는다는 것은 자신이 사회의 당당한 일원보다는 시혜의 대상이라는 부정적 자기 이미지를 갖게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같은 시혜의 대상은 기초수급 장애인의 자존감을 손상시키고 사회적으로도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하여 기초수급 장애인의 건강한 사회활동을 저해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또한 많은 기초수급 장애인들은 수급을 탈피하여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을 강하게 품고 있었으며, 비록 수급을 받는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품을 수 밖에 없음에도 이를 벗어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탈피할 생각 많이 하죠. 어찌 됐든 간에 장애인이지만 비장애인들하고 접촉이 있고 또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자존심이라는 그런 걸 느끼니까 벗어나고 싶은 부분도 많고 하지만 이런 요인들 때문에 벗어날 시도 자체를 못하고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의료 주거 그런 어떤 경제적인 그런 것 때문에 생각은 많이 고민하고 하죠. 나도 벗어나서 부자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살고 싶다. 근데 벗어나면 당장 의료 안 되지 주거 안 되지. (참여자 4)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어디에 좋은 아파트 있으니까 그냥 네가 한 3년 그냥 공짜로 살아라 그러니까 이사해라 그렇게 그냥 공짜로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사를 못할 것 같아요. 일단  돈도 돈이지만 옮기는 거 그 자체가 힘들고. 지금 살고 있는 그 영구 임대는 적정하게 살 수 있고 또 생활비 계속 주시니까 그걸로 그냥 알뜰하게 관리하면서 그냥 주거에 대한 고민 없이 그냥 쭉 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매몰될 수밖에 없고 정착할 수밖에 없고 주거 문제 의료 문제 그런 것 때문에 머리로는 벗어나고 싶다 이렇게 하고 싶다 그냥 그런

www.kead.or.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걸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지만 시도를 못하게 됩니다. (참여자 4)

현실적으로 장애인이 탈수급에 따라 기대하는 보다 나은 경제적 상황과 같은 결과를 얻기 어렵다는 점을 수급 탈피가 어려운 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특히 의료비 부담이 커지는 고연령대에서 더욱 두드러질 수 있다. 이 결과는 기초수급제도에 대한 효용이 장애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시사한다.

아무리 장애라고 하더라도 시간과 노력은 투자가 되죠.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대가를 받는 게 맞는데 오히려 일을 하면서 이제 조금의 수익은 생기지만 그것은 그렇게 따져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또 갈등이 생기고 제도를 좀 바꿔주면 차라리 조금이라도 일을 하는데 메리트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메리트가 없다는 얘기죠. (참여자 6)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소득이 좀 많아진다 그러면 일자리를 갖고 싶은 분이 많아요. 근데 겨우 한 20-30만 원 그러면 굳이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더 안 하려고 하죠. 젊은 분들은 모르겠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몸도 더 불편하고 그러는데 내가 굳이 20-30만 원 벌려고 그걸 하냐 차라리 아끼고 말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은 이제 나이가 들면 더 몸이 안 좋으니까 의료비 부분들이 비중이 커요. 생각보다 소득보다는 내가 아파버리면 오히려 내가 지금 저축해 놓은 돈도 없는데 뭘로 감당을 하겠냐. 그래서 그런 그런 부분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은 더 의료비에 대한 비용이 커집니다. (참여자 5)

수급을 포기 못하는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죠. 왜냐하면 내가 생계를 유지할 경제적인 어떤 보장이 돼야 생계를 포기할 건데 그런 거 없이 생계를 포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취업을 한다 해서 장애인들이 고소득 취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

에 이 수 기초생활 수급보다 그것조차 유지할 수가 없는 상태까지 되기 때문에 취업을 한다 해도 장애인 소득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생계를 유지를 계속 생계비를 유지를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참여자 7)

우리나라의 경우 기초수급 제도 안에 모든 복지 혜택이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수급에서 탈피할 경우 해당 복지 혜택을 모두 포기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수급을 안 하고 싶죠. 사실은 일을 하고 싶죠. 인간다운 삶이라는 게 일을 하면서 그냥 세금 내고 이렇게 사는 게 인간다운 삶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실이 그렇지가 못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수급을 탈피를 못하는 제1 이유가 우리는 수급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잖아요. 의료니 주거니 교육이니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한 데에 몰아 수급을 탈락한 순간 그 모든 걸 다 잃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급을 못 놓는 거예요. (참여자 7)

그런데 실제 보다 많은 수익을 벌겠다는 동기로 탈수급을 결심했지만 현실적으로는 탈수급이 경제적으로 크게 이득이 되지 않는다는 점 또한 여러 면담 대상자들이 지적하였다. 특히 부양가족이 있거나 고령이어서 의료비지출이 많은 등의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기초수급에 따른 혜택이 더욱 크게 느껴질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일을 했는데 일을 해도 결과는 나아질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애인이기 때문에 뭔가 고부가가치의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월급 많이 받는 일을 누가 써주지도 않을뿐더러 그러면 결국은 국가에서 하는 이런 일자리 같은 거거든요. 장애인 한계가. 근데 그런 것들이 거의 다 최저임금 수준으로 주기 때문에 별반 금액이 얼마 안 되죠. 그런데 그거 가지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뭐 수급받아서 사는 거나 그렇게 조금 벌어서 사는 거나 별도 차이가 없다는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중략) 삶은 늘 마찬가지예요. 그대로인데 몸만 고달픈 거죠. 일을 하니까. (참여자 6)

제가 또 질병이 있어가지고 의료 때문에 탈수급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5년간 암 투병을 했었거든요. 이제 제가 진로를 다 이제 치료를 거의 5년을 해갖고 이제 돈 들어가는 거를 조금 많이 다 했으니까 의료에 이제 존 의존이 좀 덜하니까 제가 수급 탈피를 한 거죠. 그런데 제 월급이 월급 300만원 남짓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만약에 수급일 경우는 의료보호니 주거니 이런 거, 또 장애인 수당 이것도 다 우리는 저소득층 수급이 돼야지만 장애인 수당도 지금 40만 원 정도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것도 수급 탈피하면 그것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거 저런 거 생각하면 지금 한 300 받아도 거의 비슷비슷할 거예요. (참여자 7)

특히 탈수급 후 재수급을 선택한 한 중장년 인터뷰 참여자의 경우, 탈수급에 따라 기대한 경제적 이득이 실제적으로는 실현되지 않음을 깨닫고 재수급을 선택하게 되었다.

그렇죠. 뭔가 수입을 더 늘리는 욕심 때문에. 왜냐하면 생활의 어떤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지잖아요. 하고 싶은 걸 못하고 이런 부분이 아쉬웠죠. 아시다시피 수급비가 너무 터무니없어요. 그냥 그 돈 가지고 예를 들어서 생활하는 데 공과금을 내고 한 세 끼는 좀 힘들고 두 끼 정도 먹으면 그 이상은 쓸 돈이 없잖아요. 그건 뭐 그 정도인데 뭔가 내가 좀 해서 움직여서 더 벌어서 좀 더 풍족하게 살아보고자 하는 욕심이죠.(중략)

그래서 일을 했는데 일을 해도 결과는 나아질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애인이기 때문에 뭔가 고부가가치의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월급 많이 받는 일을 누가 써주지도 않을뿐더러 그러면 결국은 국가에서 하는 이런 일자리 같은 거거든요. 장애인 한계가. 근데 그런 것들이 거의 다 최저임금 수준으로 주기 때문에 별반 금액이 얼마 안 되죠. 그런데 그거 가지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뭐 수급받아서 사는 거나 그렇게 조금 벌어서 사는 거나 별도 차이가 없다는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삶은 늘 마찬가지예요. 그대로인데 몸만 고달픈 거죠. 일을 하니까. (참여자 6)

## 3. 일자리 경험

기초수급 장애인의 경우 대부분 수급자격에서 탈락되지 않는 수준에서 일자리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에는 서울형 일자리를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 또 하게 되면 수급자 자격에서 탈락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걸 포기를 하고 지금은 그냥 일자리 뱅크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중략) 그러니까 저한테 제일 큰 게 의료 수급인데 그걸 못 받게 되면 안 되니까 다 포기를 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참여자 1)

저도 일은 수급비 가지고는 생활이 어려우니까 주위 사람들한테 말을 했더니 와서 여기 좀 도와줘. 우리 가게에 와서 도와줘. 나 수급이 잘리는데 이러면 그러면 그냥 시간제로 해가지고 얼마씩. 그러니까 만약에 한 달 일해주고 10만 원 받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밖에 일할 수 밖에 없죠. (참여자 2)

저는 수급인 상태인데 저는 작년까지도 비공식적으로 이제 프리로 장애인분들 이제 자립생활 할 수 있도록 시설에서 나온 분들이 자립생활 할 수 있도록 같이 이제 상담해 주고 도와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1시간 건당 5만 원씩 장애인 자립센터에서 그런 페이를 받고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세금이 발생이 안 되니까 그건 이제 그걸로 인해서 또 이제 수입을 좀 하기도 하고 장애인 인식 개선 이나 장애인 동료 상담 강의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그거 과감하게 그냥 했어요. (참여자 3)

수급을 받은 뒤부터는 수급에 탈락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약간 비공식 아르바이트 형태로  일을 많이 하게 됐죠. 저같은 경우에는 일은 쉬지 않고 꾸준히 했어요. 그러니까 월급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좀 도와주고. 그러니까 점장님들이 하는 일을 그에 준하는 노력과 시간을 투자를 하고 급여는 그냥 조금 그

www.kead.or.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냥 용돈 형식으로 차비 형식으로 그렇게 일을 해봤고요. (참석자 4)

수급을 받고 받은 뒤부터는 소득이 안 잡히는 일을 많이 하게 됐죠. 수급이 탈락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르바이트로 꾸준히. (참석자 5)

수급조건 유지를 할 수 있는 일자리를 하고 있지만 현재의 근로 상황에 대해서는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도 동사무소에서 여쭤봤거든요. 얼마까지 내가 벌어야 수급이 유지가 되면서 돈을 벌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70만 3천 원인가 아무튼 그래요. 만약에 72만 원을 벌으면 거기서 탈락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료든지 뭐든지 다 탈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는 실제 하고 싶어요. 솔직히 그냥 우리도 조금 더 벌고 싶고 진짜 어디서 일할 수만 있다 그러면 더 벌고 싶고 그리고 우리가 일이 생기면 자신감이 생기고 어디든지 가면 떳떳해지거든요. 수급비 받는다 소리를 어디 가서 진짜 제 친구들한테는 말을 못 했어요. 지금도 말 못하고 살아요. 어떻게 살아 그냥 그렇게 먹고 살아 그냥 그래요. 그럴 정도로 우리도 자존심이 있는데 그게 환경이 딱 봉착이 되는 거예요. (참석자 2)

탈수급에 성공한 사례의 경우, 장애인 자활 지원 센터에서 활동을 하다가 탈수급이 가능한 정규 일자리로 연결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제가 여기 센터에서 활동을 했었어요. 월급 받고 활동하는 게 아니라 그냥 활동을 했었는데 제가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 수급이 탈락될 것이라고 연락이 왔어요. 저는 계속 여기서 몇 년 거의 10년 가까이 활동을 했으니까 센터장님한테 저 수급이 탈락될 것 같다 그랬더니 여기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물론 분가를 한다면 수급을 할 수 있었지만 일할 기회가 있는데 굳이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참석자 8)

## 4. 수급 관련 고용 및 복지 제도/서비스

### 가. 근로소득공제제도

근로소득공제제도에 대해서는 대부분 인지하고 있지 못했다. 실제 공제되는 내용을 알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제도를 통한 결과라는 점과 그 의의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 그렇구나 저는 처음 들어가지고 그래요. (참여자 1)

>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 우리한테는 말을 안 해줘서. (참여자 2)

> 공식에 그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수입이 100만 원이다 그러면 이제 구청에서 그냥 일단 20만 원을 빼요. 그다음에 50빼고 또 빼주고 남은 금액에서(중략) 남은 금액을 소득으로 인정해가지고 그 금액을 빼더라고(중략) 몰랐어요. 그게 뭔지는. 이제 처음 알았어 내가 몰랐어. (참여자 6)

장애인의 경우, 자주 바뀌는 제도를 따라가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정책 당국이 현재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민간 센터에서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제도 개편 사항을 파악하여 홍보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고용공단이나 뭐든 복지부나 무슨 연도마다 서비스가 틀려지잖아요. 그러면 다 등록이 돼 있잖아요. 그럼 문자 서비스 한 번 넣어줘버리면 간단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서 그걸 찾는다는 게 또 쉽지도 않고 또 귀찮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센터 같은 경우는 그 정보를 알려주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센터가 모든

분야를 통달해 알려줄 수는 없고 장애인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만 이런 제도가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참여자 5)

그런데 소득공제제도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저임금 일자리에서 일하는 장애인의 특성상 중요하지 않은 정보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보통 일자리에 관심이 없으니까 이런 부분에 관심이 없게 되는 거죠. 당연히 일반 직장인들 같은 경우 소득 공제 얼마나 월급을 받으니까 계산하고 막 하는데 여기는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몇 시간 일해봤자 소득이 배 차이 안 나니까 일 자체를 안 하려고 하는 거고 이거 해봤자 예를 들어서 소득 공제 우리가 50만 원씩 받는다 그게 얼마나 소득공제가 되겠냐 그래서 그걸 관심을 안 갖게 되는 거죠. (참여자 5)

## 나. 그 외 고용/복지 지원 서비스

참여자들 중에는 관련 기관으로부터 직업훈련과 같은 정보를 받은 적이 없는 경우가 많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런 것도 본인이 알아서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알아서 해야지 복지관도 한번 가서 보고 뭐가 있는지 없는지 찾아보고 일거리고 있는지 찾아보고 해서 내가 찾아야 되는 것이지 그걸 누가 막 알려주고 정보 주고 이런 거 없더라고요. (참여자 6)

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용 경험이 있는 인터뷰 참여자들도 상당수 나타났다.

장애인고용공단서비스는 예전에 그거 받아봤어요. 뭐지 바우처같이 이렇게 강좌 듣는 거 있잖아요. 온라인에서 공단에서 온라인에서 이렇게 무료로 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은 괜찮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장애인들이 학원 가서 배우고 왜 그러냐면 학원들이 아시다시피 다 2층 3층 있고 계단이 있고 문턱 있고 그러면 안 가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온라인이 진짜 도움이 많이 됐어요. (참석자 5)

고용공단은 최근에도 한 번 갔다 왔던 것은 출퇴근 비용 지원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현재 출퇴근 비용 지급을 받고 있지요. 그거는 소득이 포함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그 돈은 제대로 쓸 수 있죠. (참석자 6)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기초수급 장애인의 고용 및 복지 서비스 접근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었다.

특히 이제 지체장애 같은 경우들은 어디 현장에 가서 배운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이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서울 같은 데는 그나마 낫지만 저는 이제 지방에 있다가 여기 올라왔거든요. 지방에 있는 경우는 학원 수도 적을 뿐만 아니라 또 이동 아까 말했던 이동하는 데 또 시간 걸리고 1시간짜리 교육 들으러 가려고 하면 준비하는 데 2,시간 걸리니까 그걸 회피하게 되는 거죠. (참석자 5)

비영리 민간 단체를 통해서 고용 관련 서비스를 받고 있는 양상 또한 나타났다.

센터에서 여러 가지 교육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직업 관련되는 법률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직장 내 에티켓 관련 교육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교육들을 하죠. (참여자 6)

구인구직 정보에 대해서는 워크넷, 고용공단을 활용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장애인들간의 사적 네트워크를 이용한다는 응답도 있었다. 구인구직 정보의 습

득은 장애인의 정보 역량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으로 나타났는데, 비교적 젊은 응답자는 워크넷과 같은 공식적인 루트를 활용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고연령인 응답자는 비공식적인 인적 경로를 활용하여 구인구직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다.

> 워크넷 그런 데에서. 장애인들이 그런 데 많이 들어가거든요. 저도 이제 재택근무했을 때도 거기하고 연결돼 갖고 재택근무를 하는 거고. (참여자 5)

> 장애인들은 대부분 나름대로 대충 알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연말이 다가오면 내년 일자리를 12월쯤에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모집하는 그런 루트를 대충 알고 있어. 그래서 그쪽으로 정보를 얻고 정보를 고용공단에서 주거나 하는 건 없어요. (참여자 6)

그러나 실제 직업훈련을 받더라도 실질적으로 수급을 탈피할 수 있는 고용성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회의감이 직업훈련에 대한 이용 의도 저하로 나타날 수 있었다. 이는 훈련과 일자리 상황의 미스매치와 장애인에 대한 고용주의 편견 두 가지가 모두 영향을 미치고 있다.

> (교육훈련을 받아서) 10명이 네일아트 자격증 취득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걸어 다니려면 휠체어를 타야 돼요. 만약에 그 내일을 해주려면 근데 휠체어를 타다 보면 대체적으로 네일아트 가게는 진짜 서서 다니기도 되게 좀 불편할 정도로 다니기가 조금 불편한 곳이거든요. 그런데 자격증을 땄다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땄으니까 취업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취업을 하려고 이제 거기서 왜소증 장애인이 취업을 한 거예요. 본보기로. 그런데 6개월을 다녔는데 결국은 포기 왜 다 포기했냐 그랬더니 아예 장애인이니까 너네 청소만 하고 그냥 여기 우리 뒷바라지만 해줘 한다고 하지 그랬더니 너는 자격증만 있을 뿐이지 너의 섬세함을 몰라 그러면서 아예 시키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취업하자마자 수급이 탈락한 거예요. 그래서 몇 달 동안

놀다가 수급을 해주면 다행이지만 안 되면 아마 좀 어려울 것 같아. 언니 하지 마, 일 하지 마 막 진짜 울면서 사정을 하는 거예요. (참여자 2)

따라서 직업훈련에 따른 취업이 수급혜택의 탈피로 이어지면서, 힘들게 기술을 배우고 익혔는데도 실질적인 장애인의 삶에 플러스가 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

## 5. 수급탈피 및 근로 촉진 방안

현재의 기초수급제도는 장애인을 수급에서 탈피시키기보다는 수급에서 묶어놓는 역할을 한다는 인식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 하면은 기본적인 수급자들의 이제 벗어나게끔 만들어야 되는 건데 그냥 우리나라 정책은 나라가 책임질 수급을 계속 유지해가는 방향이라 계속 수급자만 늘 거 아니에요 그죠? 또 일 못하면 또 들어올 거고 일 못하면 또 들어올 거고 이 사람들이 탈피를 못하고 계속 그렇게 되면서 이제 어찌 보면 폐인을 만드는 경우도 있죠. 일을 할 시기에 일을 못하다. (참여자 7)

그러나 기초수급 장애인들은 일을 통해 수급을 탈피하고 자립적인 삶을 영위하고자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일하는 만큼의 소득을 보전해 주면 누구라도 일하려 할 거예요. (중략) 사실은 정부에서 그 돈 조금 받으면서 서라도 눈치 보고 신경 쓰이고 아주 그것도 자존심 문제도 있고 아주 별로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닌 것 같아. 근데 만약에 스스로 능력으로 뭔가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사회가 만약 그런 구조가 된다면 그건 당연히 수급을 벗어나서 내가 그냥 내 힘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최고죠. (참여자 6)

그러나 기초수급장애인의 경우,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되는 만큼 장애인 기초수급자의 특성에 부합하는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적합 일자리는 장애인의 역량과 의지에 부합하는 일자리 내용 및 활동지원과 같은 지원이 될 수 있고, 현실적으로 수급을 유지해야 하는 기초수급장애인의 특성에 부합하는 수급과 함께할 수 있는 일자리라는 방향성에서 의견이 제시되었다.

장애인 수급자들을 위한 어떤 일자리라든가 어떤 특수한 어떤 그런 유형 그런 거를 좀 정책적으로 좀 이렇게 좀 개발을 해서 접근을 시도할 수 있게끔 했음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 자체는 포기하고 생각 자체를 안 해요. (중략) 청소하고 쓰레기 줍고 근데 그것도 센터를 끼고 수급이 떨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20만 원 주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범위를 벗어나지 없는 그런 일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렇게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움직이는 게 정신적으로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 건강에 무리가 안 가니까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시도하다가도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그냥 주어진 것으로 절약하면 살게 되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여자4)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뇌출혈 때문에 이제 편마비이기 때문에 한손을 못 쓰고 오른손을 이제 쓰는데 이런 경우는 사실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장애 유형에 맞게 할 수 있는 일을 개발해서 준다면 그것은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중략) 예를 들어 장애인이 일하는 것을 도울 수 있도록 근로지원이나 활동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참여자 6)

센터에서 8시간 일자리는 안 와요. 수급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급 유지가 가능한 반나절 일자리 그런 것을 선호하시지. 그러니까 정부에서 안정적인 고소득 일자리를 장애인들한테 주든지 아니면은  정부에서 자금 지원하는 일자리를 주되 의료 보호나 주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참여자 7)

한 참여자는 임금 근로가 아닌 창업을 통해 기초수급장애인이 수급을 탈피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지만 창업에 따른 탈수급 기간 동안 의료지출과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대처가 어렵다는 걱정 때문에 창업을 시행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제 그런 생각도 해요. 진짜 과감하게 창업자금 융자를 받아서 조그마한 소규모의 가게를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그게 잘 되고 어떻게 될지 보장은 없잖아요. 생계 같은 거는 어떻게든 감안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의료적인 게. 제가 만약에 질병으로 인해서 아프게 되면 그 짐을 저희 아이가 다 떠맡겨야 되는데(중략) 저는 그냥 의료적인 것만 보장이 되고 한다면 진짜 좀 융자 받아서 제가 하고 싶은 창업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게 안되네요. (참여자 3)

수급을 탈피할 수 있는 기반으로서 자산 형성이 필요한데 현재의 수급 제도는 장애인의 자산 형성을 근본적으로 막는다는 점이 큰 문제로 인식되고 있었다.

> 우리도 진짜 떳떳하게 내고 싶은데 통장에 돈이 조금 모아지면 왜 수급비를 이렇게 감액을 하는지 나는 그것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진짜 그 수급비 조금씩 나온 거에 진짜 단 5만 원이라도 만 원이라도 모아라 그러면 오늘 설에 가면 그게 깎이는 거예요. 왜 이게 이렇게 깎이냐 물어보면 그것도 재산이라고 깎는 거(중략) 그러니깐 내 통장에 돈이 들어있는 꼴을 못봐요. (참여자 2)

> 그런 적이 있어요. 돈을 좀 모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금융지원 대상자들이잖아요. 걸렸어 그러니까 많이 있으니까 한 번에 딱 걸리니까 그 뒤부터 계속 금융주의 그게 수년간 계속 추적을 하다시피 그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그게 정부에서 해야 되는 건 알지만 저도 그게 내가 이렇게까지 이런 눈치를 받고 살아야 되나. (참여자 4)

www.kead.or.kr/KO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현재 장애인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가 존재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자산형성에 대해 조건부가 붙을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이용 의사가 없다고 하였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걸(제도)를 보고 솔직히 욕심이 안 나는 건 아니었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조건이 붙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 천을 모았어요.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천을 나를 도와주고 그러면 2천이 되잖아요. 그러면 너 가게라도 해 이렇게 만약에 저기 조건을 걸면 내가 안 받아올 수도 없고 받아올 수도 없고 그런 입장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이게 조건부가 안 붙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당연히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이거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되는 거예요. (참여자 4)

이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책으로서 수급 조건이 일시적으로 초과되더라도 수급 혜택을 유지하게 하는 유예제도를 제안하고 있다.

수급자들이 일단 일을 하든 안 하든 이렇게 조건을 일단 수급을 주면 수급자가 되면 일단은 어찌 됐든 내가 수급자가 탈락이 일단은 되든 안 되든 기한을 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무조건 주지 말고 어느 정도의 기한을 주면 어느 정도 만약에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마음껏 돈을 벌든 그래 마음껏 돈을 모으든 수급비로 모으든 1억을 받든 2억을 받든 한계선을 딱 놔두고 모아 가지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돈으로 먹고 살 정도에 오게되면 그때 가서 점차적으로 나이가 먹게되면 의료비는 필요하니까 수급은 탈락을 하되 의료는 그냥 유지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굉장히 많이 해요. (참여자 2)

근데 어느 정도 한시적으로 해보고 싶은 건 해봐라 해보고 그 대신 자립을 할 수 있게끔 일단 기한을 줄 테니까 한 3년 정도는 해봐라 그러고 안되면 다시 그 조건으로 해주겠다 하는 어떤 보장된 약속이 있다고 그러면 수급으로 돌아올 수 있겠다. 예를 들어 장애인이 시설에 나온 사람이 탈시설을 나온 사람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듯이 수급인 사람들도 그렇게 뭔가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고

약속을 해준다고 하면 그 대신 의료적인 것은 보장해 주겠다. 그리고 네가 잘 되면 그동안 받아온 세금도 그만큼 더 내라 그러면 더 내죠. (참여자 3)

생계비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는데 취업이 되면 수입이 있다고 바로 떨어뜨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일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럼 어떤 유예기간을 둬가지고 조금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이제 고소득을 받고 그걸 유지해 갖고 이제 직장이 안정이 되면 유지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이 이제 취업을 하면 만약에 180만 원을 받았어 기본 소득 그걸 받았는데 바로 생계비 지원에서 떨어뜨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저금을 못하잖아요. 수급이랑 경제적으로 똑같은. 그런데 이 사람이 180을 받는 이 직장이 자기가 계속 유지할 안정적인 직장일지 안정적인 좀 다녀봐야 할 거 아니에요. 원래 취업을 하면 수습기간이 있는데 우리는 수습기간도 없어요. (참석자 7)

각 장애인에 따라 기초수급제도 구성요인 중 생존에 필수적인 요인이 다른데, 현재의 수급제도는 수급을 탈피하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각각의 수급을 분리하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기초생활수급에서 탈피된다고 그래서 꼭 왜 의료비까지 탈피를 시키는지. 그건 이제 분류를 좀 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주거비 다 틀리잖아요. 교육비 다 따로따로 있잖아요. 그러면 그 대상자에 예를 들어서 내가 자녀가 3명이 있어 그러면 내가 의료의 탈피를 하는데 이 자녀 부분 때문에 내가 의료비 탈피하기가 싫어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아까 의료비가 있고 자녀 교육비도 있으면 그 부분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것만이라도 유예기간을 좀 줘라 그런 게 필요하겠죠. (참여자 3)

따라서 수급의 혜택은 현실적으로 기초수급 장애인에게 있어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충분한 임금을 통해 수급 손실분을 보상할 수 있거나 아니면 장애인의

생존에 필수적인 수급 영역은 유지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

> 만약 일을 해서 생계비 수급은 포기해도 되죠. 그러면 180 기본 소득을 받더라도 의료원만 좀 유지가 된다면 근데 지금 이 180이라는 기본 소득이 우리가 8시간 일을 하면 국가에서 인정하는 그 소득이잖아요. 그걸 받음으로 주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의료 이 모든 게 다 탈락이 되니 이 180을 받으면 의미가 없는 거죠. 이거보다 수급을 유지하면 수입이 더 많은데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3000 정도 벌어야 이 수급 정도의 혜택을 본다는 거라는 거죠. (참여자 7)

기초수급 장애인이 자립기반을 형성할 수 있도록 소득 자산 조건 무관하게 수급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유예기간은 다수의 피 면접자가 제시한 의견이었다. 그러나 단순히 유예기간만 주는 것만으로는 기초수급 장애인의 빈곤 탈피에는 부족하며 장애인이 보다 나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게 하는 사회 전반적인 기반 구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의견도 있었다.

> 개정이 되면 만약에 저희들이 이제 요구하는 유예기간 둔다고 쳐요. (중략) 그런데 내가 그동안 일자리를 못 찾았어. 의료비나 교육비나 이런 것들을 지금 지원받는 것만큼의 그런 일자리를 3년이나 5년 후에 못 찾았어.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기업들이나 사회적인 기반이 같이 가야 효과가 있는 거지 그런 거 없이 그냥 법으로만 정해놓고 시간만 딱 준다고 해가지고 가난이 탈피된다는 저는 조금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좀 불확실하다. 그러면 이 법 개정과 동시에 기업과 정부와 민간들이 같이 같이 협력해 나가야 지금 이렇게 노력한 만큼의 결실이 나오지 않나. (참여자 8)

장애인이 정당한 급여를 받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고용주의 인식 전환과 수급을 포기할 수 있는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첫 번째 교육이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사회적 기반 내가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여건. 제가 능력이 있어도 손 멀쩡해도 단순 노동 밖에 못해요. 급여가 어느 정도 비슷해야 내가 수급을 포기하고 경제 활동을 할 건데 지금 우리나라 제반 여건이 그렇게 돼 있냐. (참여자 8)

또한 장애인 자신이 수급에 매몰되어 있는 것을 탈피하기 위한 인식전환도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장애인들이 너무 수급에 매몰돼 있다 보니 사회적인 인식이나 변화되는 이런 것들에 관심이 없어요. 그 인식의 변화도 되게 필요한데 나라에서 교육들을 좀 많이 하면 수급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발전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자기 자신들을 찾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주는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중략)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수급자들 특히 나이 드신 분들 보면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요. 술 먹거나 장기 두거나 그냥 노는 걸로 먹고 놀고 또 때 되면 돈 받고. 갈 데가 없으니까 먹고 싸우고 먹고 밖에서 자고 취해서 자고. 복지관이나 단체들에서 그런 대상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제반적인 것들은 운영을 하면은 최소 그런 것들은 줄일 수 있지 않나 (참여자 8)

www.kead.or.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제3절 시사점

면접 대상자들은 기초수급이 기본적인 삶을 살게 해주기 때문에 포기하기에 매우 어렵고 제도의 효용을 인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시혜의 대상이 되며 자존감과 성취감을 상실한다는 점 때문에 가능하면 수급을 탈피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장애인이 직면하는 노동시장 현실 상 수급을 포기함으로서 삶의 질이 훨씬 저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동기 부여되고 수급을 탈피할 수 있는 계기가 된 일부를 제외하고는 탈수급을 시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장애인이 수급을 통한 단순한 생존이 아닌 보다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근로를 통한 자존감과 사회관계의 정상성 회복, 자산형성이나 일 자체를 통한 성취감, 보다 풍요로운 소득을 통한 삶의 질 개선 등의 길이 열릴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수급과 자립이 양립하기 어려운 현재 구조에서는 이같은 시도가 매우 힘들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수급조건 유예제도와 같은 제도의 필요성을 다수가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내용을 통해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급 탈피를 위해서는 수급을 유지할 때 보다 훨씬 더 많은 혜택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노동시장에서 일을 해서 얻는 수익과 수급을 유지하는 경우와 비교할 때 수급 유지가 훨씬 혜택이라면 굳이 수급을 탈피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적 이익이든 심리적인 자존감 문제이든 수급 유지보다 수급 탈피가 더 혜택이라는 점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

둘째, 구체적인 측면에서 의료비에 대한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복지패널조사 결과나 실태조사 결과 모두에서 탈수급의 가장 핵심적 요인은 의료비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장애인의 의료비 지원을 국민기초생활수급 제도가 아닌 타 제도에서 지원하는 방안이 보다 현실적이라는 논의가 제기되었다. 셋째, 일할 수 있는 기회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심층인터뷰 당사자 중에서는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거의 얻지 못하거나 일을 해야 한다는 정보도 모르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일을 할 때와 일을 하지 않을 때 겨우 몇십만원 밖

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일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일에 대한 정보 제공과 일을 통한 비교 우위를 갖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넷째, 자산 형성을 위한 기회를 마련해주어야 한다. 수급자들은 수급을 받는 기간 동안 자산을 형성하기 어렵다. 재수급자의 경우 역시 자산을 형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심층인터뷰 당사자들은 유예 제도를 도입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을 수급과 연계시키지 않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해 일정한 자산이 형성될 때까지 정부에서 기다려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보다 근본적인 측면에서 국민기초생활 수급 제도의 목적에 대한 문제점이 등장한다. 한번 수급을 받게 되면 생애기간 내내 수급의 영역에 머무르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수급 대상 여부를 규정하는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만 조사할 뿐 수급을 벗어나게 하기 위한 지원은 없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수급 제도의 한계가 등장한다. 따라서 복지와 고용 연계라는 큰 틀에서의 논의가 아니더라도 수급 탈피를 위해 일할 기회 제공이라는 논의를 위해서 관계 기관들 간의 협력 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이제부터라도 이러한 논의가 시작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www.kead.or.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제 5 장
# 결 론

## 제1절 요약

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 수급 장애인의 고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크게 네 가지 연구 방법을 활용하였다. 첫째, 현행 제도와 규정 그리고 선행연구 검토를 통하여 국민기초생활 수급 제도의 내용과 지적된 문제점들을 도출하였다. 둘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하는 한국복지패널 데이터를 분석하여 국민기초생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특성을 비교하였다. 셋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재수급자, 탈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최종적으로 총 350명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정리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 대상은 설문대상과 마찬가지로 수급자, 탈수급자, 재수급자로 구분하여 수급과 수급 탈피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자리를 갖기 어렵거나 일자리를 구하지 않는 이유 등에 초점을 맞추어 인터뷰를 수행하고 이를 정리하였다.

먼저, 기존 제도와 선행연구와 관련된 논의에서 도출된 의미는 국민기초생활 수급 제도의 도입과 함께 특히 수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개선 방안들이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제도 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예를 들어 의료비 문제, 유예기간 도입, 자활 사업과의 연계, 복지 서비스와 고용서비스와의 연계 등과 같은 문제 제기는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물론 장애인 수급자를 위한 소득공제 제도나 재산 형성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지원 수준 등에서 획기적인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다음으로 한국복지패널 데이터를 분석 결과에 따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 수급자의 일반적 특성을 보면, 고연령과 낮은 학력, 지체, 지적, 정신 장애 중심 그리고 중증 장애, 6개월 이상의 투병과 투약이 필요한 장애인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 결과는 비장애인 수급자와도 비교되는데, 결과적으로 수급 장애인의 건강과 의료 문제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장애인 수급자의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이 비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다는 사실과 장애인 비경제활동 인구의 대다수가 근로무능력이나 가사, 교육 등이 아니라 근로의사가 없기 때문에 비경제활동 영역에 머무른다는 결과 역시 장애인 수급자를 노동시장으로 유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취업한 수급 장애인이 주로 단순노무, 농림·어업 분야에서 간접 고용과 같은 형태를 보인다는 점에서 노동시장 진입의 장점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도 유추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직 경험이 전혀 없다는 점은 복지 영역에서 고용 서비스를 받을 만한 기회를 제공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수급 장애인의 바라는 지원에 대해 의료비 지원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이 나온 것도 현실이다.

수급 및 탈수급, 재수급 장애인 350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를 통한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근로능력과 경제활동과의 관계에서 수급자는 근로 가능하거나 일할 수 있는 건강 상태라는 답변이 과반수를 넘었지만 장애 상태가 구직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답변은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구직활동에서 장애로 인한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수급자 중에서 취업한 장애인의 특성을 정리하면 일용직 비율이 높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재정지원 일자리 등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비중이 더 크게 나타났다. 또한 수급자는 시간제, 단순노무 종사자가 많았으며, 100만원 이하와 5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

www.kead.or.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는 비율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복지패널 조사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었다. 일을 하는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이며, 일을 하지 않는 이유는 장애 문제와 수급 박탈 우려 등의 답변 비중이 높았다. 일자리가 생겨도 근로의사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건강 문제와 기초수급 탈락 우려가 주된 답변이었다. 결과적으로 수급 장애인은 건강과 장애 그리고 수급 탈락에 대한 우려로 인해 쉽게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참여한다 하더라도 낮은 수준에서의 일자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수급과 관련한 특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수급은 주로 생계문제 해결이나 의료 급여 때문에 신청하였으나 수급자의 생활만족도 100점 만점에 50점 수준으로 낮았고 급여 수준에 대한 만족도 역시 39.4점에 불과하였다. 수급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월 평균 245.5만원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였다. 수급탈피를 위한 방안으로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취업 또는 창업 지원이나 고용 프로그램 확대 방안, 두 번째는 의료비 부담 경감 그리고 세 번째는 경제적 자립이나 장기간 저축 지원, 수급비 확대 등과 같이 소득을 높이는 방안 등이다. 수급을 유지하고자 하는 이유로는 병원 혜택과 마음의 안정, 생활의 안전으로, 재수급을 받고 싶은 이유로 의료비, 수급상태와 거의 나아진 것이 없다는 답변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 역시 수급과 탈수급 사이의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의료비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생활에 대한 만족도의 경우 수급자에서 수급 탈피자로 변화되었을 경우에 만족도가 높아지고, 수급탈피자에서 재수급자로 변화되었을 경우에도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수급, 재수급 그리고 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인터뷰 조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급을 받은 이유는 대부분 장애로 인한 문제였음을 알 수 있다. 어릴 때부터 장애가 있었거나 중도 장애를 입었을 때부터 일을 할 수 없어 수급 신청을 한 것이다. 예를 들어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장애가 발생한 경우 장애 때문에 일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고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수급자가

된 사례가 있다.

둘째, 수급을 유지하는 이유 또는 재수급하는 이유와 관련하여 가장 많은 내용은 의료비 문제이다. 실태조사에서 만성질환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객관적인 근거 외에 복지패널 데이터 분석이나 심층 인터뷰에서도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의료비 문제이다. 국민기초생활 수급과 의료비를 같은 범주에 포함시켜서 제도를 설계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해소되지 않는 한 의료비 문제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일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다. 하나는 수급이 끊기는 문제이다. 일을 해서 일정한 수입이 생길 경우 곧바로 수급이 탈락되기 때문이다. 둘째는 일할 의지가 발생하지 않는 문제이다. 일을 해서 소득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 액수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일을 하나 하지 않으나 생활의 변화가 크지 않기 때문에 굳이 일할 의욕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셋째는 일할 곳이 없다는 점이다. 실태조사에서 보듯이 월평균 최소 245만원 정도의 소득이 있다면 수급을 탈피할 수 있지만 장애인에게 이런 수준의 임금을 주는 일자리는 찾기 힘들고 또 찾을 수 있는 정보도 제한되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수급 장애인이 스스로 일을 찾아 수급 탈피를 통한 자립생활을 하기에는 많은 장애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수급 장애인에 대한 정보 제공 혹은 상담 프로그램 등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수급 탈피 방법이나 수급을 위한 준비, 수급 탈피 필요성 등에 대한 교육을 받아 본 적이 없으며, 일자리와 관련해서도 취업 지원, 일자리 정보 제공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었다. 이 결과는 패널조사 데이터 분석에서 구직활동 경험이 거의 없다는 내용과 유사하다.

이러한 결과를 정리하면, 수급 장애인들의 고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일자리에 대한 정보제공과 경험 부여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일자리를 통한 수급 탈피를 유도하는 체계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www.kead.or.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제2절 제언

본 연구에서는 현행 제도와 선행연구 검토, 한국복지패널 데이터 분석, 국민기초생활 수급 장애인 실태조사를 통해 수급 장애인이 노동시장으로 진입하지 않거나 못하는 이유 등에 대한 현실태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수급 관련 장애인들과의 심층인터뷰를 진행,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였다. 개선 방안에 대한 정책 제언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5-1>과 같다

<표 5-1> 수급 장애인의 수급 탈피 및 고용 확대를 위한 제언

| 범주 | 제언 내용 |
|---|---|
| 고용과 복지의 연계 | · 복지와 고용 서비스 개념의 확장<br>· 정부부처간의 협력 체계 구축<br>· 정보 연계 |
| 근로 의욕 고취 | · 수급자 대상 고용 지원 정보 제공 프로그램<br>· 심리적 지원, 근로 의지 지원 방안<br>· 장애인 자활사업 체계 신설 |
| 일자리 창출과 유지 | · 일자리 경험 지원<br>· 수급 장애인 일자리 발굴<br>· 수급 장애인 고용 인센티브 제공<br>· 소득 유예 기간 설정 |
| 의료 보장 | · 장애인 근로자 의료권 및 건강권 보장<br>· 장애인 의료비 지원 체계의 전환 |

### 1. 고용과 복지의 연계

국민기초생활 수급 장애인의 고용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먼저 검토되어야 할 것은 고용과 복지 연계 체계 구축이다. 이와 관련하여 길현종(2014)이 언급한 복지와 고용 기관간의 분절에 대한 논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의 분

석에 의하면 복지 중심의 서비스 기관은 ① 사례관리 체계가 전혀 없거나 있어도 복지서비스에 집중 ② 조직 운영에서의 서비스별 분절된 운영 구조 ③ 근로동기 고취 프로그램의 부재 ④ 고용서비스 기관들과 사례 중심의 연계 약함 등을 특징으로 하는 반면, 고용 중심 서비스 기관은 ① 취업 성과 중심의 운영 및 명목적 복지 서비스 제공 ② 근로동기 고취 프로그램의 형식화 ③ 복지 서비스 기관들과 사례 중심의 연계 부족 문제를 갖고 있다고 그는 주장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에서도 이러한 지적은 계속해서 등장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의 역할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 수급 장애인들에게 고용 서비스 제공에는 처음부터 한계를 노출한다. 그런 점에서 우선적으로는 복지와 고용 서비스 개념의 확장이 요구된다. 김용탁 외(2017)는 이와 관련하여 복지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여 고용서비스 정보 제공과 근로동기 고취와 같은 프로그램이 복지 서비스와 동시에 제공되어야 하며, 고용 서비스 또한 취업뿐만 아니라 창업, 훈련, 근로역량 고취 등도 포함된 포괄적인 개념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여기서 다시 검토해야 할 부분은 물리적으로 복지와 고용 영역이 연계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이다. 학문적이거나 논리적인 측면에서 고용과 복지 연계에 대한 논의는 오랫동안 계속된 과제였다. 하지만 여전히 부진하다. 그런 점에서 제안할 수 있는 것은 국민기초생활 수급 장애인의 탈수급과 이와 관련된 노동시장 진입 방안을 모색하는 공식적인 협력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국민기초생활수급 장애인의 일자리 마련을 위한 TF를 구성하여 운영하면서 중장기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기관간의 물리적 연계 외에 다른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정보 연계이다. 수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심층인터뷰에서 제기된 내용 중의 하나는 수급 신청, 수급 기간, 수급 탈피 그리고 수급 기간 중에 일을 하고자 할 때에도 고용 관련 서비스 지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고용이나 일자리, 훈련 등과 같은 장애인 고용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전혀 알 수 없었다는 점이다. 기초 수급자

들이 접근하는 복지 서비스 기관이 주민센터, 구청,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단체 등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기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수급 자격 유지' 혹은 '수급 내용'에 대한 내용에 제한되어 있을 뿐이다. 이로 인해 수급 장애인들이 수급 탈피를 위해 일자리를 모색하거나 훈련을 받을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고용 서비스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복지 서비스 제공시 서비스 대상자의 동의가 전제된다면 고용 서비스 내용까지 포함시켜 제공하도록 하는 의무 단계를 만드는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는 동주민센터나 구청 등에서의 협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행정안전부 등과의 긴밀한 업무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2. 근로의욕 고취

국민기초생활 수급 장애인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선행연구와 패널조사 분석 결과,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 의사가 없는 경우가 매우 많다. 이와 관련하여 길현종(2014)은 실질적 의미의 고용·복지 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용과 복지의 핵심은 근로동기 고취 프로그램의 내실화라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수급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제공되는 급여 외에 다른 형태의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 필요가 있다. 심층 인터뷰에서 수급 장애인이나 재수급 장애인들은 수급 대상자가 되었을 때 수급을 받으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수급 탈피는 어떻게 해야 할지,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수급 급여에 대한 설명과 함께 수급에 따른 의무,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 외에 탈 수급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 일할 동기와 일하게 되면 좋아지는 점 등과 같은 내용을 담은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제공해야 할 것이다.

둘째, 근로와 관련한 심리적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한번 수급을 받게 되

면 그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머무르고자 하는 경향이 있으며, 수급을 당연시 하여 무기력과 근로 의욕의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심리적, 정서적 위축을 보완해줄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층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사업의 1단계는 초기 상담 및 직업평가, 심층 상담, 개별 취업 활동 계획 등의 내용이다. 1단계에 참여할 경우 15만원의 참여수당을 준다. 2단계는 취업 역량 강화로서 취업코칭 프로그램, 취업지원 프로그램, 내일배움 카드 훈련, 취업알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저소득층의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3단계는 고용유지 단계로서 취업 성공수당을 지급한다.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수급 장애인 대상으로 특화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수급 장애인이기 때문에 취업이라는 최종 목표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담과 평가, 취업활동계획, 취업 코칭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여 근로에 대한 의지를 확대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셋째, 수급 장애인들의 수급 탈피 사례 공유 및 관련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먼저, 수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탈수급 성공과 관련된 맨토링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또한 수급장애인들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지지할 수 있는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경우에 관련 비용 등을 지원함으로서 활성화를 위한 지지 기반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다.

## 3. 일자리 창출과 유지

수급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경험을 제공하고 더 나아가 수급 장애인에게 특화된 일자리를 개발하여 보급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수급 장애인의 경우 일한 경험이 전혀 없거나 일한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일하는 과정에서 장애나 건강 악화로 인해 중단됨으로써 일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수 있다. 다른 한편으

로 일을 찾았으나 근로 조건이나 환경, 급여 등으로 인해 일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면 첫째, 일자리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다. 구직 경험과 일 경험이 전무한 수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자리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활사업에 있는 인턴제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인턴제 등을 활용하여 일경험을 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중요한 것은 이때의 경제활동에서 파생되는 소득은 수급 유지 여부와는 관계없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수급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발굴이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수행하는 장애인 일자리사업이나 직업재활시설에서 일을 하는 경우에도 급여 액수에 따라 급여액이 감소한다. 심층인터뷰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이러한 상황은 일을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라는 분위기를 형성한다. 그러다보니 일반 사업체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수급을 포기하지 않고는 접근하기 힘들다. 결과적으로 현재 주어진 일자리를 통해서는 수급 장애인을 유인하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수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수급 장애인 일자리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 장애 및 건강 악화에 대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작은 사업장, 수급 탈락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제공되는 일자리를 발굴하여 수급 장애인을 유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이 일자리에 참여할 경우 급여와 수급 기준과는 별개로 운영해야 한다. 즉, 급여를 소득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다.

셋째, 수급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수급 장애인 당사자의 역할과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들을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의 역할 역시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사업주들이 수급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수급 장애인 고용 장려금 등과 같은 제도를 신설하는 것이다.

넷째, 일자리 유지를 위한 방안으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일을 통해 얻은 소득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해주는가이다. 실태조사나 심층인터뷰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된 이슈일 뿐만 아니라 많은 선행연구에서도 지적된 것은 수급자들이 일을

하면 수급이 탈락된다는 것이다. 제도가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수급 장애인들은 일을 통해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일정 기간을 유예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한다. 이 기간은 최소 3년에서 5년 정도가 합당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서 일을 통한 근로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그 소득을 공제해주는 것이 더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일한 만큼의 보수를 받는다는 기분이 아니라 일한 보수를 감액 당하는 느낌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소득 공제제도와는 별개로 일정 기간 유예기간을 두는 방식으로 수급 장애인의 자산 형성을 지원해 주어야 할 것이다.

## 4. 의료 보장

수급 장애인들에 대한 실태조사, 심층 인터뷰 등을 통해 가장 많은 어려움은 수급과 수급 탈피에서 등장하는 의료비 문제이다. 수급 탈피시 감당하기 어려운 의료비 문제가 핵심인 것이다. 심층인터뷰 대상자 중에서도 수급을 탈피했는데 의료비가 너무 많이 발생해서 회사를 퇴직하고 수급자가 되었다는 사례는 수급 장애인에게 의료비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가를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수급 장애인의 의료, 건강 문제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가 수급에서 노동시장으로 전이시킬 수 있는 핵심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첫째, 노동시장에 진입한 수급 장애인에 대한 건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사업장 내 장애인 건강관리 및 심리적 안정을 위한 조치에 대한 경비 지원, 장애인 근로자의 건강 문제로 인해 전일제 업무가 어려운 경우 시간제 변경 및 그에 따른 부담 지원,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 악화에 기인한 질병 치료를 위해 의사가 인정한 기간 동안 치료 받을 수 있는 치료 휴가제와 치료에 따른 비용 지원, 사업장 내 건강 상담 의사나 간호사와 같은 의료진 지원 등과 같은 지원이 구체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둘째, 의료 보장과 관련하여 수급 장애인에 대한 지원 체계에 대한 논의를 재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안에서 장애인의 의료 문제를 고민할 것인가 아니면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장애인의 건강과 의료 문제를 고민해야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 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의 제4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저소득, 낮은 교육수준, 의료차별, 적정하지 못한 고용·노동·주거환경·사회적지지 부족 및 성별 특성 등으로 건강을 위협받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장애인의 의료비를 수급과 연계하지 않고 수급 장애인의 건강 상태, 장애 유형, 노동 능력 등과 같은 기준을 설정하여 지원하는 방안이나 수급에서 탈수급으로의 진행 과정에서 단계별로 의료비 지원 체계를 달리하면서 의료비 문제에 대한 우려를 줄여주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장애인의 의료, 건강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의료비로 인해 노동시장으로 진입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해야 할 것이다.

## 5. 중장기 과제들

수급 장애인들의 고용 확대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크게 네 가지 범주에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제시된 방안들 외에 중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못했지만 수급 장애인 중에서도 정신장애인(혹은 정신질환자)과 수급과의 관계에 대한 이슈이다. 통계나 조사 등에서 드러나지 않지만 정신장애인에게 있어 국민기초생활수급 문제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수급 실태 파악 등이 향후에는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수급 장애인의 인적 특성 변화 추이를 보면, 고령화 가구와 1인 가구의 급증이 확연하게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장애인의 초고령화 추세와 맞물

려 가구분리에 따른 수급 자격 획득이나 유지가 증가하면서 이들 집단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분야에 대한 논의가 향후 중요한 정책적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국민기초생활수급제도는 본질적으로 복지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로서 빈곤에 대처하는 가장 핵심적인 정책 수단이다. 따라서 수급 상태에 있는 빈곤 장애인을 굳이 탈수급으로 유도하거나 노동시장으로 진입시키고자 하는 것은 그들에 대한 통제 혹은 강제적인 수단으로의 부정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하지만 수급이라는 복지 영역의 장애인들이 수급 유지라는 빈곤의 악순환을 겪도록 하기 보다는 그들을 빈곤에서 빠져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수급 상황과 근로능력과 근로 의지가 있는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보다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빈곤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근로를 통한 소득 창출이기 때문이다.

www.kead.or.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참고문헌


강영걸, 정주석, 김경섭, 김정우(2012). **사회복지조사론**. 정민사.

곽지영, 신은경(2006).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 여성 장애인의 노동시장 진입 실태 및 영향 요인 분석. **장애인 고용**, 16(2), 5-26.

김성용, 강상경(2015). 국민기초생활수급 여부가 정신장애인의 취업에 미치는 영향: 연령 차이를 중심으로. **재활복지**, 19(2), 1-26.

길현종(2014). **한국 고용·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현황과 과제: 서비스 공급자 심층 면접을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노대명, 원일(201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취업 수급 가구의 탈수급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성공적 탈수급 및 행정적 탈수급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37. 333-360.

류기락(2014).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 개편과 취약계층 고용-복지서비스의 과제. **직업과 인력개발**, 17(5), 34-48.

박경수, 이석호(2015). 장애인의 장애수용이 기초생활보장 수급 탈피 의향에 미치는 영향: 고용서비스 이용 경험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장애와 고용**, 25(4), 89-110.

박능후(200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근로동기 강화 요인 연구. **사회보장연구**, 21(4), 227-254.

박재홍(2015). 장애인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탈피 의향에 미치는 영향 요인: 고용서비스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47, 115-131.

박종빈, 김용탁(2020). 국**민기초생활 수급 대상 장애인의 근로유인제도 분석: 근로소득 공제제도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보건복지부(2024).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성은미(2020). 경기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탈수급 사유별 특징 분석. **사회복지**

**정책**, 47(3). 129- 149.
성은미, 임서경(2021).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탈수급 장애 요인에 관한 사례 연구. **사례관리 연구**. 12(2), 1-25.
오수경(2005).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의 고용연계를 위한 경제적 유인 전략. **장애인 고용**, 15(2), 29-53.
우주형(2023). **기초생활수급 장애인의 고용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기초생활수급 장애인의 고용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 발표자료. 한국장애인노동조합총연맹·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맹.
이금진(2021). 국민기초생활수급 장애여성의 취업정책서비스 욕구와 노동시장 진입 요인 분석. **미래사회복지연구**, 12(2), 51-79.
이선영, 이홍직(2018). 장애인의 복지수급 탈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중심으로. **생명연구**, 47, 413-452.
장성애(2019). 중도 여성 장애인의 탈 국민기초생활 수급 경험에 관한 연구. **사회서비스연구**. 9(1), 1-28.
정진순, 이종정, 이태성(2019).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수급 장애인의 역량강화와 근로욕구의 관계 연구-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을 중심으로. **특수교육재활과학 연구**, 58(1), 327-346.
조윤화, 최승훈, 박시은(2023). **2022년 장애인 빈곤 및 소득불평등 지표**. 한국장애인개발원.

Creswell, D. & Creswell, J. W. (2019). *Research Design: Quantitative, Qualitative and Mixed Methods Approaches*. Sage, Los Angeles, CA.
Palinkas, L. A., Horwitz, S. M., Green, C. A., Wisdom, J. P., Duan, N., & Hoagwood, K. (2015). Purposeful sampling for qualitative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in mixed method implementation research. *Administration and policy in mental health and mental health services research*, 42, 533-544.
Patton, M. Q. (2002). Two decades of developments in qualitative inquiry: A personal, experiential perspective. *Qualitative social work*, 1(3), 261-283.

# [부록] 실태조사 설문지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장애인 실태조사

| ID | | | |
|---|---|---|---|

안녕하십니까?

공공사회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앤유입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본 설문을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의 의뢰를 받아 국민기초생활 수급 장애인 실태 파악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재수급자, 수급탈피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기초생활수급 장애인의 고용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되는 것이며, 조사를 통해 현황분석과 정책방안 제시라는 정책적 목적 달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는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연구목적 이외에 활용되지 아니하며, 응답내용에 대해서도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드립니다.

2024년 8월

| 〈연구기관〉 | 〈조사기관〉 |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 **㈜리서치앤유** |

| 응답자 정보 | |
|---|---|
| 성별 | ① 남성 ② 여성 |
| 출생연도 | □□□□ 년 |
| 거주지역 | ① 서울특별시 ② 인천광역시 ③ 경기도 ④ 강원도<br>⑤ 충청북도 ⑥ 충청남도 ⑦ 세종특별자치시<br>⑧ 대전광역시 ⑨ 경상북도 ⑩ 경상남도 ⑪ 울산광역시<br>⑫ 대구광역시 ⑬ 부산광역시 ⑭ 전라북도 ⑮ 전라남도<br>⑯ 광주광역시 ⑰ 제주특별자치도 |
| 학력 | ① 무학 ② 초등학교 졸업 ③ 중학교 졸업<br>④ 고등학교 졸업 ⑤ 전문대학교 졸업 ⑥ 대학교 졸업<br>⑦ 대학원 졸업 이상 |
| 혼인상태 | ① 미혼 ② 유배우자 ③ 사별 ④ 이혼<br>⑤ 별거 ⑥ 기타( ) |
| 주장애유형 | ① 지체장애 ② 뇌병변장애 ③ 시각장애 ④ 청각장애<br>⑤ 언어장애 ⑥ 안면장애 ⑦ 신장장애 ⑧ 심장장애<br>⑨ 간장애 ⑩ 호흡기장애 ⑪ 장루, 요루장애 ⑫ 뇌전증장애<br>⑬ 지적장애 ⑭ 자폐성장애 ⑮ 정신장애 |
| 중복장애유형(중복응답) | ① 지체장애 ② 뇌병변장애 ③ 시각장애 ④ 청각장애<br>⑤ 언어장애 ⑥ 안면장애 ⑦ 신장장애 ⑧ 심장장애<br>⑨ 간장애 ⑩ 호흡기장애 ⑪ 장루, 요루장애 ⑫ 뇌전증장애<br>⑬ 지적장애 ⑭ 자폐성장애 ⑮ 정신장애 ⑯ **중복장애 없음** |
| 장애정도 | 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3급) : 중증장애인<br>②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기존 4~6급) : 경증장애인 |
| 건강상태 | ① 아주 건강하다 ② 건강한 편이다 ③ 보통이다<br>④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⑤ 건강이 아주 안 좋다 |
| 세대주 여부 | ① 세대주 ② 세대주 아님 |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상태 | ① 수급자 ② 수급탈피자 ③ 재수급자 |

# A. 가족 일반사항

귀하 가구의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 특별한 명기가 없는 한 기준시점은 2024년 7월 31일 기준입니다.

| | |
|---|---|
| **A1. 가족 구성** | ① 단독가구 ② 부부가구 ③ 부부+자녀 가구<br>④ 모자가구 ⑤ 부자가구 ⑥ 조손가구<br>⑦ 기타( ) |
| **A2. 가족 수** | ① 단독 ② 2인 ③ 3인 ④ 4인 ⑤ 5인 이상 |
| **A3. 가족의 주된 수입원** | ① 세대주 소득 ② 가족/자녀/부모 소득<br>③ 세대주 + 가족/자녀/부모 소득<br>④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⑤ 친척 등 지원<br>⑥ 기타( ) |
| **A4. 가족 월 평균 총 소득(세전소득)** | A4-1. 전 가구원(장애인 포함)<br>월 소득 : 월 _____만 원<br>A4-2. 개인(장애인)<br>월 소득 : 월 _____만 원 |
| **A5. 가족 월평균 총 생활비** | 월_____만 원 |
| **A6. 가족 월평균 희망 최소 생활비** | * 단독가구일 경우 두 항목 모두 동일한 금액을 입력하십시오.<br>A6-1. 가구 희망 생활비: 월 _____만 원<br>A6-2. 본인 개인 희망 생활비:<br>월 _____만 원 |

## B. 사회복지/보험 특성

귀하의 기초생활수급 형태, 공적/사적 보험 및 연금, 건강보험 가입 등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 특별한 명기가 없는 한 기준시점은 2024년 7월 31일 기준입니다.

| | |
|---|---|
| **B1. 기초생활수급 종류**<br>※ 해당하는 번호에 모두 체크 | ① 생계급여 ② 주거급여<br>③ 의료급여 ④ 교육급여 |
| **B2. 공적연금 (국민연금 등) 가입여부** | ① 가입 ② 미가입 |
| **B3. 개인연금 가입여부** | ① 가입 ② 미가입 |
| **B4. 건강보험가입 형태** | ① 직장가입자 ②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br>③ 지역가입자 ④ 지역가입자의 세대원<br>⑤ 의료급여 1종 ⑥ 의료급여 2종<br>⑦ 국가유공자 무료 진료 ⑧ 미가입 |

# C. 경제활동 일반사항

귀하의 경제 활동에 관한 질문입니다.
※ 특별한 명기가 없는 한 기준시점은 2024년 7월 31일 기준입니다.

| | |
|---|---|
| **C1. 근로 능력 정도** | ① 일반적인 근로가능 (☞ C3번으로)<br>② 단시간 또는 단순한 근로가능 (☞ C3번으로)<br>③ 집안일 정도만 가능 (☞ C3번으로)<br>④ 집안일도 하기 어려움 (☞ C2번으로) |
| **C2. 집안일도 하기 어려운이유** | ① 중증장애 ② 질병 또는 부상<br>③ 노령으로 인한 심신 무능력<br>④ 기타( ) |
| **C3. 현재 근로 관련 건강상태** | ① 전혀 일을할 수없다 ② 일을 할 수 없는 편이다<br>③ 일을 할수 있는편이다 ④ 일을 매우잘할수 있다 |
| **C4. 장애 상태가 구직 활동에 미치는 영향** | ① 전혀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br>②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편이다<br>③ 지장을 초래하는 편이다<br>④ 상당히 지장을 초래한다 |
| **C5. 현재 경제활동 참여 여부** | ① 일하고 있음 ② 일하고 있지 않음(☞ C14번으로) |
| **C6. 주된 경제활동 참여 상태** | ① 상용직 임금근로자 ② 일용직 임금근로자<br>③ 임시직 임금근로자 ④ 자영업<br>⑤ 기타 ( ) |
| **C7. 일자리 종류** | ① 일반 사업체의 임금 근로 일자리<br>② 정부 및 지자체가 창출한 재정지원 일자리<br>(공공근로, 자활근로, 장애인 복지일자리 등)<br>③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일자리(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자립작업장 등)<br>④ 권리중심일자리(권익옹호, 문화예술, 인식개선 등)<br>⑤ 자영업자 ⑥ 기타( ) |
| **C8. 지위** | ① 정규직 ② 계약직/임시직/촉탁직/기간제 등 |
| **C9. 근로시간 형태** | ① 전일제 ② 기간제 |

| | |
|---|---|
| C10. 직종 | ① 관리자 ②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③ 사무 종사자 ④ 서비스 종사자 ⑤ 판매 종사자 ⑥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⑧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⑨ 단순 노무 종사자 |
| C11. 사업장 규모 | ① 1~4명 ② 5~9명 ③ 10~29명 ④ 30~69명 ⑤ 70~99명 ⑥ 100~299명 ⑦ 300명 이상 ⑧ 잘 모르겠음 |
| C12. 월 평균 급여(세전) | ① 50만원 미만 ② 50-100만원 ③ 100-150만원 ④ 150-200만원 ⑤ 200만원 이상 |

**C13. 귀하께서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이유(원인)는 무엇입니까?**

①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피할 수 있어서
② 소득 증대로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으므로
③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는 기회이므로
④ 나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⑤ 기타(  )

다음은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으나, 일을 한 경험이 있으신 분 또는 전혀 취업을 하지 않으신 분에만 해당하는 질문입니다. (위 C5 문항에서 ②에 표기하신 분)

**C14. 귀하께서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원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순위까지 응답)**

**(1순위:  ) (2순위:  )**

① 장애로 인해 업무 수행이 어려울 거 같아서
② 그저 일하고 싶지 않아서 또는 일할 필요가 없어서
③ 원하는 임금 수준이나 근로조건에 맞는 일자리가 없을 거 같아서
④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자리가 없을 거 같아서
⑤ 교육, 기술, 경험이 부족해서

⑥ 장애에 대한 차별과 선입견 때문에
⑦ 이전에 찾아보았지만,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⑧ 일을 하면 기초 수급 자격이 박탈되거나 생계급여가 감소 우려
⑨ 육아 또는 가사로 인해
⑩ 취업/창업을 준비 중이어서
⑪ 장애 이외의 질병이나 사고로(건강 문제)
⑫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고용주가 채용하지 않을거 같아서
⑬ 기타(　　)

**C15. 귀하께서 가장 오랫동안 근무하신 일을 그만두게 하거나 그만 둔 이유는 무엇입니까? - 1순위 \2순위**

① 장애 발생 또는 장애의 악화
② 장애에 대한 편견이나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③ 일거리가 없어서, 사업 부진, 조업 중단
④ 일 자체가 어렵고 힘들어서
⑤ 대인관계(상사, 동료와의 마찰)의 문제
⑥ 장애 또는 건강 문제로 피해를 주기 싫어서
⑦ 국민기초생활 수급 신청 또는 유지를 위해
⑧ 직성, 흥미, 전공 등이 맞지 않아서
⑨ 새로운 일을 찾기 위해
⑩ 회사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⑪ 해당사항 없음(근로 경험이 없음)
⑫ 기타(　　)

**C16. 귀하께서 현재 일을 하지 않지만 일자리가 생기면 일을 하시겠습니까?**

① 하겠다　　(☞ C16-1번으로)
② 하지 않겠다　　(☞ C16-3번으로)

**C16-1. 귀하께서 일을 하시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피할 수 있어서
② 소득 증대로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으므로
③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는 기회이므로
④ 나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⑤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자립을 위해
⑥ 기타(　　)

**C16-2. 귀하께서 취업을 희망하는 일자리와 하시고 싶은 일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 |
|---|---|
| C16-2-1.<br>**희망 사업체** | ① 대기업(공무원 등 포함) ② 중소기업<br>③ 상점(가게), 사무실 등 개인사업체 규모<br>④ 상관없다 ⑤ 기타(　　) |
| C16-2-2.<br>**희망 일자리 유형** | ① 원하는 수준의 급여를 주는 일자리<br>② 장애인을 위한 복지, 편의시설이 완벽히 갖춰진 일자리<br>③ 차별 없는 문화를 가진 일자리<br>④ 기타(　　) |
| C16-2-3.<br>**희망하는 종사상 지위** | ① 정규직 ② 계약직/임시직/촉탁직/기간제 등 |
| C16-2-4.<br>**희망 근로 시간** | ① 시간제 ② 전일제 |
| C16-2-5.<br>**희망 일자리 종류** | ① 일반 사업체의 임금근로 일자리<br>② 정부 및 지자체가 창출한 재정지원 일자리 (공공근로, 자활근로, 장애인 복지 일자리 등)<br>③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일자리(보호작업장, 근로 사업장, 자립작업장 등)<br>④ 권리중심일자리 ⑤ 기타(　　) |
| C16-2-6.<br>**희망 임금** | ① 50만원 미만 ② 50-100만원<br>③ 100-150만원 ④ 150-200만원 ⑤ 200만원 이상 |

**C16-3. 귀하께서 일자리가 생겨도 일을 하지 않겠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정부지원금만으로도 살 수 있어서
② 건강이 좋지 않아서
③ 일을 해서 소득이 발생하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해서
④ 그냥 편하게 살고 싶어서
⑤ 원하는 수준의 급여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⑥ 기타(  )

## D. 국민기초생활수급 특성(공통)

귀하의 국민기초생활수급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D1. 귀하께서는 현재 생활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구분 | 매우 만족 | 약간 만족 | 보통 | 약간 불만족 | 매우 불만족 |
|---|---|---|---|---|---|
| D5-1 경제적 생활 | ① | ② | ③ | ④ | ⑤ |
| D5-2 신체 상태 | ① | ② | ③ | ④ | ⑤ |
| D5-3 가족관계 | ① | ② | ③ | ④ | ⑤ |
| D5-4 주거생활 | ① | ② | ③ | ④ | ⑤ |
| D5-5 여가 및 사회생활 | ① | ② | ③ | ④ | ⑤ |
| D5-6 전반적 만족도 | ① | ② | ③ | ④ | ⑤ |

**D2. 귀하께서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① 기본적인 생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② 의료급여를 받기 위해
③ 주거비를 지원받기 위해
④ 자녀 교육비를 지원받기 위해
⑤ 취업 알선, 창업 등 자활 지원을 받기 위해
⑥ 일, 근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⑦ 기타(  )

**D3. 귀하께서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수준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해당하는 수급 급여에만 응답해 주세요)**

| 구분 | 매우 적절하다 | 적절하다 | 보통이다 | 부족하다 | 매우 부족하다 |
|---|---|---|---|---|---|
| D3-1 생계급여 | ① | ② | ③ | ④ | ⑤ |
| D3-2 의료급여 | ① | ② | ③ | ④ | ⑤ |
| D3-3 주거급여 | ① | ② | ③ | ④ | ⑤ |
| D3-4 교육급여 | ① | ② | ③ | ④ | ⑤ |

**D4. 귀하께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이나 고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복잡한 행정절차
② 신청 후 승인까지의 긴 대기시간
③ 일관성 없는 조사 결과
(소득, 재산 등 변화 없으나 조사 결과가 다르게 나옴)
④ 엄격한 자격 조건
⑤ 주위의 부정적인 시선
⑥ 기타( )
⑦ 없음

**D5. 귀하께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수급에서 벗어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취업 또는 창업을 통한 안정적인 소득원 확보
② 의료비 부담 해결
③ 안정적인 주거 공간 확보
④ 자녀 교육비 해결
⑤ 기타( )

**D6. 귀하께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정부의 지원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소득 발생(근로) 후에도 수급 유예를 통해 자산 형성 지원
② 경제적 자립을 위한 교육 및 훈련 과정 제공
③ 장애인 맞춤형 고용 프로그램 확대
④ 건강관리 재활 지원
⑤ 탈수급자 전용 주택 지원
⑥ 자립관련 심리 프로그램(예: 자신감 향상 프로그램) 등 심리지원
⑦ 기타(　　)

**D7. 귀하께서는 현재 받으시고 계신(또는 이전에 받으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액 기준으로 어느 정도를 지원받거나 소득이 생기신다면 수급자에서 탈피하실 수 있을거라 생각하십니까?**

※ 해당하지 않는 수급 급여에는 0으로 기재해 주십시오. (예: 생계 급여액의 200만원, 의료 급여액의 0만원)

① 생계급여액 _____만원
② 의료급여액 _____만원
③ 주거급여액 _____만원
④ 교육급여액 _____만원

**D8. 귀하께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탈피를 위해 필요한 정책이 있으실 경우 자유롭게 기재해 주십시오.**

| |
|---|
| |

**D9. 귀하께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위해 기타 필요한 정책이 있으실 경우 자유롭게 기재해 주십시오.**

| |
|---|
| |

**D10. 귀하께서는 다음 중 현재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①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수급자)(☞ E1 문항으로)
② 과거 기초생활수급자(현재는 탈피; 수급 탈피자)(☞ F1 문항으로)
③ 과거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피 후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재수급자)(☞ G1 문항으로)

## E. 국민기초생활수급 특성(현재 수급자)

귀하의 국민기초생활수급(현재 수급자)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E1. 귀하께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에서 언제쯤 벗어나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① 6개월 이내 (☞ E1-1번으로)
② 6개월~1년 이내 (☞ E1-1번으로)
③ 1년~3년 이내 (☞ E1-1번으로)
④ 3년 이후 (☞ E1-1번으로)
⑤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 E1-2번으로)
⑥ 벗어나고 싶지 않다 (☞ E1-3번으로)
⑦ 기타( )

**E1-1. 귀하께서 해당기간 내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에서 벗어나실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www.kead.or.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1-2. 귀하께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E1-3. 귀하께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E2. 귀하께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을 계속 유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순위까지 체크)**

**(1순위: ) (2순위: )**

① 기본적인 생계유지가 어려워서
② 의료비 및 약값 부담이 어려워서
③ 주거비 부담이 해소되지 않아서
④ 자녀 교육비를 충당할 수 없어서
⑤ 근로 능력이 없어 경제적 활동이 어려워서
⑥ 현재 수급 유지에 만족해서
⑦ 일을 하고 싶지 않아서
⑧ 기타( )

**E3. 귀하께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을 유지하시는데 가장 큰 어려움이나 고충은 무엇입니까?**

① 소득 증가로 대상자에서 탈락하는 것에 대한 우려
② 엄격한 수급 자격 유지 조건
③ 일관성 없는 조사 결과
(소득, 재산 등 변화는 없으나 조사 결과가 다르게 나옴)

④ 수급 상태 유지로 인한 취업 기회 제한
⑤ 사회적 편견이나 차별 경험
⑥ 기타(　　)
⑦ 없음

**E4. 귀하께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유지에 있어 가장 큰 장점은 무엇입니까?**

① 기본적인 생계 문제 해결로 경제적 불안정성 해소
② 필요한 의료 서비스 이용 가능
③ 안정적인 주거생활 가능
④ 자녀 교육에 대한 부담감 해소
⑤ 심리적 안정감 유지
⑥ 일(근로)를 하지 않아도 됨
⑦ 기타(　　)

**E5. 귀하께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을 계속 유지하시기를 희망하십니까?**

① 여건이 돼도 계속 유지하고 싶다(☞ E5-1 문항으로)
② 여건만 되면 탈피하고 싶다 (☞ E5-2 문항으로)

**E5-1. (E5 문항의 ①번 응답자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을 계속 유지하고 싶으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 |

**E5-2. (E5 문항의 ②번 응답자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을 탈피하시기를 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 |

*☞ 마지막 페이지로 이동*

## F. 국민기초생활수급 특성(수급 탈피자)

귀하의 국민기초생활수급(수급 탈피자)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F1. 귀하께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에서 탈피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하고 있던 일의 수입이 늘어서
② 가족의 수입(소득 등)이 발생해서
③ 상속, 증여, 재개발 등으로 재산이 늘어서
④ 병이 나아서
⑤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서
⑥ 소득, 재산 등 변화는 없으나 조사 결과가 다르게 나와서
⑦ 사회적 편견을 벗어나고 싶어서
⑧ 기타(  )

**F2. 귀하께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에서 탈피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된 것은 무엇입니까?**

① 취업 등 소득원 발생 또는 증가
② 가족이나 친지 등 주변의 경제적 지원
③ 재활치료 및 의료지원
④ 임대아파트 등 저렴한 주택 지원
⑤ 교육 및 직업 훈련 프로그램 지원
⑥ 장애인 단체나 기관 등에서의 자립을 위한 지원
⑦ 기타(  )

**F3. 귀하께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탈피 이후 가장 큰 장점은 무엇입니까?**

① 자립에 대한 자신감 향상
② 경제적 자립

③ 주거 등 생활 수준 등 삶의 질 향상

④ 자녀 교육을 위한 지원 강화
⑤ 주변의 부정적 시선에서 탈피
⑥ 스스로에 대한 성취감 및 자신감 향상
⑦ 기타(  )

**F4. 귀하께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탈피 이후 가장 큰 어려움이나 고충은 무엇입니까?**

① 불안정한 소득
② 직업의 안정성 부족
③ 충분한 의료 서비스 이용 어려움
④ 장애로 인한 건강 문제 관리 어려움
⑤ 안정적인 주거 공간 확보 어려움
⑥ 자녀 교육비 부담
⑦ 기타(  )
⑧ 없음

**F5. 귀하가 생각하시는 수급 당시와 수급 탈피 후의 생활 만족도를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www.kead.or.kr

| 구분 | 수급 당시 | | | | | 수급 탈피 후 | | | | |
|---|---|---|---|---|---|---|---|---|---|---|
| | 매우만족 | 약간만족 | 보통 | 약간불만족 | 매우불만족 | 매우만족 | 약간만족 | 보통 | 약간불만족 | 매우불만족 |
| F5-1 경제적 생활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
| F5-2 신체 상태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
| F5-3 가족관계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
| F5-4 주거생활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
| F5-5 여가 및 사회생활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
| F5-6 전반적 만족도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

**F6. 귀하께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다시 받기를 희망하십니까?**

① 다시 받고 싶다(☞ F6-1 문항으로)

② 다시 받고 싶지 않다(☞ F6-2 문항으로)

**F6-1. (F6 문항의 ①번 응답자만)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다시 받기를 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F6-2. (F6 문항의 ②번 응답자만)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다시 받기를 원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마지막 페이지로 이동*

## G. 국민기초생활수급 특성(재수급자)

귀하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재수급자)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G1. 귀하께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에서 벗어나신 지 얼마 만에 다시 수급하셨습니까?**

① 6개월 이내 ② 6개월~1년 이내 ③ 1년~3년 이내 ④ 3년~5년 이내
⑤ 5년 이상 ⑥ 기타( )

**G2. 귀하께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다시 받게 되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장애로 인한 직장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② 실직이나, 자영업 실패 등으로 소득원 감소
③ 가족 분화 (세대 분리 또는 세대 통합)
④ 가족의 소득(수입) 감소
⑤ 주거지 상실이나 이사 등
⑥ 자녀 교육비의 증가
⑦ 기타( )

**G3. 귀하께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다시 받는데 가장 큰 어려움이나 고충은 무엇입니까?**

① 복잡한 행정절차
② 신청 후 승인까지의 긴 대기시간
③ 일관성 없는 조사 결과
④ 주위의 부정적인 시선
⑤ 스트레스 등 심리적 고통
⑥ 기타( )

**G4. 귀하께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유지에 있어 가장 큰 장점은 무엇입니까?**

① 기본적인 생계 문제 해결로 경제적 불안정성 해소
② 필요한 의료 서비스 이용 가능
③ 안정적인 주거생활 가능
④ 자녀 교육에 대한 부담감 해소
⑤ 심리적 안정감 유지
⑥ 일(근로)를 하지 않아도 됨
⑦ 기타(　　)

**G5. 귀하가 생각하시는 수급 탈피 당시와 재수급후의 생활 만족도를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 구분 | 수급 탈피 당시 | | | | | 재수급시 | | | | |
|---|---|---|---|---|---|---|---|---|---|---|
| | 매우만족 | 약간만족 | 보통 | 약간불만족 | 매우불만족 | 매우만족 | 약간만족 | 보통 | 약간불만족 | 매우불만족 |
| G5-1 경제적 생활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
| G5-2 신체 상태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
| G5-3 가족관계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
| G5-4 주거생활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
| G5-5 여가/사회생활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
| G5-6 전반적 만족도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

**G6. 귀하께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을 계속 유지하시기를 희망하십니까?**

① 여건이 돼도 계속 유지하고 싶다(☞ G6-1 문항으로)
② 여건만 되면 탈피하고 싶다(☞ G6-2 문항으로)

**G6-1. (G6 문항의 ②번 응답자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유지를 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G6-2. (G6 문항의 ②번 응답자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탈피를 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 |

♣ 끝까지 설문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 귀중한 시간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설문 참여자 전원에게 감사의 마음으로 소정의 경품을 제공해 드립니다. 앞으로도"기초생활수급 장애인의 고용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에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경품을 제공하기 위해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가 필요합니다.
수집한 개인정보는 만족도 조사 및 경품 지급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으며, 경품 발송 후 즉시 파기합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경품은 발송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1. 개인정보수집에 동의하십니까?**

| | |
|---|---|
| 1) 동의함 | 2) 동의하지 않음 |

**Q2. 개인정보수집에 동의할 경우 휴대폰 번호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해 주신 개인정보는 경품제공의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 | |
|---|---|
| 이 름 | |
| 핸드폰 번호 | |

www.kead.or.kr/ko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연구 2024-01

**국민기초생활 수급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

**발 행 일** 2024년 12월 23일
**발 행 인** 조 윤 경
**발 행 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주 소** (4361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73번길 59
**전 화** (031) 728-7000
**팩 스** (050) 3470-0901
**홈페이지** http://edi.kead.or.kr
**전자우편** journal@kead.or.kr
**I S B N** 979-11-6922-139-9
**인 쇄** 한국장애인상생복지회

*비매품